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02-01

## 평등법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평등법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용역수행기관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 목 차

<b>I. 제1장 개요</b> .....	<b>1</b>
1. 평등법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목적.....	1
2. 기사 수집 방식.....	2
3. 표기 주의사항.....	8
<b>II. 제2장 평등법 관련 언론 보도 양적 분석</b> .....	<b>9</b>
1. 총 보도량 분석 .....	9
2. 매체별 보도량 비교 분석 .....	12
3. 시기별 보도량 추이 분석 .....	27
<b>III. 제3장 평등법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b> .....	<b>30</b>
1. 법 체계 관련 주요 쟁점.....	30
2. 종교의 자유 논쟁 .....	37
3. 성 평등 관련 논쟁 .....	43
4. 동성애 비하성 내용 .....	49
<b>IV. 제4장 평등법 관련 해외사례 팩트체크</b> .....	<b>53</b>
1. 표현의 자유 관련 .....	53
2. 교육 및 양육 관련 .....	155
3. 역차별 피해 발생 등 주장 관련 .....	222
<b>V. 제5장 결론</b> .....	<b>272</b>



# I. 제1장 개요

## 1. 평등법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목적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대표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발의했으며, 다음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평가도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평등법을 사회적 공론장의 주요 화두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등법에 대한 각계의 우려 섞인 주장 중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전달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평등법이라는 이슈에 무관심했다. 주류 언론들은 평등법이라는 이슈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이에 반해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일부 매체는 매우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로 드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예도 있고, 프레임 자체가 왜곡된 때도 있다. 평등법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리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맥락이 다른 내용을 연결해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과장하는 사안도 있었다. 사실과 주장이 뒤섞이고 일부의 우려가 과장되어 사실인 양 전달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평등법 관련한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어 보도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팩트체크했다. 더불어 사실 여부를 뛰어넘어 기사의 프레임까지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보고서는 평등법 제정 여부를 떠나, 추후 인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기사 수집 방식

평등법 관련 언론 보도 모니터링은 보도의 추이 등 분석의 목적에 따라 기사 수집 방식을 달리했다.

### 가. 평등법 미디어 언론 보도 양적 분석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포털 네이버 뉴스검색에서 ‘차별금지법’ 과 ‘평등법’ 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뒤 노출되는 기사를 수집해서 분석했다.

기사 수집 방법을 네이버 검색으로 결정한 이유는 종이신문 지면 보도나 저녁 종합뉴스 실시간 시청보다 실제 시민이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접하는 방식이 포털 뉴스이기 때문이다.

기존 언론 보도 검색과 스크랩 도구로 사용되는 스크랩 마스터, 아이서퍼 등으로 점검하는 것이 더 정확한 수집이 될 수 있을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은 포털을 통해 노출된 기사 위주로 언론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료사이트를 통한 검색이 아닌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방식을 활용했다. 또한, 기존 주류언론만을 모니터 대상으로 했을 경우, 기독교 매체 등 실제 평등법 이슈가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수집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모든 언론 보도를 망라해서 네이버 검색을 활용했다.

관련 기사 집계방식은 정확히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이라는 정확한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만 수집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해당 키워드를 통해 추출된 기사를 읽어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차별 관련 개별법이나 ‘주요 사회·국회 일정’ 과 같은 기사는 제외했다. 또한, 기사 본문이 없는 사진기사는 수집에서 제외했다.

수집 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8주로 제한했다. 수집과 분류작업은 전 기간 코더 1인이 전담했으며, 코딩 이후 별도로 1인이 교차 검증했다.

이번 수집 기간에 흑여 보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체크되거나, 실제 언론사가 보도한 것과 보도량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네이버 뉴스 노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이거나, 개별 언론사에서 포털로 기사를 송고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보인다. 이번 기사 수집은 다음날 내에 완료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에서 제공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다.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천지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방송/통신(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경기방송 경인방송 광주MBC 국제뉴스 국회방송 그린포스트코리아 내외경제tv 내외뉴스통신 뉴스1 뉴스웍스 뉴스핌 뉴시스 대구MBC 대전MBC 디지털조선TV 목포MBC 미디어리퍼블릭 부산MBC 서울경제TV 아리랑TV 아시아뉴스통신 안동MBC 여수MBC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울산MBC 전주MBC 제주MBC 채널A 춘천MBC 팍스경제TV 포항MBC 한국경제TV 현대HCN 새로넷방송 BBC BTN불교TV CJB청주방송 CMB광주방송 CMB대전방송 EBS G1 JIBS JTBC kbc광주방송 KBS KNN KTV국민방송 LG헬로비전 MBC MBC강원영동 MBC경남 MBC충북 MBN MTN NSP통신 OBS SBS SBS CNBC SK브로드밴드 TBC대구방송 TBS TJB 대전방송 TV조선 YTN YTN라디오 YTN사이언스)

경제/IT(건설경제신문 게임톡 게임포커스 경남데일리 그린데일리 글로벌이코노믹 나이스경제 넥스트데일리 녹색경제신문 뉴스토마토 대한금융신문 더리더 더벨 데이터넷 데일리경제 디아이투데이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투데이 딜라이트닷컴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바이라인네트워크 베타뉴스 벤처스퀘어 보안뉴스 브릿지경제 블로터 비즈니스위치 비즈니스포스트 비즈한국 서울경제 서울파이낸스 스카이드일리 시장경제신문 씨넷코리아 아시아경제 아시아타임즈 아유경제 아이티데일리 아주경제 앱스토리 에너지경제 에이빙뉴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이코노뉴스 이투뉴스 이투데이 일간리더스경제 전자신문 조선비즈 조세일보 중소기업신문 증권경제신문 초이스경제 케이벤처 코인리더스 테크노아 테크월드 테크홀릭 투데이에너지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신문 프라임경제 프레스나인 핀포인트뉴스 한국경제 한국금융신문 헤럴드경제 CBC뉴스 CCTV뉴스 CEO스코어데일리 CIO Korea G밸리뉴스 ITWorld IT비즈니스 ZDNet Korea), 인터넷신문(표표사사 가톨릭프레스 건강다이제스트 게임동아 게임조선 경기도민일보 경인매일 고발뉴스 골프한국 공공뉴스 공유경제신문 광명지역신문 글로벌E 글로벌경제 글로벌메이커스 글로벌에듀 금융소비자뉴스 기계신문 노동과희망 노컷뉴스 뉴데일리 뉴스다임 뉴스락 뉴스메이커 뉴스민 뉴스앤조이 뉴스워치 뉴스워커 뉴스웨이 뉴스제주 뉴스케이프 뉴스퀘스트 뉴스클레임 뉴스타운 뉴스톱 뉴스투데이 뉴스티앤티 뉴스프리존 뉴스한국 뉴스후플러스 뉴시안 단디뉴스 단비뉴스 대경일보 대학저널 대한전문건설신문 더구루 더드라이브 더리포트 더밸류뉴스 더파워 더팩트 더퍼블릭 더퍼스트 데이터숨 데일리그리드 데일리비즈온 데일리안 데일리팝 데일리팝 데일리한국 디센터 디지털조선일보 판지일보 땅집고 라이선스뉴스 로봇신문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리

서치페이지 리얼푸드 마켓뉴스 말산업저널 매일노동뉴스 매일안전신문 머니S  
 메가경제 메디게이트뉴스 메디소비자뉴스 메트로신문 문화저널21 미디어SR 미  
 디어오늘 미디어워치 미디어펜 민주신문 민중의소리 바이오스펙테이터 법률방  
 송뉴스 불교공뉴스 불교포커스 뷰스앤뉴스 뷰어스 브레이크뉴스 비마이너 비운  
 드포스트 빅데이터뉴스 산업일보 서울와이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세계비즈 세종  
 의 소리 소물리에타임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스마트경제 스마트에프엔 스트  
 레이트뉴스 스페셜경제 슬로우뉴스 시민일보 시빅뉴스 시사뉴스 시사뉴스24 시  
 사위크 시사저널이코노미 시사포커스 시선뉴스 아시아아츠 아시아엔 아이뉴스  
 24 아이투자 아이티비즈 아트인사이트 안전신문 얼리어답터 업코리아 에너지데  
 일리 에듀인뉴스 에듀프레스 여성경제신문 여수넷통뉴스 열린뉴스통신 오가닉  
 라이프신문 오늘경제 오마이뉴스 오토데일리 우먼스플라워 워크투데이 웹데일  
 리 위키리크스한국 위키트리 의사신문 의학채널 비온뒤 이로운넷 이지경제 이  
 코노미톡뉴스 이코노텔링 이코리아 인공지능신문 인더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인  
 민망 인베스트조선 인사이드 비나 인사이드 인천in 인천뉴스 일간투데이 전남  
 매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조세금융신문 중기이코노미 지  
 피코리아 직설 청년일보 충청뉴스 컨슈머치 키즈맘 톱데일리 투데이신문 투데  
 이코리아 투어타임즈 티티엘뉴스 파이낸셜투데이 팩스넷뉴스 팜뉴스 패션엔 팩  
 트TV 펜앤드마이크 포쓰저널 폴리뉴스 프레스맨 프레시안 하비엔 한강타임즈  
 한국강사신문 한국농어촌방송 한국정경신문 한국정책신문 허프포스트코리아 헬  
 로디디 헬스인뉴스 현대경제신문 환경과조경 AI타임스 AP신문 BBS NEWS bnt  
 뉴스 CNB뉴스 FETV ifspost IT조선 sbn뉴스 SR타임스)

스포츠/연예(중요한 기자들 美스테리한 기자들 게임메카 고려대학교 SPORTS  
 KU 골닷컴 골프다이제스트 골프타임즈 국민체육진흥공단 김형준 칼럼 김환 칼  
 럼 네이버스포츠 뉴스엔 뉴스엔 뉴스인사이드 단국대학교 웅담 대한골프협회  
 대한민농구협회 대한민배구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더 기어 더  
 스파이크 데일리e스포츠 데일리스포츠한국 도엔 디스이즈게임 디스패치 루키  
 류현진 MLB 일기 마니아리포트 마이데일리 맨체스터시티 FC 몬스터짐 무비스  
 트 박문성 칼럼 발렌시아CF 베스트일레븐 브라이언 스틸 비즈볼프로젝트 비즈  
 엔터 삼성 썬더스 서형욱 칼럼 서호정 칼럼 선문대학교 축구부 프론트 성호준  
 칼럼 손대범 칼럼 송산의 돌직구 수원대학교 축구부 기자단 스타뉴스 스타데일  
 리뉴스 스타캐스트 스포츠Q 스포츠W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  
 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타임스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아이 스포츠한국 스포  
 탈코리아 스포티비뉴스 아시아리그 아이즈 ize 안산그리너스FC 알베르토 몬디  
 앤드류 배걸리 앳스타일 야덕일지 야큐 리포트 양주시민축구단 엑스포츠뉴스

엔젤스파이팅 엔터테인먼트 엠스플뉴스 염용근 칼럼 영남대 축구부 홍보단 영독한 기자들 올림픽채널 용인대스포츠기자단 울산대학교 어스키피 울산시민축구단 위원석 칼럼 원터뉴스 코리아 이덕규 칼럼 이영미 칼럼 이은경 칼럼 이종열 칼럼 이창섭 칼럼 인간vs축봇 인벤 인터풋볼 일간스포츠 일요신문 스포츠 점프볼 조석 카툰 조이뉴스24 중앙대학교 SPORTS CAU 천안시청축구단 최종준 칼럼 추신수 MLB 일기 축구저널 춘천시민축구단 충주 험멜 콩푸엥 일기 킹존 드래곤X 테니스코리아 테니스피플 텐아시아 톱스타뉴스 티브이데일리 티브이데일리 포모스 포포투 풋볼리스트 한게임 바둑 한국3대3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스포츠개발원 한국체대 KNSB 한국풋살연맹 한국프로볼링협회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한스경제 한준 칼럼 한화생명e스포츠 헤럴드POP 홍기자 칼럼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enews24 JTBC GOLF K STAR KBS 연예 KBSN 스포츠 KGC인삼공사프로배구단 MBC SPORTS+ MBC연예 MK스포츠 OBS TV OSEN SBS funE SBS Golf SBS SPORTS STAT 칼럼 STN 스포츠 Team LoL 칼럼 The Sun TV리포트), 지역지(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고양신문 광남일보 광주드림 광주매일신문 국제신문 군포시민신문 굿모닝충청 금강일보 기호일보 김해뉴스 남도일보 뉴스경남 뉴스저널리즘 뉴제주일보 당진신문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시티저널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동양일보 디트뉴스24 라디오코리아 매일신문 무등일보 미디어제주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수원일보 시민의소리 시사제주 신아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울산저널 울산제일일보 울산종합일보 인천일보 인천투데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북중앙 제민일보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남일보 충북인뉴스 충북일보 충청리뷰 충청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VOA)

매거진(골프저널 그라피 낚시춘추 농업정보신문 더뮤지컬 더핑퐁 디자인정글 레이디경향 론리플래닛 르몽드 마리끌레르 매경이코노미 맥스무비 머니 메종모터트렌드 코리아 브라보마이라이프 브레인미디어 비즈니스코리아 빌리어즈 소셜밸류 슈어 시사IN 시사매거진 시사오늘 시사저널 신동아 씨씨 씨네21 아웃도어뉴스 에스콰이어 엔지니어링데일리 엘르 엠에프지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여행스케치 연합이매진 월간 산 월간로봇기술 월간리크루트 월간마이더스 월간암 월간오늘보다 월간조선 월간중앙 월간현대경영 위클리오늘 이웃집과학자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조선 이코노미리뷰 인사이트코리아 인터뷰365 일렉트릭파워 자전거생활 조선에듀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한국

중앙SUNDAY 지이코노미 참여와혁신 채널에스 축산신문 카스포인트 테크M 트  
 래비 파운드 매거진 팜앤마켓매거진 패션비즈 패션저널 포브스코리아 포춘코리  
 아 하퍼스바자 한겨레21 환경비즈니스 환경잡앤조이 헬로티 환경미디어 allure  
 CHIEF EXECUTIVE CNB저널 GQ M이코노미 PC사랑 Queen Tomorrow topclass  
 VOGUE VOGUE girl W), 전문지/기타(가스신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가톨릭신  
 문 건설타임즈 게임샷 게임플 경희대학교 레굴루스 골프산업신문 공감신문 공  
 무원수협신문 공무원저널 광운대학교 아르마스 교수신문 교통신문 국민의당 국  
 방일보 국제섬유신문 국토일보 국회 기자협회보 나무신문 노동과세계 논객닷컴  
 농기자재신문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농업경제신문 농업인신문 농장에서식탁까  
 지 농촌여성신문 농축유통신문 뉴스랩 뉴스브라이트 뉴스와이어 뉴스컬처 뉴스  
 타파 뉴스페이퍼 뉴스포스트 뉴스포인트 대명 킬러웨일즈 대한신당 대한급식신  
 문 대한럭비협회 대한변협신문 대한씨름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더  
 게임스데일리 더나은미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더셀럽 더스쿠프 더피알  
 데이터뉴스 데일리NK 데일리굿뉴스 데일리로그 데일리메디 데일리벳 데일리지  
 큐 데일리카 데일리포스트 독서신문 동아사이언스 동아오토 라이브팜뉴스 라포  
 르시안 레디앙 로리더 로이슈 리결타임즈 리얼캐스트 매경헬스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트리뷴 메디컬월드뉴스 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 무비위  
 크 무카스 문학뉴스 문화뉴스 물류신문 미디어스 미디어파인 미래통합당 미래  
 한국 민생당 민족의학신문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정당 방송기술저널 백세시대  
 법률신문 법률저널 법보신문 베리타스알파 베이비뉴스 베이비타임즈 보건뉴스  
 보험매일 부안독립신문 북DB 불교신문 블록체인밸리 비주얼다이브 비즈월드  
 빅터뉴스 새로운보수당 서울문화투데이 서울시체육회 서울유나이티드 성균관대  
 학교 ESKAKA 세이프타임즈 세정신문 세정일보 소년한국일보 스냅 스카우팅리  
 포트 스타트업투데이 식품저널 foodnews 신소재경제신문 싱글리스트 아웃소싱  
 타임스 아파트관리신문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 애슬릿미디어 약사공론 약업신문  
 양평시민의소리 어린이동아 어업IN수산 어패럴뉴스 업다운뉴스 에듀동아 에이  
 블뉴스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신문 여행신문 연세대학교 시스븀바 연합인포맥스  
 열린민주당 오토타임즈 오피니언뉴스 올치올치 우드플래닛 우리공화당 원불교  
 신문 원예산업신문 월간 오디오 월간<CEO&> 월간노동법률 월간불광 월간원예  
 월드코리안신문 월요신문 위드인뉴스 유교신문 의학신문 의협신문 이슈메이커  
 이코노타임즈 일간NTN 일다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잡포스트 장애인신문  
 재외동포신문 재해재난속보 전기신문 정신의학신문 정의당 정책브리핑 제주매  
 일 중소기업뉴스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지앤이타임즈 참세상 철강금속신문 청년  
 의사 청와대 축산경제신문 치과신문 친박신당 컨슈머타임스 코나스 코리아넷

코리아쉬핑가제트 코리아중앙데일리 코리아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헬스로그 코메디닷컴 쿠키뉴스 쿡앤셰프 크리스천투데이 텍스워치 통일뉴스 통일신문 투어코리아뉴스 트래블투데이 파이낸스투데이 플랫폼 플레 이디비 하우스헤럴드 하이닥 한국교육신문 한국기독교공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 농업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촌경제신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대학신문 한국면세뉴스 한국목재신문 한국무역신문 한국보험신문 한국섬유신문 한국스포 츠통신 한국영농신문 한양대학교 사자후 한의신문 함께걸음 헤모필리아라이프 헬스경향 헬스조선 현대불교신문 현대축산뉴스 현대해양 화이트페이퍼 환경일 보 후생신보 CLO CTS EBN e의료정보 F.E타임스 FPN IT동아 KBR Korea IT Times KOTRA해외시장뉴스 kt 롤스터 PD저널 RANK5 RPM9 The New York Times ubc울산방송 UPI뉴스)

## 나. 평등법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평등법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는 평등법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팩트체크 해야 할 기사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므로 모니터 시기를 2020년 1월로 소급 적용했다.

## 다. 평등법 관련 해외사례 팩트체크

평등법 관련 해외사례 팩트체크는 기존 언론 보도뿐 아니라, 블로그 등 다양한 글을 함께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단행본과 토론회 발제문, 언론사가 아닌 단체의 홈페이지 등의 글을 함께 수집했으며, 이 경우 해당 해외사례가 언급된 과거 원문 기사 등도 함께 수집했다.

### 3. 표기 주의사항

본 보고서 작성 시 법안을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한 ‘평등법 시안’, 통상적으로 지칭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평등법’ 으로 표기했다.

본 보고서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할 때에는 왜곡의 발생을 줄이고자 최대한 원문 보도를 그대로 옮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정도 거치지 않았다. 다만, 지면의 제한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은 중략했다. 보고서에서 보도의 제목은 < >에 표기했으며, 보도일자를 기입했다.

칼럼이나, 인터뷰 등 특별히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우에는 필자명을 기입했고, 이때는 최대한 해당 매체에서 소개한 필자소개를 그대로 실었다.

기사 원문 URL을 게재했으나, 작은 글씨로 처리했다.

## II. 제2장 평등법 관련 언론 보도 양적 분석

### 1. 총 보도량 분석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주간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살펴본 결과 총 784건으로 집계되었다. 각 보도에 대해서 보도유형, 보도 논조, 제목의 큰따옴표 유무를 분석했다. (<표 1> 참조)

총 보도량	보도유형			보도 논조			제목 큰따옴표 유무	
	사실 기사	의견 기사	인터뷰	긍정	부정	중립	있음	없음
784	625	110	49	201	267	316	302	482
100%	79.7%	14.0%	6.3%	25.6%	34.1%	40.3%	38.5%	61.5%

<표 1> 평등법 관련 총 보도량 분석(9/28~11/22 네이버 노출보도)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 가. 총 보도 유형

##### 1) 보도 유형 구분 결과 80%가 사실기사

수집된 기사가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모든 매체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기사 유형은 최대한 단순하게 △사실기사(스트레이트, 리포트, 기획 등) △의견기사(논평, 칼럼, 사설, 개인기고, 기자칼럼 포함) △인터뷰로 구분했다. 인터뷰 기사의 경우 인터뷰 형식임을 명기하지 않았으나 한 개인과의 문답 중심으로 기술된 기사도 포함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평등법 관련 보도가 사실기사(625건, 79.7%)였다. 의견기사(110건, 14%)와 인터뷰(49건, 6.3%)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 나. 총 보도 논조

### 1) 평등법 관련 긍정적 보도 25.6%, 부정적 보도 34.1%

각 기사의 논조를 평등법에 대한 △긍정 △부정 △중립 또는 해당 사항 없음 세 가지로 구분해보았다. 긍정과 부정의 경우 기사 내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정했고, 어떤 입장을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는 대부분 △중립 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논조와 상관없는 보도가 316건이었다. 긍·부정의 비율을 살펴보면 평등법에 대한 긍정적 논조를 보인 기사는 201건이었고, 부정적 논조를 보인 기사는 267건이었다.

총보도의 양적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언론의 평등법 보도 논조는 부정 25.6%, 부정 34.1%, 중립 40.3%이다.

## 다. 총 보도 큰따옴표 유무 분석

### 1) 보도의 38.5%가 제목에서 큰따옴표 처리

평등법 관련 보도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제목에 따옴표 처리를 한 보도들을 체크했다. 그 결과 제목에 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302건(38.5%)이었으며, 따옴표가 없는 제목이 482건(61.5%)이었다.

수집된 보도의 제목 대부분은 평등법과 연관 없는 다른 주제를 담은 제목이었다. 따라서 제목에 큰따옴표가 있다 하더라도, 평등법 관련 메시지 전달에 큰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평등법 관련해 앵무새 저널리즘이 많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2개월간에 걸쳐 특정 주제에 대해 수집하여 제목의 큰따옴표 유무를 살펴본 결과, 큰따옴표가 있는 보도가 38.5%가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큰따옴표 유무는 각 매체별, 매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

## 2. 매체별 보도량 비교 분석

### 가. 10건 이상 보도한 매체 분석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주간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살펴본 결과 총 784건을 어느 언론사가 보도했는지 살펴보았다. 관련 보도를 1건이라도 내놓은 언론사는 총 147개사였다.

이들 언론사의 보도를 보도량이 많은 매체 순서로 정리해보니 해당 기간 중 10건 이상을 보도한 언론사는 19개사였고, 이들의 보도량의 합은 498건으로 총 보도량의 784건의 63.5%를 차지했다. 이외의 10건 이하의 보도를 내놓은 언론사는 <표 2>와 같다.

구분	언론사명
9건	BBS
8건	미디어스, 연합뉴스
7건	뉴스토마토, 여성신문, 이데일리, 조선일보, 한국일보
6건	천지일보, 한국기독교공보, 현대불교신문
5건	레디앙, 로리더, 아시아경제, 뉴스랩
4건	MBC, 대경일보, 민중의소리, 시사인, 미래한국, 불교신문
3건	YTN, 경남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고발뉴스, 대한변협신문, 더팩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스카이데일리, 시사뉴스, 일다, 중앙일보, 참세상, 허프포스트, 법률신문, 단비뉴스, 이투데이, 뉴스프리존, 내외뉴스통신, BTN불교TV, 불교포커스, 금강일보
2건	가톨릭프레스, 굿모닝충청, 뉴데일리, 뉴스민,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부매일, 파이낸셜뉴스, 펜앤드마이크, 평화신문, 중도일보, 뉴스클레임, PD저널, 여성경제신문
1건	시타임스, TV조선, 강원도민일보, 고양신문, 글로벌이코노믹, 내일신문, 뉴스티앤티, 뉴스핌, 대구신문, 대학저널, 동양일보, 매일노동뉴스, 머니S, 법률방송뉴스, 베이비타임즈, 서울경제, 세이프타임즈, 시선뉴스, 씨네21, 에듀동아, 에이블뉴스, 연합뉴스TV, 이코노미스트, 인천투데이, 전민일보, 주간조선, 충북인뉴스, 충청리뷰, 충청일보, 폴리뉴스, 한국면세뉴스, 공무원수험신문, 일간투데이, e대한경제, 매일일보, 아주경제, 인천in, 영남일보, 싱글리스트, 한국교육신문, 한국대학신문, 헤럴드경제, 미주한국일보, 월간불광, 아이뉴스24, 투어코리아뉴스, 위키트리, 미주중앙일보, 지디넷코리아, 주간경향, 엘르, 단디뉴스, 울산제일일보, 리서치페이퍼, KOTRA해외시장뉴스, BBC, 전남매일, 팩트TV, 투데이코리아,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남도민신문, 경상매일신문, 헤드라인제주, 프레시안, 비마이너, 경북신문, 베리타스알파, 충청뉴스, 대전시티저널, 시사오늘

<표 2> 평등법 관련 보도를 10건 이하 게재한 언론사명(9/28~11/22 네이버 노출보도)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 1) 19개 언론사가 총보도량의 63.5%를 보도

10건 이상을 보도한 19개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어서 별도로 이들의 보도내용을 분석해보았다. (<표 3> 참조)

보도량	매체명	보도량 /백분율		보도유형			논조		
				사실 기사	의견 기사	인터뷰	긍정	부정	중립
		784	100%	625	110	49	201	267	316
1	크리스천투데이	103	13.1%	92	9	2	1	86	16
2	국민일보	78	9.9%	54	21	3	0	65	13
3	데일리굿뉴스	45	5.7%	43	0	2	0	33	12
4	뉴스앤조이	40	5.1%	23	12	5	24	3	13
5	CTS	27	3.4%	24	1	2	0	16	11
6	오마이뉴스	21	2.7%	15	6	0	14	0	7
	한겨레21	21	2.7%	15	5	1	19	0	2
8	경향신문	20	2.6%	14	4	2	10	0	10
9	서울신문	17	2.2%	15	2	0	9	0	8
10	뉴스1	16	2.0%	16	0	0	1	0	15
11	한겨레	15	1.9%	7	5	3	11	0	4
12	미디어오늘	14	1.8%	14	0	0	6	0	8
13	아시아뉴스통신	13	1.7%	12	0	1	0	8	5
14	노컷뉴스	12	1.5%	12	0	0	1	1	10
	뉴시스	12	1.5%	12	0	0	0	2	10
16	KBS	11	1.4%	9	1	1	3	0	8
	법보신문	11	1.4%	7	4	0	7	0	4
	경인일보	11	1.4%	3	2	6	10	0	1
19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10	1.3%	4	6	0	0	10	0
10건 이상 보도한 19개 언론사 보도량 합계		497	63.4%	391	78	28	116	224	157

<표 3> 평등법 관련 보도를 10건 이상 게재한 언론사 보도 분석  
(9/28~11/22 네이버 노출보도)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 2) 보도유형에서는 총보도와 큰 차이 없어

10건 이상 보도한 매체의 보도유형을 살펴보면 사실기사가 391건, 의견기사가 78건, 인터뷰가 28건이었다. 이는 전체 보도의 보도유형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논조 분석에서는 총보도 분석에서 긍정이 25.5%, 부정이 34.1%를 보도한 데 비해서 10건 이상 보도한 언론사는 긍정이 23.3%, 부정이 34%였다. 10건 이상 보도한 언론사의 통계를 봤을 때, 부정적 논조의 보도가 더 많았음을 볼 수 있다.

## 3) 1~5번째 많은 보도를 내놓은 매체가 모두 기독교계 매체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언론사는 103건을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였다. 이 수치는 평등법 관련 총 보도의 13.1%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양이다. 국민일보가 두 번째로 많은 보도량(78건, 9.9%)이었으며 세 번째는 데일리굿뉴스(45건, 5.7%), 뉴스앤조이가 네 번째(40건 5.1%), 다섯 번째가 CTS(27건, 3.4%)였다. 이처럼 1~5위까지의 보도량을 내놓은 매체가 모두 기독교계 매체라는 것은 눈에 띄는 특징이다. (<표 4> 참조)

부정 논조 비율 순위	매체명	총 보도량 순위	총 보도 량	논조			
				긍정		부정	
			784	201	25.6%	267	34.1%
1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19	10	0	0.0%	10	100.0%
2	국민일보	2	78	0	0.0%	65	83.3%
3	크리스천투데이	1	103	1	1.0%	86	83.5%
4	데일리굿뉴스	3	45	0	0.0%	33	73.3%
5	아시아뉴스통신	13	13	0	0.0%	8	61.5%
6	CTS	5	27	0	0.0%	16	59.3%
7	뉴시스	14	12	0	0.0%	2	16.7%
	노컷뉴스	14	12	1	8.3%	1	8.3%
9	뉴스앤조이	4	40	24	60.0%	3	7.5%

<표 4> 평등법 관련 부정 논조의 비율이 높은 언론사 분석(9/28~11/22 네이버 노출보도)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 4) 평등법 제정에 부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많은 1~5번째 매체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보도량을 내놓은 1~5위까지의 매체들의 논조가 지나치게 평등법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크리스천투데이와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 CTS의 부정적 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크리스천투데이가 긍정 보도가 1건 있었을 뿐, 타사는 모두 긍정 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비해 부정적 논조는 크리스천투데이 82.7%, 국민일보 83.3%, 데일리굿뉴스 73.3%, CTS 59.3%를 차지했다. 총 보도의 부정적 논조 보도비율이 34.1%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부정 논조 보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1~19위까지의 매체 중에서 부정 논조를 1건이라도 낸 언론사들을 추려보아도 19개 언론사 중 고작 9개 언론사뿐이었다. 그중 기독교계 매체는 아니지만 평등법 관련 부정적 논조를 많이 드러낸 언론사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10건 중 10건이 모두 부정적 논조로 100%)와 아시아뉴스통신(13건 중 8건이 부정보도로 61.5%)이 있다.

#### 5) 평등법 긍정 보도 돋보인 오마이뉴스·한겨레21

이외에 각 21건을 보도해서 공동으로 여섯 번째 보도량을 보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21은 평등법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제정 필요성을 보도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일간지 중에서 19개 매체에 속한 언론사는 경향신문(20건, 2.6%), 서울신문(17건, 2.2%), 한겨레(15건, 1.9%)였고, 주요방송사 중에서는 KBS만 11건(1.4%)로 그나마 관련 보도를 내놨다.

뉴스1이 16건(2.0%)을 보도해서 유일하게 10건 이상 보도한 언론사에 속한 통신사로 기록되었고, 미디어오늘이 14건(1.8%)을 보도했다.

### 나. 매체 유형별 보도량 분석

147개 매체의 총 784건 보도를 매체 유형으로 재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매체를 주요일간지, 주요방송사, 주요경제지, 주요통신사, 주요주간지로 나뉘어왔다.

주요 매체를 구분한 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류매체들이 평등법 관련한 이슈를 얼마나 다루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지역언론, 기독교언론,

기독교 이외의 기타 언론매체의 보도량 등과 비교를 위해서 분류했다.

어떤 매체를 주요 매체로 넣을 것인가는 일반적인 인지도 수준으로 정했고, 구체적 매체명은 <표 5>과 같다.

매체 구분	매체명	건수	백분율
주요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문화일보	151	19.3%
주요방송사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20	2.6%
주요경제지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16	2.0%
주요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36	4.6%
주요주간지	한겨레21, 시사인, 주간조선, 주간경향, 주간동아	27	3.4%
주요 매체 소계		250	31.9%
지역 매체	인천투데이, 고양신문, 뉴스민, 경북매일신문, 충청일보, 굿모닝충청, 대구신문 등	52	6.6%
기독교 매체	뉴스앤조이,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기독교공보, 노컷뉴스, CTS, 데일리굿뉴스, 기독교신문, 아이굿뉴스, 기독교타임즈	234	29.8%
기타 종교 매체	법보신문, 천지일보, 가톨릭프레스, BBS NEWS, 뉴스렙, 평화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불광, BTN불교TV, 불교포커스,	52	6.6%
기타 매체	기타 매체	197	25.1%
총 합계		784	100%

<표 5>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언론 유형별 분석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 1) 기독교 매체 보도 비중 29.8%로 압도적으로 많아

그 결과 총 보도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독교 매체(234건, 29.8%)였다. 이 수치는 매우 주요 매체를 모두 합친 소계(249건 31.8%)에 육박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일보를 주요일간지가 아닌 기독교 매체로 분류하게 된다면 기독교 매체의 보도는 312건으로 39.8%를 차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주요일간지의 151건(19.3%)이 73건(9.3%)으로 줄어들면서 주요 매체도 171건(22%)으로 줄어들

게 된다. 평등법 관련 이슈에서 기독교 매체가 얼마나 큰 비중 있게 보도하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하겠다.

두 번째로 기타 매체가 197건(25.1%)이지만 이것은 주요 매체 등을 55개 언론사를 제외한 92개사의 종합이기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다. 게다가 오마이뉴스의 21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기독교 매체가 이렇게 매우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서 다른 주요 매체들의 보도는 적은 편이었다. 주요방송사 2.6%(20건), 주요경제지 2%(16건), 주요통신사 4.6%(36건), 주요 주간지 3.4%(27건)는 모두 평등법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 2) 주요주간지는 긍정 논조 비중 높아

주요 매체의 논조와 제목 따옴표 여부만을 따로 분석해보았다. (<표 6> 참조)

구분	논조 분석						제목 따옴표			
	긍정		부정		중립		있음		없음	
주요일간지	33	21.9%	67	44.4%	51	33.8%	73	48.3%	78	51.7%
주요방송사	6	30.0%	0	0.0%	14	70.0%	13	65.0%	7	35.0%
주요경제지	2	12.5%	1	6.3%	13	81.3%	11	68.8%	5	31.3%
주요통신사	2	8.3%	1	5.6%	31	86.1%	16	44.4%	20	55.6%
주요주간지	24	88.9%	0	0.0%	3	11.1%	5	18.5%	22	81.5%
지역 매체	16	30.8%	12	23.1%	24	46.2%	10	19.2%	42	80.8%
기독교 매체	26	11.1%	145	62.0%	63	26.9%	89	38.0%	145	62.0%
기타 종교 매체	28	53.8%	2	3.8%	22	42.3%	24	46.2%	28	53.8%
기타 매체	63	32.0%	38	19.3%	96	48.7%	62	31.5%	135	68.5%
총보도량	201	25.6%	267	34.1%	316	40.3%	302	38.5%	482	61.5%

<표 6>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언론사 유형별 분석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긍정적 논조와 부정적 논조가 차이는 기독교 매체가 가장 컸다. 기독교 매체는 부정적 논조가 62%로 긍정 11.1%에 비해 매우 많은 것이다. 게다가 긍정적 논조는 대부분 뉴스앤조이 보도였다. 주요일간지는 긍정보다 부정이 2배 정도 많았다. 주요일간지의 부정적 논조도 44.4%로 긍정적 논조 21.9%의 2배 이상이다.

부정적 논조의 보도가 전혀 없었던 매체는 주요주간지와 주요방송사다. 그러나 주요방송사는 전체 보도 건수 자체가 적은 데다가 중립 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70%였던 데 비해서 주요주간지는 분명하게 긍정적 논조를 띄는 기사가 24건으로 88.9%를 차지했고, 부정적 논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한겨레21이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도를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 3) 방송사와 경제지 제목의 따옴표 처리 많아

보도의 제목에서 누군가의 발언을 따옴표 처리했는지 아닌지를 분석해보았다. 물론, 기사의 내용 중 평등법(또는 차별금지법)이 한두줄 언급된 보도도 모두 수집한 것이기에 제목에서 평등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으로 기사의 제목 처리 여부를 살펴봤을 때, 주요방송사와 주요경제지의 큰따옴표 처리 제목이 많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주요경제지가 제목이 있는 보도의 비율이 68.8%(11건), 주요방송사가 65%(13건)인데, 이는 총보도량에서 제목 따옴표가 있는 평균이 38.5%인데 비교해서 높은 것이다.

## 다. 주요 매체의 보도 분석

주요 매체의 보도량과 보도의 특이점, 논조, 제목 따옴표 처리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표7>, <표8>) 각 매체별로 주요일간지에서는 국민일보를 제외하면 경향신문이 가장 평등법 관련 보도를 많이 했다. 국민일보의 78건은 워낙 타사와 비교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분량이라서 별도로 기독교 매체와 함께 분석했다. 주요방송사 중에서는 KBS, 주요경제지 중에서는 아시아경제, 주요통신사 중에서는 뉴스1, 주요주간지에서는 한겨레21이 가장 평등법 보도를 많이 내놨다. 주요일간지 중에서 동아일보, 주요방송사 중에서 SBS, JTBC, 채널A, MBN, 주요경제지 중에서 한국경제는 관련 보도가 없었다.

구분	매체명	합계	보도유형						제목 따옴표			
			사실기사		의견기사		인터뷰		있음		없음	
	총보도량	784	625	79.7%	110	14.0%	49	6.3%	302	38.5%	482	61.5%
주요일간지	경향신문	20	14	70%	4	20%	2	10%	7	35.0%	13	65%
	국민일보	78	54	69.2%	21	26.9%	3	3.8%	41	52.6%	37	47.4%
	서울신문	17	15	88.2%	2	11.8%	0	0%	6	35.3%	11	64.7%
	세계일보	2	2	100%	0	0%	0	0%	1	50.0%	1	50.0%
	조선일보	7	7	100%	0	0%	0	0%	6	85.7%	1	14.3%
	중앙일보	3	2	66.7%	1	33.3%	0	0%	2	66.7%	1	33.3%
	한겨레	15	7	46.7%	5	33.3%	3	20.0%	6	40.0%	9	60%
	한국일보	7	5	71.4%	1	14.3%	1	14.3%	2	28.6%	5	71.4%
	문화일보	2	1	50%	0	0%	1	50%	2	100%	0	0%
주요방송사	KBS	11	9	81.8%	1	9.1%	1	9.1%	6	54.5%	5	45.5%
	MBC	4	3	75%	0	0%	1	25%	3	75.0%	1	25%
	TV조선	1	1	100%	0	0%	0	0%	1	100%	0	0%
	YTN	3	2	66.7%	0	0%	1	33.3%	3	100%	0	0%
	연합뉴스 TV	1	1	100%	0	0%	0	0%	0	0%	1	100%
주요경제지	서울경제	1	1	100%	0	0%	0	0%	1	100%	0	0%
	매일경제	3	3	100%	0	0%	0	0%	2	66.7%	1	33.3%
	아시아 경제	5	4	80.0%	1	20.0%	0	0%	2	40.0%	3	60.0%
	헤럴드 경제	1	1	100%	0	0%	0	0%	1	100%	0	0%
	머니 투데이	3	3	100%	0	0%	0	0%	3	100%	0	0%
	아주경제	1	1	100%	0	0%	0	0%	0	0%	1	100%
	파이낸셜 뉴스	2	2	100%	0	0%	0	0%	2	100%	0	0%
주요통신사	연합뉴스	8	8	100%	0	0%	0	0%	3	37.5%	5	62.5%
	뉴스스	12	12	100%	0	0%	0	0%	6	50.0%	6	50.0%
	뉴스1	16	16	100%	0	0%	0	0%	7	43.8%	9	56.3%
주요주간지	한겨레21	21	15	71.4%	5	23.8%	1	4.8%	5	23.8%	16	76.2%
	시사인	4	2	50.0%	2	50.0%	0	0%	0	0%	4	100%
	주간조선	1	1	100%	0	0%	0	0%	0	0%	1	100%
	주간경향	1	1	100%	0	0%	0	0%	0	0%	1	100%

<표 7>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주요 언론사 보도 분석  
(보도유형, 따옴표)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구분	매체명	합계	논조					
			긍정		부정		중립	
	합계	784	201	25.6%	267	34.1%	316	40.3%
주요일간지	경향신문	20	10	50.0%	0	0%	10	50%
	국민일보	78	0	0.0%	65	83.3%	13	16.7%
	서울신문	17	9	52.9%	0	0%	8	47.1%
	세계일보	2	0	0.0%	0	0%	2	100%
	조선일보	7	0	0.0%	0	0%	7	100%
	중앙일보	3	1	33.3%	0	0%	2	66.7%
	한겨레	15	11	73.3%	0	0%	4	26.7%
	한국일보	7	2	28.6%	0	0%	5	71.4%
	문화일보	2	0	0.0%	2	100%	0	0%
주요방송사	KBS	11	3	27.3%	0	0.0%	8	72.7%
	MBC	4	2	50.0%	0	0%	2	50.0%
	TV조선	1	0	0.0%	0	0%	1	100%
	YTN	3	1	33.3%	0	0%	2	66.7%
	연합뉴스TV	1	0	0%	0	0%	1	100%
주요경제지	서울경제	1	0	0%	0	0%	1	100%
	매일경제	3	0	0%	0	0%	3	100%
	아시아경제	5	1	20%	0	0%	4	80%
	헤럴드경제	1	1	100%	0	0%	0	0%
	머니투데이	3	0	0%	1	33.3%	2	66.7%
	아주경제	1	0	0%	0	0%	1	100%
	파이낸셜뉴스	2	0	0%	0	0%	2	100.0%
주요통신사	연합뉴스	8	2	28.6%	0	0%	5	71.4%
	뉴스스	12	0	0.0%	2	16.7%	10	83.3%
	뉴스1	16	1	6.3%	0	0%	15	93.8%
주요주간지	한겨레21	21	19	90.5%	0	0%	2	9.5%
	시사인	4	4	100%	0	0%	0	0%
	주간조선	1	1	100%	0	0%	0	0%
	주간경향	1	0	0%	0	0%	1	100%

<표 8>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주요 언론사 보도 논조 분석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 1) 주요일간지 분석

경향신문은 20건 중 사실기사 14건(70%), 의견기사 4건(20%), 인터뷰 2건(10%)으로 타사에 비해서 고른 분포였다.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따옴표 처리를 한 보도도 평균인 38.5%보다 적은 35%(7건)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표 7〉 참조)

보도 논조에서는 50%(10건)이 긍정적 논조였고, 중립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50%(10건)이었다. 부정적 논조의 보도는 없었다. 다음으로 17건을 보도한 서울신문, 15건을 보도한 한겨레가 일간지 중에서 평등법 관련 보도를 많이 내놨다. (〈표 8〉 참조)

의견기사를 많이 낸 주요일간지는 5건(33.3%)을 보도한 한겨레이다. 평등법 관련 여론 형성과 관련해서 의견기사는 주요한 의미가 있다. 한겨레는 인터뷰도 3건(20%)으로 다양한 보도유형을 활용한 것이 돋보였다. 제목 따옴표 처리 여부는 한국일보가 가장 바람직했다. 한국일보는 7건 중 5건(71.4%)이 따옴표 처리하지 않은 제목이었다.

평등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조를 보인 주요일간지는 문화일보(2건, 100%), 국민일보(65건, 83.3%)뿐이었다. 평등법에 대해 긍정적 논조의 보도를 단 한건도 내지 않은 주요일간지를 살펴보면,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이다. 평등법 관련 긍정 보도 비율이 가장 높은 매체는 한겨레(11건, 73.3%)였고, 서울신문(9건, 52.9%), 경향신문(10건, 50%)이다.

## 2) 주요방송사 분석

주요방송사 중 KBS가 11건을 보도해서 타사에 비해 많았고, MBC가 4건, YTN인 3건을 보도했다. 눈에 띄는 결과는 주요방송사 보도에서 긍정적 논조가 KBS(3건, 27.3%), MBC(50%, 2건), YTN(1건 33.3%)뿐이었지만, 부정 논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방송사의 제목의 큰따옴표 처리는 타 매체에 비해서 비율이 높았다. 제목의 큰따옴표가 있는 비중은 주요 경제지가 68.8%로 가장 높았고, 주요방송사가 6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총 보도량 평균의 큰따옴표 처리 비중이 38.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각 방송사 별 큰따옴표 비중을 살펴보면, YTN과 TV조선이 100%였고, MBC가 75%로 높았다.

## 3) 주요경제지 분석

주요경제지 중에서는 아시아경제 5건, 매일경제와 머니투데이가 3건 보도한 것이 가장 많은 보도량이었다. 워낙 보도량이 적었기에 특별히 짚어볼 만한 지

점은 없다. 그러나 과연 평등법이라는 이슈는 결코 경제와 무관한 사안이 아니다. 최소한 기업의 고용, 서비스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제지의 평등법에 대한 무관심은 적절치 않다.

#### 4) 주요통신사 분석

통신사는 전반적으로 방송사와 경제지보다는 평등법 보도가 많이 나온 편이다. 뉴스1 15건, 뉴스시 12건, 연합뉴스 8건이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관련 보도를 민영통신사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내놓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와 뉴스1은 평등법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보도를 단 한건도 내지 않고, 긍정적 논조의 보도를 각각 2건, 1건씩 내놨다. 연합뉴스와 뉴스1은 대체로 중립적 입장에서 평등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처럼 적은 보도로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에 아쉬움이 크다.

한편 뉴시스도 평등법 관련 부정 논조의 보도를 2건(16.7%) 게재했다.

#### 5) 주요주간지

한겨레21이 21건으로 주요주간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를 했다. 한겨레21은 사실기사 15건(71.4%), 의견기사 5건(23.8%), 인터뷰 1건(4.8%)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제목의 따옴표도 5건(23.8%)으로 타사에 비해 많지 않았다. 한겨레21의 보도 논조는 19건(90.5%)에서 긍정적이었다. 한겨레21은 평등법 제정이라는 이슈를 분명하게 자사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꾸준히 ‘아젠더 키펡’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사인도 4건을 보도했는데 모두 평등법에 긍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조간조선과 주간경향이 모니터 기간 중 각 1건씩 보도했다.

### 라. 기독교 매체의 보도 분석

평등법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독교 매체였다. (<표 9>, <표 10> 참조)

	합계	보도유형						제목 따옴표			
		사실기사		의견기사		인터뷰		있음		없음	
총보도량	784	625	79.7%	110	14%	49	6.3%	302	38.5%	482	61.5%
국민일보	78	54	69.2%	21	26.9%	3	3.8%	41	52.6%	37	47.4%
CTS	27	24	88.9%	1	3.7%	2	7.4%	6	22.2%	21	77.8%
노컷뉴스	12	12	100%	0	0%	0	0%	3	25%	9	75%
뉴스앤조이	40	23	57.5%	12	30.0%	5	12.5%	17	42.5%	23	57.5%
데일리굿뉴스	45	43	95.6%	0	0.0%	2	4.4%	10	22.2%	35	77.8%
크리스천 투데이	103	92	89.3%	9	8.7%	2	1.9%	49	47.6%	54	52.4%
한국기독교공보	6	6	100%	0	0.0%	0	0%	3	50.0%	3	50.0%

<표 9>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기독교 매체 보도 분석  
(보도유형, 제목따옴표 유무)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매체명	합	논조					
		긍정		부정		중립	
합계	784	201	25.6%	267	34.1%	316	40.3%
국민일보	78	0	0%	65	83.3%	13	16.7%
CTS	27	0	0%	16	59.3%	11	40.7%
노컷뉴스	12	1	8.3%	1	8.3%	10	83.3%
뉴스앤조이	40	24	60%	3	7.5%	13	32.5%
데일리굿뉴스	45	0	0%	33	73.3%	12	26.7%
크리스천 투데이	104	1	1.0%	86	82.7%	17	16.3%
한국기독교공보	6	0	0%	6	100%	0	0%

<표 10>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기독교 매체 보도 논조 분석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 1) 크리스천투데이 보도 분석

크리스천투데이는 총 104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였다.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유형은 대부분이 사실기사(92건, 89.3%)였다. 크리스천투데이의 의견기사(9건, 8.7%), 인터뷰(2건, 1.9%)보다 사실기사 위주로 관련 내용을 전한 셈이다. 의견기사와 인터뷰 비중은 타 매체와 비교해도 적은 편이다.

한편, 기사의 논조는 1건만 긍정적 기사였고, 있었고, 86건이 부정적 논조, 17건이 중립 또는 해당 사항 없음 기사였다.

## 2) 국민일보 보도 분석

국민일보는 타사에 비해 의견기사가 많았다. 총 78건 중에서 21건(26.9%)이 의견기사이다. 이 수치는 총보도량 평균 14%보다 많은 것이며, 전체 개별 언론사의 의견기사 보도 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제목의 따옴표 처리도 41건(52.6%)로 평균인 38.5%보다 많은 편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의 사례를 주제로 한 해외사례 관련 보도도 4건(5.1%) 있었는데, 이 또한 보도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이었다. 보도 논조는 65건(83.3%)가 부정적 논조이고, 긍정적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쓴 칼럼도 있지만, 설교문이나 발제문을 요약한 글도 있으며, 바이라인은 기자인데 기사 안에 다른 필진의 사진이 게재된 경우도 있었다. (< ‘성적지향’ 명시 인권헌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서울대 버전 >(11/13, 임보혁 기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이들 보도의 특징은 모두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비판하고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해당 의견기사의 구체적 제목과 필자 목록은 <표11> 참조) 의견기사는 의견이기에 어떤 주장이나 내용을 담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일보의 의견기사 중 많은 부분이 정밀한 팩트체크가 요구되는 내용이었다.

일자	제목	필자
10-09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부당한 국민 주권 침해 /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3 / 구속력 없는 권고와 결의	이상헌 송실대 법대 교수
10-09	[칼럼] 이스라엘 망국의 가장 큰 원인은 ‘음행’ 이었다 /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7	조영길 변호사 (일터성경학교장)
10-16	[오늘의 설교] 하나님의 나라 /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설교문 요약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교회총연합 상임회장)

10-16	여성 경기에 성전환자 선수 출전... 남의 나라 일 아니다 /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3 /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반박	전윤성 미국 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10-16	[칼럼] 음행 정당화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8	조영길 변호사 (일터성경학교장)
10-16	“성정체성 다양화는 사회적 질서 파괴, 평등 위해 자유 억압한다면 통제사회” /국민미션포럼/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발제요약	장순홍(한동대 총장)
10-16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성에 관한 본질 침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 희생시키면 안돼” /국민미션포럼/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발제요약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10-16	“평등이념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 침해 불명확한 개념에 따른 자의적 집행 위험” /국민미션포럼/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발제요약	음선필(홍익대 법학과 교수)
10-23	[칼럼] 여성권 보호한다면서 되레 파괴하는 젠더의 허구성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9	조영길 변호사 (일터성경학교장)
10-23	남녀 ‘성별 정체성’ 혼란 불보 듯... 징병제 훼손·역차별 가능성 /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5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 언론중재위원)
10-30	[칼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10	조영길 변호사 (일터성경학교장)
10-30	기독교 언론의 동성애 비판조치 막아...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6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06	[칼럼] 진리와 윤리를 보는 기본관점과 동성애에 대한 평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11	조영길 변호사 (일터성경학교장)
11-06	‘진리의 상아탑’ 서울대서도 동성애 비판에 재갈 물리려 드나 /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7	남승호(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11-09	[사설] 방심위, 차별금지법 반대 언론에 재갈 물리나	
11-09	[특별기고] 앵그리 사회, 앵그리 처치를 극복하자	소강석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새에덴교회)
11-12	[기고] 거센 태풍이 부는 시대... 더 센 기도의 태풍이 불어야 할 때	데이비드 차 (KAM선교회 대표·선교사)
11-13	‘성적지향’ 명시 인권헌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서울대 버전 /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8	임보혁 기자/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11-13	[칼럼] 동성애의 부도덕성과 반윤리성 논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12	조영길 변호사(일터성경학교장)
11-20	차별금지 규정 따라 서울대에 성중립 탈의실이 생긴다면... /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9	전윤성 미국 변호사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11-20	[칼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허구성을 분별하는 성경적 방법 (1)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13	조영길 변호사 (일터성경학교장)

<표 11>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국민일보 의견기사 필진 목록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한편, 국민일보의 평등법 관련 의견기사는 대체로 종교지면에 배치되어있으며, 외부기고가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1월 9일자 <방심위, 차별금지법 반대 언론에 재갈 물리나>는 종교 지면이 아닌 본지이며, 언론사의 공식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국민일보 <사설/방심위, 차별금지법 반대 언론에 재갈 물리나>(2020.11.9.)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담았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 기계적 객관성이라는 잣대만 들이댄다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학교 등에서 성직자의 동성애자 비판 발언이 금지되는 점, 성소수자인 입사 지원자가 탈락했을 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회사가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점 등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심의 결과와 평등법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자 왜곡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는 조항,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을 들어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토론 방송임에도 ‘반대 주장’ 만을, 그것도 상당히 왜곡된 주장만을 담았다는 지적이다. ‘왜 왜곡된 반대 주장만을 반론도 없이 담았냐’ 고 지적하자 국민일보는 ‘반대 주장만 담은 게 뭐가 문제냐’ 고 되물은 셈인데 ‘토론’ 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 나온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는 식의 주장은 기계적인지 유기적인지와 무관하게 단지 사실이 아닐뿐이다. 즉,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 3) 뉴스앤조이

기독교 매체 중에서 뉴스앤조이만 평등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가 많았다. 뉴스앤조이는 40건 중 24건인 60%가 긍정적 논조였고, 부정적 논조가 3건인 7.5%였다. 보도유형은 57.5%인 23건이 사실기사, 의견기사가 30%인 12건, 인터뷰가 12.5%인 5건으로 비교적 타사에 비해 보도 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뉴스앤조이도 42.5%인 17건에서 큰따옴표 제목이 있었다.

뉴스앤조이의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팩트체크 보도이다. 이번 모니터 기간 중 784건의 보도 중에서 평등법 관련된 팩트체크 성격의 보도가 있는지 점검해본 결과 고작 9건뿐이었다. 그리고 그중 4건이 뉴스앤조이의 보도였다. (<표 12> 참조)

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기사를 통한 일방적인 주장에만 그치지 말고 관련내용을 최대한 팩트체크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평등법 관련한 치열한 고민이나 논쟁도, 사실여부에 대한 치밀한 팩트체크도 매우 부족하다. 그저 입장을 정해놓은 듯한 찬성과 반대만 부딪치고 있고, 그 와중에 주류언론은 이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인 것이다.

매체명	보도일자	제목
시선뉴스	09-30	[육아의 발견] 동성애자 유치원교사, 맘카페에 올리면 명예훼손일까?
뉴스앤조이	10-16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 차별금지법 이어 이번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또 '확대해석'
연합뉴스	10-21	“다수가 배제됐다“ 미 테러 피해자, 수단 테러지원국 해제 반발
뉴스앤조이	10-27	[팩트체크] 영국엔 평등법으로 징계받은 목사가 있다?
한겨레	10-31	[팩트체크] 동성애는 치료하면 바뀔 수 있다?
뉴스앤조이	11-04	허위 주장에도 마이클 대 줘야 하는가
뉴스앤조이	11-09	[뉴스레터 '처치독' 10호] 콘크리트 틈새 들끓처럼
미디어스	11-10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한다?
오마이뉴스	11-15	성소수자 차별하면서 기독교의 사랑 실천?

<표 12> 평등법 관련 네이버 노출 보도(9/28~11/22 8주간) 팩트체크 보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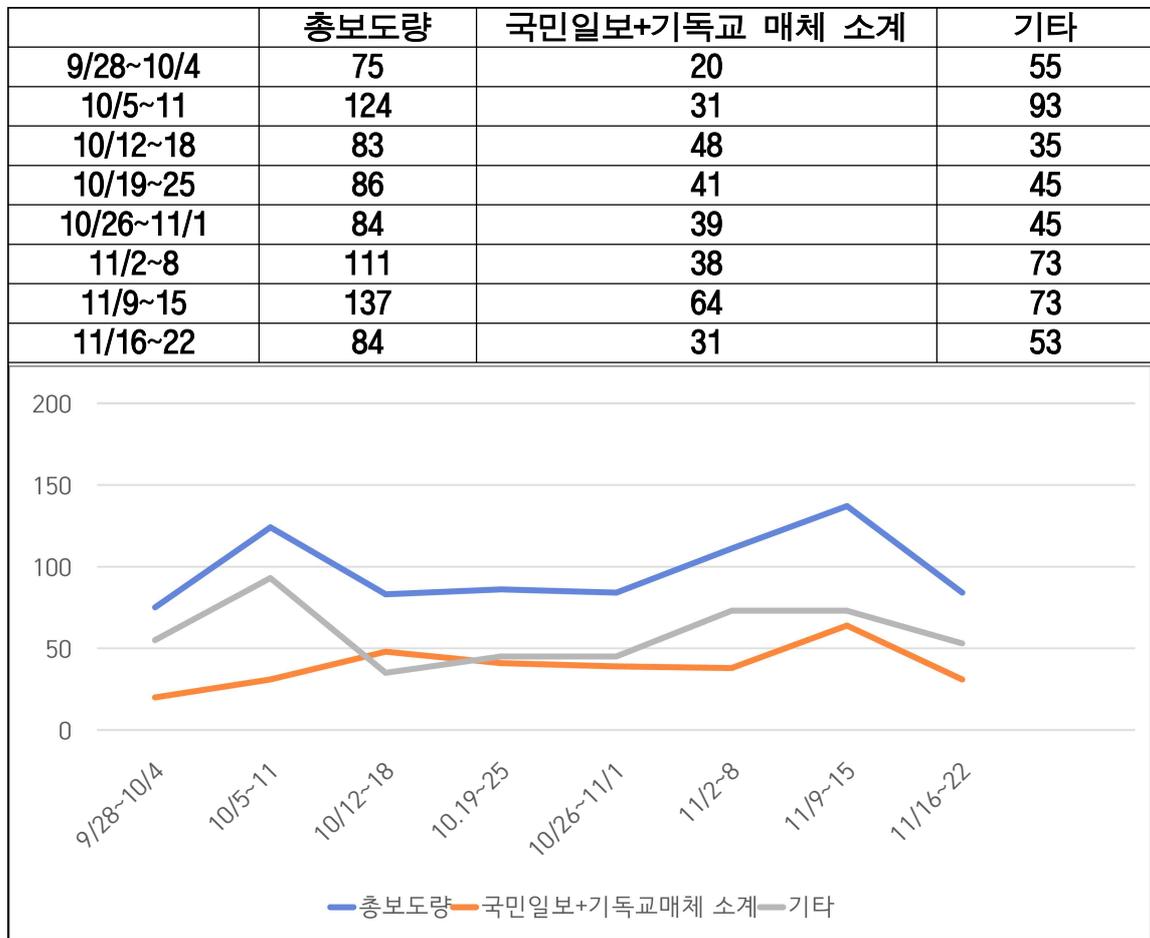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 3. 시기별 보도량 추이 분석

#### 가. 추이분석 일반

분석 시기별 보도량 추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모니터 1주차인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75건, 2주차인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124건, 3주차인 10월 12일~18일까지는 83건, 4주차인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86건, 5주차인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84건, 6주차인 11월 2일부터 8일까지는 111건, 7주차인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137건, 8주차인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84건 보도되었다.

2주차와 7주차에서 보도량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참조)



<표 13> 평등법 관련 보도량 시기별 분석(9/28~11/22 네이버 노출보도)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 나. 기독교 매체와 기타 매체와의 보도량 변화 비교

주간 보도량을 평등법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기독교 매체와 국민일보의 보도량 합산과, 그 이외의 매체 보도량 합산으로 나눠서 비교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도량 그 결과 기독교 매체와 국민일보의 보도량에서 차이가 있었다.

### 1) 비 기독교 매체의 보도량 증가 후 기독교 매체 보도량 증가

우선 모니터 2주차(10/5~11)에 9월 5주차에 비해 기타 매체는 보도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기독교 매체와 국민일보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그 다음주인 모니터 3주차(10/12~10/18)에는 기타 매체들이 보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도리어 기독교 매체와 국민일보는 보도량이 많아졌다. 모니터 6주차(11/2~8)에는 기독교 매체와 국민일보는 기존 보도량과 비슷했지만, 기타 매체에서는 보도량이 늘어났다가, 다음주인 7주차(11/9~15)에 국민일보와 기독교 매체가 기타 매체 수준으로 보도량이 늘어났다.

### 2) 인권위 개신교와 간담회 보수 기독교 매체는 보도하지 않아

해당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평등법 이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시기에 일부 매체가 평등법과 관련해 한국의 일상 속 차별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비교적 많이 내놨다. 특히 이 시기는 한겨레21이 평등법 관련 기획 시리즈 <차별금지법을 이 땅에>를 연재하고 있었다. 한겨레21은 <미세먼지만큼 해로운 미세 차별>(2020.10.5.)을 통해 일상 속 습관이나 관행, 말버릇으로 스며든 무의식적 차별과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오마이뉴스 역시 <차별금지법과 청소년 인권>이라는 연재의 두 번째 기사 <차별이 금지되어야 스쿨미투가 들린다(2020.10.6.)>에서 학교 내 차별 방지와 스쿨미투 등 청소년 인권 차원에서 평등법의 긴급한 필요성을 점검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평등법 관련 기획 연재는 종료되거나 보도량이 급감했고 여타 매체들의 평등법 보도량 증가폭 역시 기독교 매체 및 국민일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뿐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매체가 침묵한 측면도 있다. 먼저 10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관련해서 개신교계와 대화를 본격화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기독교 매체와 국민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기독교 매체의 보도는 노컷뉴스의 <인권위, '평등법' 제정 관련 개신교와 간담회...“계속 대화“>(2020.10.7.) 1건뿐이었다. 이에 비해 전체 기간에 걸쳐 평등법 보도가 상당히 부족했던 MBC 1건, 기독교 외 종교 매체인 천지일보에서 1건, 기타 전문지인

베이비타임즈 1건, 뉴스1에서 관련 보도를 내놨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당선이다. 10월 9일 정의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는 6월 29일 자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정치권 이슈라 다른 매체에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언급과 함께 상당히 보도가 많았던 편인데 보수 기독교계 매체는 조용했다. 타 매체에서는 김종철 대표 관련 보도만 13건이었고 이는 단일 이슈로서는 이 기간 가장 많은 보도량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2019년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의 결정을 철회하자는 안을 예장통합이 심의 중이었다. 교리에 어긋남에도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용인한 예장통합의 결정은 논란이 됐다. 이에 교단 내에서도 이 결정을 정상화해 교회 세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이슈는 뉴스앤조이가 1건 내놓은 것 이외에는 주요 기독교 매체와 국민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10월 5일부터 11일 사이 차별 실태 관련 기획 연재와 평등법 관련 중대한 다른 현안으로 타 매체에서 보도량이 증가할 때 기독교 매체는 평이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 3) 방통심의위 중징계한 방송에 대해 비판한 기독교 매체

6주차(11/2~8)에 기타 매체에서는 보도량이 늘어나고 7주차(11/9~15)에 국민일보와 기독교 매체가 기타 매체 수준으로 보도량이 늘어난 배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 보인다. 극동방송과 CTS기독교TV는 평등법 관련 토론을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 되었다.

해당 방송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군형법은 무력화된다. 군대 내 성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다’ 그러면 가해자가 아니라 특혜를 받게 된다”,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게 된다” 등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을 반론도 없이 내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월 21일과 28일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이어 11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단계 낮은 ‘주의’를 의결했다.

기타 매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의 법정제재 결의 시기부터 이 사안을 보도했기 때문에 6주차에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일보와 기독교 매체는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주의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 관련 보도를 냈다. 기독교 매체의 보도들은 대부분 방통심의위 의결이 ‘교회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 Ⅲ. 제3장 평등법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과 기사에는 평등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제기가 담겨있다. 3장에서는 분석 대상 언론보도에 담긴 평등법 관련 논쟁사안을 수집한 뒤, 팩트체크했다.

#### 1. 법 체계 관련 주요 쟁점

가. 현재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또 다른 개별법을 제정하여 보완할 수 있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크리스천투데이 <기존 법체계 무너뜨리고 무소불위 권력 인권위에 / [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을 숨기고 있나?②>(2020.8.2.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458>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은 현재도 많다. 이에 따르면 여성차별금지, 여성가족부, 장애인 차별금지, 고용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 법무부와 같이 범집행기관이 다르다. 차별의 본질이나 형태, 피해 등이 다르므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무부서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보호됐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기존의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모든 차별을 판단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권위로 몰아주려는 것이 아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웃는 얼굴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특정 그룹의 소수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막아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헌법과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역차별의 초갈등사회’를 만들려는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크다. 이에 국회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 나) 국민일보 <[기독교논단]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11.24. 장성철 목사·연세대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6162&code=23111414&cp=nv>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차별금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양성차별, 장애인 차별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현행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획일화를 통해 숨은 의도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주된 타겟으로 하는 매서운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현재 일부 개별 차별금지 사유와 개별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이용, 사법·행정절차 등의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 영역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 영역에서 성별, 혼인, 가족 내 지위,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적인 영역과 사유마다 법을 빠짐없이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고,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떤 사람이 현실에서 차별을 받았는데,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영역과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

## 나. 평등권은 사적영역에 대한 평등원칙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 침해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뉴데일리 <[김학성 칼럼] 성경을 덮고, 차별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논한다/ 차별금지법은 위헌적 법률... “평등의 일반화, 타인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2020.10.28. 김학성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 한국헌법학회 고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8/2020102800055.html>

“차금법이 위헌인 이유는, 첫째 평등의 일반화는 매우 위험하다. 평등의 확대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 특히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평등의 일반화는 매우 세심한 자유와 권리조정이 필요하고, 신중을 요한다. 평등을 포함하여 자유권의 사인 간 적용 확대는 기본권 확대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 축소나 위협이 된다.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의 일반화는 너무 많은 사람의 기본권을 너무 많이 훼손한다. 차금법은 한쪽만 보고 있다.”

“셋째, 차금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목숨과 같은 것으로 피를 흘려 쟁취한 인류의 가장 기본적 자유다. '달리하는 성적지향'에 대한 비판은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한 것이고, 다른 입장의 표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당하다거나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원동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성적지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하는 것은 그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 한 표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더욱이 '다른 성적지향'을 지지·찬성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를 반대하는 경우에만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매우 부당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 반집회의 자유도 보장되듯, 특정 성적지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

“차금법을 반대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비난하거나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라는 것이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차별은 자신의 편견이나 오해에 기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적인 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 규제가 정당화되는 법 규율의 대

상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와 권리가 충돌할 때, 그것이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인가보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유지할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다양하게 개입한다. 예컨대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규제는 사적 영역이라 하겠지만, 국가가 후견적 보호자의 입장에서 개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은 교육의 영역(제31조), 노동의 영역(제32, 33조), 통신과 방송 등 언론의 영역(제21조 제3항), 광고와 같은 표현영역(제21조 제4항), 각종 사회적 서비스의 영역(사회보장, 사회복지, 보건, 위생, 주거, 혼인과 가족, 모성보호 등 제34-36조) 등에서 국가의 개입과 규율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영역을 조성하고 형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법은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헌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적 개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사회영역-즉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차별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다. 평등법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진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크리스천투데이 < “정의당안 차별금지법, 헌법의 평등규범체계 근본적 거부” /복음법률가회, 문제점 알리고 바른 법적 근거 제시>(2020.10.20.)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361>

- 음선필 교수 발언 관련 보도 중

그는 “개별 법률은 차별(금지)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차별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게 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숨은 의도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나) 법률방송뉴스 < “국가보안법이 무색한 과잉입법... 차별금지법, 이념·종교 떠나 법적으로 따져보자” / 토론회 현장... “법안 핵심은 강제성, 헌법 위에 있

는 ‘무소불위의 법’ 될 것” >(2020.9.4.)

<http://www.i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1>

이에 대해 윤용근 변호사는 인권과 평등은 당연히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이나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성 심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평등’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평등법은 여러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와 같은 차별금지영역에서 구체적인 차별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양상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평등법이 차별금지 사유들을 별도의 위계적 분류 없이 대등하게 나열했다고, 그것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잣대에 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평등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이며 이때 “합리적 이유”는 그때그때의 사건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처럼 합리성 요건 충족의 여부에 따라 평등법상의 제재가 작동하게 되는 만큼 이를 두고 획일적으로 비례원칙의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학)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주장이라 볼 수 있다.

라. 피소된 사람이 차별 행위가 없었다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 적정성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크리스천투데이 <지형은 목사 “차별금지법, 법적 적정성 문제 심각” / ‘제1회 신학자와의 대화’ 포럼서 교단과 자신의 입장 피력>(2020.10.1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197>

‘제1회 신학자와의 대화’ 포럼서 교단과 자신의 입장 피력 / 지형은 목사 (기성 부총회장, 성락교회 담임목사, 기성교단 총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 중

그는 차별금지법의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지 목사는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피소된 사람이 차별 행위가 없었다고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적 적정성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 나) 법률방송뉴스 <“법질서 근본적 변동, 법체계 충돌 우려“... 국회 법사위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서'>(2020.09.24.)

<http://www.i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9>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차별 여부 '입증책임'을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중략)

앵커 : 각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조문 검토 내용은 어떤가요.

기자 : 검토보고서의 핵심인데, 차별의 정의부터 범위, 의무, 시정명령, 구제 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등 14개 핵심 조문이자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 조항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볼까요.

기자 : (중략) 입증책임 전환 조항에 대해서도 그 취지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 하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 사실에 대한 증명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되, 그 차별 사실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은 상대방이 하도록 입증 책임을 분배한 것이다. 상대방은 차별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면 된다. 따라서 그 차별이 위법한 차별인지의 여부, 차별적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입증의 책임만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이다.

우리 법제는 이런 형태의 입증 책임 배분은 적지 않게 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남녀고용평등법도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신탁법, 자동차관리법, 자본시장법, 자동차손배법, 전기통신사업법, 주차장법 등에서 입증 책임을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게만 두지 않고 배분하고 있다. 이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 방식이나 그 양태는 피해구제의 필요성이나, 손해의 입증에 대한 부담, 주의의무의 배분 등의 입법목적에 따라 각각 나뉘므로 입증 책임들을 형평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 2. 종교의 자유 논쟁

### 가. 평등법은 종교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국민일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의당 법안’ 실상을 밝히다>(2020.7.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152>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답변 중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나) 국민일보 <[기독교 논단]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2020.11.24. 장성철 목사·연세대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6162&code=23111414&cp=nv>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인권 보호 및 평등 사회구현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문제를 떠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행이다. 또한, 건강한 가치관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엄중히 밝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이다. 자유는 인간인 존엄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유 없는 평등, 자유를 심하게 위협하는 평등의 실현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희생하면서 소수자의 평등을 이렇게까지 우위에 두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크리스천투데이 < “종교 관련 차별금지법, 기독교 대 쫓겠다는 의도” /국  
적, 인종, 종교 측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분석>(2020.12.01. 송경호 기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344>

‘종교와 관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신영철 위원은 “ ‘종교’ 항목만은 서구의 관점만이 아닌 국내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조계종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온 중요한 배후세력”이라고 했다. “

” 신 위원의 발제와 관련,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한 박성제 변호사(Advocates Korea 이사)는 “이제까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는 ‘종교’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헌법상의 종교 차별금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종교를 차별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이 되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타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종교단체, 종립학교라도 타종교인을 직원과 교수로 채용해야 하고, 자기 종교로 자격을 제한하면 종교 차별이 된다. 신학교와 선교단체에서 예배 참석을 필수로 할 경우, 차별금지법상의 종교 강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자유 중 하나인 선교의 자유는 타종교를 비판하면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신도를 규합, 모집할 자유가 핵심인데, 타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종교단체, 종립학교, 종립기업 및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신앙인에 대해서까지도 종교 차별금지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고 했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종교·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내심의 종교·사상의 자유와 달리,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공적인 영역과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평등법의 본질이다.

한국의 평등법이 과도하게 영역을 광범위하게 한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 대부분에서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또는 공급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평등법이 차별을 금지한 영역은 누구

에게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영역이다. 이와 같은 삶의 기본 영역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마땅히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이런 권리를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그러나 평등법은 기본적인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다. 기도, 미사, 예배, 법회 등 각 종교 고유의 기본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평등법의 규율 영역이 아니며,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종교기관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공급을 할 때는 평등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때는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차별금지’의 내용도 포함된다. 종교 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차별금지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나. 평등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성애 비판 설교 방송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크리스천투데이 < “ ‘반동성애 설교만으로 감옥 간다’ 는 표현은 사용 않길” /복음법률가회, ‘정의당 차별금지법 소개 유의사항’ 발표> (2020.8.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643>

복음법률가회는 “정의당 법안에 따를 경우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소위 공적 영역(4영역 :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이용, 행정)에서는 금지되며, 특히 SNS, 유튜브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전파가 금지되는 점은 강조해도 좋다” 고 했다.

또 “교회 예배당 내 반동성애 설교가 시설 이용 조항(26조), 문화 공급 조항(25조),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 광고 조항(3조1항5호)에 해당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과 실무법률가들의 의견” 이라며 “따라서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 고 했다.

이어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

입장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법 위반 판단은 법원 소관으로,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했다.

## 나)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오피니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한국교회가 직면할 예상 상황?>(10.25. 박성제 변호사·한국 기독교문화연구소 사무국장)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954>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 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를 하셔야 할 것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 제3조 제4호와 제5호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표현’ 을 혐오표현의 한 형태로 보고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제4호의 경우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제공이나 이용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5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종교’ 가 포함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정신적 자유권으로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받으며,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과 선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이단(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과 등)과 과격이슬람에 대한 비판과 선교활동은 종교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된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평등법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라는 4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설교나 길거리 전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평등법에서 말하는 광고를 적용해서 처벌되리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평등법은 방송을 시청하거나 신문을 공급받을 때, 문화·체육·오락을 이용할 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시설에서의 어떤 내용이나, 방송·문화의 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 시설에서 차별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 또는 방송에서 차별적인 내용을 방송한 경우는 평등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주자라는 이유로 종교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각 장애인에게 방송을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평등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나 시설에서 특정 종교 신자만을 채용하거나 이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신앙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못 하게 된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국민일보 <[기독교 논란]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2020.11.24. 장성철 목사, 연세대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6162&code=23111414&cp=nv>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의 4개 분야에서의 차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종교단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자임을 요구하거나 개종을 권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종교단체에서 사이비 이단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때 종교단체의 대표자(주지스님, 주임신부, 담임목사)가 처벌받게 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종교단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된다(제39조). 특히 일반 언론은 물론이고 종교방송을 통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타종교에 대한 비판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종교방송 자체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종교인의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거나 일부러 진실을 숨기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3가지 차별사유 중에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도 포함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가령 교회에서 이단사이비의 폐해와 실상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여기에 참석한 이단교파 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강사나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평등법 위반으로 제재 받게 된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평등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종교 등을 이유로 달리 대우하는 행위가 무조건 차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교시설 등에서 채용하려는 직무나 사업

이 종교의 본질적 목적에 해당하거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이 되지 않는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 교육기관, 교목 임용 등에서 종교적 특수성을 요구하는 것 등이 여기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한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등법에 따른 고용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정 종교의 이념으로 설립되었다고 해도 그 종교의 ‘신자’ 들로만 입학이나 고용을 한정한다면 차별이 될 수 있다.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각종 시설도 같은 종교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에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떠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 3. 성 평등 관련 논쟁

가.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성별정체성” 등의 개념은 주민등록제도 폐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크리스천투데이 <법조인이 본 차별금지법 “위헌적 요소 너무 커” /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뿐 아니라 법·행정 큰 혼란 야기>(2020.09.08.)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383>

-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의 발제 내용을 보도하는 중  
- 두 번째로 ‘그 외의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개념의 문제를 지적한 그는 “이러한 성별 분류 개념은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 헌법 때부터 이어온 제 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1962년도부터 국민의 신분 관계 공적 제도로 사용해 온 주민등록제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주민등록법 제7조 2 규정의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의 개념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폐지될 위험에 봉착한다”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주민등록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행정적 처리 비용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한데 법안을 발의한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평등법은 고용 등 일부 영역에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지, 법적 신분 체계에 바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평등법이 제정되더라도 주민등록제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볼 필요는 없다.

더욱이 주민등록제도는 성별의 구분이나 그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제도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성별을 단순히 기록, 관리, 보존하는 업무를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는

평등법과 서로 다른 법 영역에 속한다.

## 나. 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국민일보 <칼럼/여성권 보호한다면서 되레 파괴하는 젠더의 허구성/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⑨>(10.23. 조영길 변호사·일터성경학교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1352&code=23111413&cp=nv>

- 서구에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등을 이용해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한다. 여성 전용 스포츠에 참여해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파괴한다.

- 성의 변경은 생물·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경도 남녀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명확히 가르친다. 인간은 남녀 결정권을 결코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자는 ‘여성인 양하는 남성’이나 ‘남성인 양하는 여성’으로 지칭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나) 국민일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성 역차별 부를 것” /바른인권여성연합 국회서 토론회>(2020.7.24. 백상현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951&code=23111111&cp=nv>

정선미 변호사는 “한국사회엔 양성평등기본법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있는데도 굳이 좌파 진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면서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에선 남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고, 트랜스젠더가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을 파손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제3의 성, 성별정체성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양한 성을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막았던 숙명여대생들의 반대도 차별행위로 낙인찍힌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도 “차별금지법이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불확실한 성별정체성도 보호한다”며 “여성을 차별과 혐오를 하는, 잠재적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국공립대 여교수 의무 임용, 여성 고위공무원 의무 비율을 악용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앞세워 진입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위선에 속지 말고 여성의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전환자의 여성 화장실 사용 문제, 성전환 남성의 여자 경기 참여 등 생각지도 못한 여성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의 결론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 다) CTS <고양시 차별금지법 반대집회>(2020.8.12. 이한승 기자)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67229>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우대하는 법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성재 목사 /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언급한 성별은 남성과 여성 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양성 이외의 다른 성을 성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헌법상 양성평등 조항(36조)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일 뿐이지, 다른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다. 또한 평등법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계법, 초·중등 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과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각각의 법률이 추구하는 목표와 규제 방법, 규제기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

평등법을 악용하여 국공립대 여교수 의무 임용, 여성 고위공무원 의무 비율을 악용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생길 것이라거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전환자의 여성 화장실 사용 문제, 성전환 남성의 여자 경기 참여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걱정도 지나친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평등법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만 위법한 차별로 보고 있

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의 성별 분리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이나 안전 등의 이유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평등법이 제정된다고 이러한 성별 분리가 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44.2%가 공중 화장실 이용 시 ‘불쾌한 시선’, ‘모욕적 발언’ 등 차별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 중 67.6%가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별 분리의 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렇게 분리된 공간을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차별을 없앨 수 있는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 다.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하거나,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 가) 조선비즈 <“차별 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 ‘평등법’에 법조계 일각 비판 목소리>(2020.7.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65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654.html)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평등법 일부 조항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차별 행위자에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책임 조항 등은 사회적 약자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지만, 오히려 ‘갑’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차별행위 금지 내용 등을 담은 평등법 시안도 공개했다. 이 시안이 입법되면 인권위는 사인간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송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을 차별행위자에 부과하는 방향의 규정을 담았다. 기존 민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피해자가 차별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 시안에 따르면 거꾸로 차별행위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시안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차별행위자에게 부과시켰다.

인권위는 또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가중하는 조항도 넣었다. 차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법인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평등법 시안이 공개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가중적 손해배상책임 조항과 차별행위자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부담 조항, 차별 관련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 조항 등 세 가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대표는 “손해배상액을 5배까지 물리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차별행위자로 지목된 자에게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과도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별 제보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 역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추상적 측면이 강하다”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도 “평등과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데 이를 토대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등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카오스(혼란)’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법률은 중립적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교수는 “법률이라는 것이 중립적 지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입법상 미덕인데 이 법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측면이 강해 법률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조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국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도 3배 이내로 가중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도 가중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평등법은 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려는 법이 아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평등법에 따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평등법에는 없다. 평등법은 국가인권위를 통한 비사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라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만약 차별행위가 ‘악의적’ 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보다 많은 가중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 이라는 것은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규모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엄격한 판단기준을 갖는다. 또한, 가중적 손해배상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차별을 억제하는 효과에 초점을 둔 제도로 기간제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의 여러 법률에도 이미 도입되었다.

## 4. 동성애 비하성 내용

### 가. 평등법이 제정되면, 소아성애와 수간이 합법화 될 것이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노컷뉴스 <지역 기독교 단체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2020-07-14)

<https://www.nocutnews.co.kr/news/5377827>

지역 기독교 단체 등 시민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CE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대구경북CE협의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등 42개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별금지법 제2조 4항과 제3조 1항 1, 3, 4호에 적시된 '성적지향' 항목과 관련해선 반사회적이고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평등법에서 말하는 '성적지향'은 소아성애나 수간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평등법이 소아성애나 수간의 합법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동성애를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하는 소아성애나 수간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아성애는 형법으로, 수간은 동물보호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 나.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 1) 언론 보도 속 주장 내용

가) 스카이데일리 <개인·사회 비참한 최후 부르는 동성애의 목적 ‘변태적 쾌락’ [이슈포커스]동성애, 역천의 형벌(上·질병)>(2020.9.28.)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2338](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2338)

- “동성애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과연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실상은 어떠한지 스카이데일리(가) 그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의 현장을 질병, 가족갈등, 경제적 궁핍 세 부문으로 나누어 취재하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다” 는 취지의 기획 연재

- ‘동성애 반대’ 진영의 대표자인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과 민성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장을 담은 기사

- 다수의 의학전문가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기에는 질병 확산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동성애는 첫 만남 자체가 ‘사랑’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이 붙는 데다 쾌락이라는 목적을 좇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 염 원장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30~40%가 단순 동성 간의 항문 섹스를 넘어선 가학적, 변태적 성도착증에 빠진다고 한다. 동성 간의 항문 섹스 자체가 말초신경을 크게 자극하는 행위인지라 더욱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항문에 주먹과 팔을 넣는 ‘피스팅’ 섹스를 비롯해 동물과의 섹스인 ‘수간’으로도 발전한다고 한다.

- 민성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동성애자들은 신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각종 정신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한다.

- 염안섭 원장 발언 : “동성애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성중독·성도착증이에요. 동성애는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 섹스에 눈을 뜰 무렵 썸 대개 눈을 뜨기 시작해요”, “항문 섹스가 남성의 전립선을 자극하다 보니 여기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당초 식성이라는 조건과 쾌락이라는 목적에 의해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대체로 가볍고 오직 쾌락만을 좇는 행태죠.”

- 민성길 교수 발언 :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며 그 외에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동성애를 억압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유전자 조사결과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없었고 권리를 인정받은 주에서도 우울증,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았어요.”

나)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질병 퍼뜨리는 동성애, 절대 용납 안된다>(2020.10.1. 배태용 기자)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3023](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3023)

“다수의 의학전문가는 동성 간의 성교가 각종 성병을 사회에 퍼트린다고 지적한다.”

“과거에 동성애를 했다 현재 벗어난 한 제보자에 따르면 동성애자 대다수는 게이 커뮤니티를 통해 만남을 갖는다. 대다수 동성애자는 자신만의 성적 취향(식성)을 갖고 있고 식성에 부합하는 파트너이어야만 만남을 갖는다. 여기서 구인의 목적은 단 한가지, 항문 성교다. 철저히 성관계라는 목적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여러명의 파트너를 갖고 있다.”

“에이즈 환자의 93%는 남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환자에 비해 적은 비율이라고 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는 이유에서다. 수치만 봐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 누가 전염병을 퍼트리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다) 국민일보 <동성애의 부도덕성과 반윤리성 논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⑫>(2020.11.13. 조영길 변호사·일터성경학교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411&code=23111413&cp=nv>

“남성 간 성행위자들은 배설기관으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보건적으로 유해한 각종 감염병과 간염, 곤지름, 이질은 물론 괄약근 손상으로 변의 조절이 되지 않는 변실금, 각종 성병 등의 질병을 초래한다. 또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다. 이는 의학적 진실이다.”

“이성과 양심의 가책이 반복되는 데서 오는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질병에도 취약하다. 육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에 큰 재정적 부담도 따른다. 동성애에 따르는 각종 유해한 결과들은 그 자체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악하고 죄에 해당하는 행동에 따르는 혐오스럽고 유해한 결과는 힘들어도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라) 크리스천투데이 [김영한 박사 “창조 질서 거부하면 가정·사회 무너질 수 밖에” / ‘한국교회 정론 2차 포럼’ 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 악법” 발제](2020.11.1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101>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 발언 : “동성애라는 것은 성적으로 잘못된 관점에서 나온다. 일반적 정신과 의사들도 성적 중독을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비도덕적인 것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결혼을 해체시키게 된다. 또 에이즈 등 비보건적이다. 인권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고 도덕적·공익적이어야 한다. 공동선(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인권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비도덕적·비보건적인

동성애를 인권 범주에 넣을 순 없다”

## 2) 팩트 및 프레임 체크

근본적으로 성별 및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라 사실상 팩트체크보다는 프레임 체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미국정신의학회가 1973년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한 이래, 정신의학계 및 심리학계 등 학계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질병 내지 질환, 전염되는 것, 치료될 수 있거나 치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 공식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했다. 동성애 등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가 40년 동안 의학, 심리학,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계의 연구 결과가 지속되어 축적되면서, 인간의 다양한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질병이 아님이 오래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동성애가 질병인 것처럼 묘사하고 “동성애자들은 각종 정신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염안섭 원장의 “동성애는 성중독, 성도착증”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성적지향’을 “취향”으로 지칭하고 괄호에 굳이 “식성”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스카이데일리 칼럼의 “대다수 동성애자는 자신만의 성적 취향(식성)을 갖고 있고 식성에 부합하는 파트너이어야만 만남을 갖는다”는 주장도 성소수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IV. 제4장 평등법 관련 해외사례 팩트체크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과 기사에는 평등법이 제정된 외국의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평등법과 관련된 해외사례들이 어떤 매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수집한 뒤, 각 내용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해당 정보를 국내 평등법 제정과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팩트체크했다. 보고서에서 ‘다시 쓰는 팩트체크’ 이외의 글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옮긴 것이다.

### 1. 표현의 자유 관련

#### 가. 포교·설교 상 동성애 반대 표명을 억압했다는 사례 검증

1) 영국에서 노방전도자가 반동성애 피케팅 중 폭행당하고, 체포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해리 하몬드 씨는 69세의 영국의 노방 포교자였는데 2001년에 노방 포교를 하다가 40명의 화난 군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하세요. 동성애를 그만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군중들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땅에 넘어지게 했고, 물과 흙을 그에게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하였다. 그에게 폭행을 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동성애를 회개하라는 대자보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항의를 하였다. 그는 영국 공공질서법 제5조에 의해 기소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행하게도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

보를 들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②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해리 하몬드씨는 69세의 영국의 노방 포교자였는데 2001년에 노방 포교를 하다가 40명의 화난 군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 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군중들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땅에 넘어지게 했고, 물과 흙을 그에게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하였다. 그에게 폭행을 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동성애를 회개하라는 대자보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항의를 하였다. 그는 영국 공공질서법 제5조에 의해 기소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행하게도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들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③ 국민일보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다…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2020.7.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858&code=23111111&cp=nv>

해리 하몬드는 영국의 노방 전도자였다. 2001년 노방 전도를 하다가 40명의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 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오물을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체포했다. 그에게 폭행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영국 공공질서법에 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들었다고 판시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

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는데...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 ‘혐오표현’ 처벌의 목적

입력 : 2020-07-16 00:05

좋아요 0개



반동성애 활동가인 윌리엄 왓슨이 2014년 캐나다 리자이나나대에서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피켓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국민일보 기사 갈무리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영국, “반동성애 노방전도자 집단 폭행당하고, 벌금형 처해졌다”>(2020.7.25.)

<http://www.thedreamtogeth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

국민일보는 얼마 전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는데...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 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2> ‘혐오표현’ 처벌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기사(2020.07.16)를 냈다. 글쓴이는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이다. 그의 주장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짚어본다.

##### - 주장 : 영국의 노방전도자 해리 하몬드

해리 하몬드는 영국의 노방 전도자였다. 2001년 노방 전도를 하다가 40명의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 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오물을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체포했다. 그에게 폭행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영국 공공질서법에 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들었다고 판시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국민일보(2020.07.16.)

- **사실 확인** : 국민일보에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전윤성 변호사의 주장은 그의 연구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은 2차 자료(주장) 인가? 그의 주장에 담겨 있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인가? 실제 벌어진 사건과 위의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같은가? 다른가? 위의 글은 실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서술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빠뜨린 혹은 감춘 사실은 없는가?

- **원 출처 확인** : 그런데 전 변호사의 글에 담긴 위의 주장은 다른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두 개의 글을 비교를 해보자.

### 해리 하몬드 노방 전도 사건

- 해리 하몬드는 69세의 영국의 노방 전도자였는데 2001년에 노방 전도를 하다가 40명의 화난 군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함. 그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 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님 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음. 군중들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땅에 넘어지게 했고, 물과 흙을 그에게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음.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함. 폭행을 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음. 그는 영국 공공질서법에 의해 기소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불행하게도 다음해 사망하였다. 법원은 그가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들었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함.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전 변호사의 글과 내용과 짜임새가 동일하다.

**전윤성** :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 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B 자료**: 그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 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님 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음.

‘예수님->그리스도’ 로 단어만 다를 뿐이다. 심지어 ‘대자보’ 라는 단어까지 동일하다. ‘대자보’ ? 이것은 플래카드(placard)의 완전한 오역이다. 플래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플래카드와 달리 피켓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이 사건의 맥락을 보면, 피켓으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것을 볼 때, 전 변호사의 글에 담긴 내용은, B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전 변호사의 글을 B 자료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언론을 통해, 이같은 주장의 공유 과정을

살펴보면, 전 변호사가 B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 자료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2017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용역 최종 보고서, 2018.02.27) 135쪽에 나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음선필 교수, 공동연구자: 민성길 교수,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이상현 교수’ 등이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자 모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lexer Server : 2017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용역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최종 보고서] 2018. 2. 27. 연구책임자: 음선필 교수 공동연구자: 민성길 교수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이상현 교수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체출문 국회운영위원회 귀중본 보고서를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문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2. 27. 연구기간 : 2017. 12. 28. ~ 2018. 2. 27. [educat.na.go.kr](http://educat.na.go.kr)

- 실제 일어난 사실 확인 : 이제 2001년에 노방전도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다가서 본다. 해리 하몬드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2001년 10월 13일, 영국 Bournemouth 광장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다. 해리 하몬드(Harry John Hammond, 당시 69세),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관련 자료는 말한다. “Jesus Gives Peace, Jesus is Alive, Stop Immorality, Stop Homosexuality, Stop Lesbianism, Jesus is Lord“ 이것을 보면, 전윤성 변호사보다 연구자들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건의 경과 과정은 위에서 인용한 흐름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적용된 규정은 영국 공공질서법(the Public Order Act 1986) 제5조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금지 규정 위반은 아래와 같다.

(1)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she: (a) uses threatening [or abusive] words or behaviour, or disorderly behaviour, or (b) displays any writing, sign or other visible representation which is threatening [or abusive], within the hearing or sight of a person likely to be caused harassment, alarm or distress thereby.“

그가 위반한 것이,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증오를 확산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표현과 행위를 범죄로 규정’ (Sec.29 AB) 한 조항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공공질서법 제3장 인종과 종교적 혐오 금지 규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 29조 A 항과 B 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SSection 29A: Meaning of “religious hatred” In this Part “religious hatred” means hatr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defined by reference to

religious belief or lack of religious belief.

Section 29B: (1) A person who uses threatening words or behaviour, or displays any written material which is threatening, is guilty of an offence if he intends thereby to stir up religious hatred.

선고가 내려진 것은 2002년 4월 24일 치안법정에서의 일이다. 재판부는 23, 24일 이틀간의 심리를 마친 뒤에, 해리 하몬드에게 벌금 300파운드(약 450달러), 소송비용 395파운드(약 600달러), 피켓 파기 명령을 내렸다. 해리 하몬드는 당시에 아스퍼저 증후군(Asperger Syndrome)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 뒤인 그해 8월 중순에 사망했다.

- 주장에 대한 평가 : 위의 주장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사실과 다른 것, 다소간에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뒤섞여 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다. 왜 이 부분이 사실 왜곡에 해당할까?

“해리 하몬드는 영국의 노방 전도자였다. 2001년 노방 전도를 하다가 40명의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오물을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체포했다. 그에게 폭행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해리 하몬드는 ... 40명의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

30, 40여명의 군중이 몰려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폭행이나 집단 폭행은 벌어지지 않았다. 해리 하몬드 사후에 진행된 재판에서 유족측에서 법정에서 한 진술을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럽인권법원 기록도 같이 옮겨 본다.

“He (Hammond) was subjected to a number of assaults. Soil was thrown at him and water poured over his head. Someone tried to seize the sign and he was knocked to the ground.” - 위키페디아

“.. some threw soil at him. At one point, someone tried to snatch the sign away from him and it struck someone on the head. A struggle ensued during which Harry Hammond fell to the ground. He got up and continued preaching, holding up the sign. At this point, someone poured water over his head.” - 유럽인권법원 기록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 ?

해리 하몬드가 들고 있던 피켓을 두고 옥신각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리 하몬드가 넘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집단 폭행은 없었다. 군중이 그를 둘러쌌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

“군중은 ... 오물을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

충돌 과정에 누군가가 그에게 오물이 아니고 그의 머리에 물을 뿌렸다. 대자보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피켓을 빼앗으려고 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 표현이 그려주는 분위기는 적잖이 다르다. 또한 피켓을 두고 충돌하는 과정이 그곳에 있던 다른이가 피켓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체포했다.” ?

이 표현 안에는 사실과 다소 왜곡된 주장이 뒤섞여 있다. 경찰은 그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그에게 현장에서 떠나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를 언급한 아래 자료 등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 가운데, 그에게 피켓(시위)을 내리고 현장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가 거부한 것으로 말한다. 경찰은 일방적으로 그를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폭행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

폭행한 군중이라는 표현 안에 사실 왜곡이 있다. 아래의 기록에도 나오듯이 해리 하몬드도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호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과 그것을 폭행으로 묘사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 폭행한 군중은 없었던 것으로 재판 기록은 묘사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 재판 기록에는 아래와 같은 언급이 담겨 있다. (이 글의 끝부분에 이 사건 경과에 대한 법원 기록 내용을 옮겼다) “Two police constables, Ms Gandy and Mr Elliott, arrived at the scene. PC Gandy found the crowd to be angry, agitated and insulted. She asked Harry Hammond to put away the sign and leave. He refused. He declared that he was aware that people found the sign insulting as he had had a similar reaction previously. PC Elliott was of the opinion that it was not necessary for the police to take any action. PC Gandy took the view that he was provoking violence and arrested him for breach of the peace.” - 유럽인권법원 기록

#### - 유럽인권법원 재판 기록

해리 하몬드의 사례를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설교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해 역차별을 당한 사례로 언급한 이들은, 왜 사실과 적잖이 다른 이런 차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일까?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 그러한 사례를 재인용하는 이들은 왜 실제 벌어진 일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수고를 게을리한 것일까?

②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전○○ 변호사, 그가 말한 ‘해외의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혐오표현 처벌 사례’는 사실과 왜곡이 뒤섞였다. /김동문>(2020.8.1.)

<http://www.thedreamtogeth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

해리 하몬드는 영국의 노방 전도자였다. 2001년 노방 전도를 하다가 40명의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 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오물을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체포했다. 그에게 폭행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영국 공공질서법에 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들었다고 판시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리 하몬드는 ... 40명의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 사실 왜곡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 - 사실 왜곡

“군중은 ... 오물을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 사실 왜곡

“출동한 경찰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체포했다.”? - 사실 왜곡

“그에게 폭행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 사실 왜곡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① 팩트체크

- 사실관계는 기존 드림투게더 네트워크의 팩트체크와 동일하다.

해리 하몬드는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바가 없고, 오물이 아닌 누군가 물을 던진 정도고, 해리 하몬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소란의 주범으로서 공공질서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다.

법원은 해리 하몬드의 행동은 모욕적인 표지판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것으로 ‘합법적인 시위’를 넘어섰기에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럴 만한 사회적인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추가 항소도 기각되었다.

② 프레임 체크

이 사례에서 해리 하몬드가 처벌받은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해서가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서 공공질서를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리 하몬드에게 적용된 법률 역시 차별금지법이 아닌 ‘공공질서법’이다. 이 법률은 1986년에 제정된 것으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글귀, 사인, 시각적 신호 등을 나타내어 이를 보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모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상관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2) 캐나다에서 교도소 목사가 동성 결혼 비판 설교로 징계받았다?

### 가) 주장

#### ① 국민일보 <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다…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2020.7.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858&code=23111111&cp=nv>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②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HM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설교(고전6:9-10 인용)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설교한 목사가 고소당하여 패소했다

# Homophobia row preacher loses HMP Littlehey tribunal

© 14 March 2016



■ 트레이혼 사례 전한 영국BBC 보도 갈무리

## ③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한국교회가 직면할 예상 상황](2020.10.25.)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954>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 제3조 제4호와 제5호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표현’을 혐오표현의 한 형태로 보고 차별행위로 규정한 다. 제4호의 경우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제공이나 이용 등의 영역제한이 있으나 제5호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법안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기에 유튜브 등 온라인 설교, CTS, C채널 등 방송 설교, 국민일보, 기독교일보 등 신문기사·광고에서 반동성애 설교는 차별행위가 되어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최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종립학교(신학대학 포함) 교목(校牧), 기업의 사목(社牧), 경찰서의 경목(警牧), 군대의 군목(軍牧) 등이 ‘동성애는 죄’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각오하여야 하기에 반동성애 설교는 할 수 없게 되며, 교회에서 예배시 반동성애 설교는 온라인이나 방송에 나갈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제재하에서 과연 ‘동성애는 죄’라고 ‘감히’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여국 HM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한 배리 트레이혼 목사에 대한 교도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영국 고용재판소의 결정(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이 우리가 직면할 상황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항상 반대 목소리를 잠재운 후 동성혼 합법화를 이루어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전○○ 변호사, 그가 말한 ‘해외의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혐오표현 처벌 사례’는 사실과 왜곡이 뒤섞였다. /김동문>(2020.8.1.)

<http://www.thedreamtogeth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 사실과 과장, 오류

△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 사실과 과장

△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 사실과 오류

△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 사실

△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 사실과 과장

△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사실과 과장

△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사실과 과장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사실관계는 기존 팩트체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https://www.bbc.com/news/uk-england-cambridgeshire-35804440>

베리 트레이혼은 교도소의 정원사면서 동시에 때때로 자원하여 예배의 인도를 맡았을 뿐, 교도소 목사로서 채용된 것은 아니다. 베리 트레이혼은 교도소로부터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당했으며 그 결과 종교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배척하면서 해당 교도소의 정책이 기독교인을 단독으로든 집단으로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 ② 프레임 체크

이 사건은, 베리 트레이혼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 3) 캐나다 대법원이 반동성애 성경 구절이 담긴 유인물의 배포를 혐오범죄로 판결했다?

### 가) 주장

#### ① 국민일보 <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다…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2020.7.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858&code=23111111&cp=nv>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②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윌리엄 왓콕은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 금지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 배포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소송 당함(대법원은 증오 범죄로 손해 배상 판결)2013.2.28.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전○○ 변호사, 그가 말한 ‘해외의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혐오표현 처벌 사례’ 는 사실과 왜곡이 뒤섞였다. /김동문>(2020.8.1.)

<http://www.thedreamtogeth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



■ 그림 출처 : 드림투게더 네트워크

<http://www.thedreamtogether.com/news/curationView.html?idxno=2014>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

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 사실과 거짓

△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 사실 아님

△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 사실 아님

△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 사실과 과장

△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실과 과장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윌리엄 왓콕은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편지함을 통해 Regina 및 Saskatoon 두 개 주에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윌리엄 왓콕은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받기로 선택한 혹은 최소한 이를 거부하지 않은 행인들에게만 유인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편지함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다.(CTV NEWS <Anti-gay flyers violated hate law, Supreme Court rules / 2020.2.27.>)

<https://www.ctvnews.ca/canada/anti-gay-flyers-violated-hate-law-supreme-court-rules-1.1173807>

- 윌리엄 왓콕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성경 구절만 인용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혐오나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윌리엄 왓콕이 배포한 4종의 유인물 중 불법으로 판결된 2종 유인물의 제목은 “Keep Homosexuality out of Saskatoon’s Public Schools!” 및 “Sodomites in our Public Schools“이다. 각각 ‘동성애자를 Saskatoon 공립학교에서 몰아내자’, ‘Saskatoon 공립학교 내 소돔인들’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의하면 소돔

인은 남색을 즐기다가 멸망한 소돔 사람들을 뜻하며, 그 자체로 동성애자를 죄악시하는 표현이다. 유인물에서는 또한 동성애자들을 취약한 어린이들을 착취하여 이른 나이에 죽음을 야기하는 병을 옮기는 사람(carriers of disease), 섹스 중독자(sex addicts), 소아성애병자(pedophiles)라 묘사하였다.

또한 혐오적 논조를 전달하기 위해 동성애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위협(menace)으로 묘사하고, 비방적(vilifying), 경멸적(derogatory)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은 동성애자들을 학교에서 몰아내자고 하여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촉구하였다.

- 윌리엄 왓콧이 유죄인 이유는 진평연의 주장과 같이 단지 성경 구절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 캐나다 대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표현들이 금지된 근거중 하나인 동성애를 혐오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윌리엄 왓콧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illiam Whatcott 사건에서 금지된 근거로 누군가를 혐오(hatred)에 노출시키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표현의 출간이나 전시를 금지한 Saskatchewan Human Rights Code 제3조를 합헌이라 판결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누군가를 혐오에 노출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며, 자유로운 민주 사회에서 명백히 정당화된다고 설명하였다.

- 진평연의 주장과 반대로 캐나다 대법원은 윌리엄 왓콧이 배포한 유인 2종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 자체는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매우 드문 상황이나 맥락에서만 신성한 종교 텍스트 자체가 객관적으로 혐오 표현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 캐나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추후 캐나다 법원들이 적용할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지침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표현되는 사상이 적의를 표현하고 있거나, 저자가 혐오나 차별을 조장할 의도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들 표현이 실제 대상 집단을 듣는 이들의 혐오에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야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관련 조항의 입법 목적이 차별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UPREME COURT OF CANADA <Supreme Court Judgements: Saskatchewan v. Whatcott / 2013.02.27.>)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12876/index.do>

## ② 프레임 체크

위 사건은 캐나다의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 소송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혐오범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캐나다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성경 구절 인용만으로는 혐오 표현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혐오나 차별을 조장할 의도가 있더라도 실제 청중에게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야 혐오 표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즉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캐나다와 유사한 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차별금지법이나 기타 법률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해석을 적용한다면, 단순한 성경 구절 인용이나 동성애 반대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

## 4)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체포된 할머니가 있다?

### 가) 주장

#### ① 뉴스타운 <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 ‘동성애’ 의 해악>(2020.7.16.)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70>

또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는 LGBT(성적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인 군중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이 사용중지되었으며,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 로 체포되는 등으로 전도와 선교의 장애물이다.

#### ②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 로 체포(2007. 2.)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⑤/노방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이 문제>(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9>

이 사례는 '가짜 뉴스'다. 진평연이 써 놓은 내용만 보면 두 할머니가 평화로운 공원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체포된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실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알린 엘시노이는 2004년 10월, '리펜트아메리카'라는 기독교 단체 소속으로 동료 10명과 함께 '아웃페스트'를 찾았다. 아웃페스트는 필라델피아 지역 성소수자 단체 '필리프라이드'가 주최하는 '커밍아웃 데이' 행사다. 이 행사는 필라델피아 내 성소수자 친화 지역에서 열렸다. 여기에 찾아가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벌인 것이다.

리펜트아메리카는 아웃페스트보다 네 달 앞서 열린 '필리프라이드 퍼레이드'에도 참석해 반동성애 구호를 외치고 시위했다. 대표 마이크 마커비지는 지역 성소수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웃페스트가 끝나는 게 우리 바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도 우리는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페스트 주최 측은 리펜트아메리카와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쪽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있다며 리펜트아메리카가 아웃페스트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커밍아웃 데이 당일, 주최 측은 리펜트아메리카와 참가자들 사이 충돌을 우려해 핑크색 옷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범퍼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 또한 하지 못하게 했다. 모두에게 열린 행사인 만큼 리펜트아메리카 역시 자유롭게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 허가를 받고 행사 한가운데로 들어간 리펜트아메리카는 예상했던 것처럼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확장기를 가지고 동성애에서 돌이키라고 하거나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외쳤다.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다. 게다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경찰이 멈출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만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경고도 무시한 채 계속했고, 결국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21시간 동안 유치장에 구류됐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리펜트아메리카는 필라델피아시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했다며 수정헌

법 1조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시가 집회 내용에 근거해 회원들의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금지한 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은 리펜트아메리카가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동성애는 죄” 라고 외치는 것은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롱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특정인을 지칭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경찰이 개입할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대대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알린 엘시노이가 나와 “나는 75살 된 할머니다. 나는 2004년 10월 필라델피아의 동성애 행사에 참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 대신 나는 체포돼 감옥에 갔고 혐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신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혐오 범죄 법안'을 막아 달라”고 말하는 영상이 남아 있다.

### 3 종교 파괴 (신앙 파괴)

- (1)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 선고 (출처: thelocal.se 2005.11.29.)
- (2) 캐나다 대법원, 동성애 비판하는 유인물 배포는 증오범죄라고 손해배상 판결 (출처: 월드뷰 2018.1.8.)
- (3)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 LGBT 군중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은 사용 중지(출처: Lifesitenews.com 2019.11.21.)
- (4) 미국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범죄'로 체포(출처: 미주 크리스천투데이 2007.215.)
- (5)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출처: 크레도 2019.11.28.)



(3) 가운데 데이비드 린(David Lynn) 목사 - 지난 6월 LGBT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됨

■ 그림 출처 : 뉴스앤조이(<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9>)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가 맞다.

사건은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힘 없고 보호받아야 할 두 할머니가 공원에서 평화로운 전도 도중에 체포된 것이 아니다. ‘리펜트 아메리카’라는 과격 기독교 단체가 경찰의 경고 및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행사를 끝장내겠다는 공언된 목적을 위해 확성기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다가 체포된 것이다.

- 이 항소심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구체적 해석을 제시했다.

리펜트 아메리카 회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STARTZELL v. CITY OF PHILADELPHIA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법원은 리펜트 아메리카가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것은 종교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를 받으나, 특정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롱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경찰이 개입할 근거를 제공한 것이며, 따라서 경찰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Third Circuit. <STARTZELL v. CITY OF PHILADELPHIA PENNSYLVANIA / 2008.07.15.)

<https://caselaw.findlaw.com/us-3rd-circuit/1324701.html>

즉, 리펜트 아메리카 회원들이 유죄인 이유는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도 아니며,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② 프레임 체크

이 사건 역시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쟁점이다. 즉, 위와 같은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자유와도 관련이 없다.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만 없다면 오히려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것조차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물론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교회가 현재 누리고 있는 동성애를 죄악시킬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은 작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표현의 자유 제한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나 종파 회원들이 교회 행사에 나타나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방해한다면 정확히 동일한 조항에 의해 교회는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캐나다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던 목사가 폭행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다?**

## 가) 주장

### ① 건사연(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블로그)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 세터 빼앗기고 체포>(2019.12.11.)

데이비드 린(David Lynn) 목사는 지난 10월 10일, 1년 이상 사용 중이었던 시설인 Pam McConnell Aquatic Center의 책임자인 Aydin Sarrafzadeh로부터 교회에 대한 허가를 당장 철회할 것과 토론토 시내의 어떤 시설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갑자기 받았는데, 이는 시의 차별금지정책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였다.

지난 6월 4일, 린 목사는 토론토 게이 마을의 중심에서 설교를 하던 도중 LGBT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었다가 동성애자 지역에서의 설교 금지 조건으로 보석 석방되었다. 처음 린 목사는 혐오 발언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설교를 하였을 뿐 실제 혐오 발언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결국 치안방해죄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많은 시위와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철회되지 않았고, 2020년 7월에서 8월 한달 동안 5일간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린 목사는 토론토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 체포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9월 28일 기독교인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이에 레즈비언 시의원 Kristyn Wong-Tam과 LGBTQ 활동가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 시장인 John Tory가 참석하였다. 토리는 동성애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이나 비난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토론토에서 살 수 없으며, 차별이나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시장의 일이라 하면서 린 목사의 집회를 반대하였다.

라이프 사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린 목사는 이날 회개하고 기도한 후 찬양하며 평화롭게 거리행진을 했을 뿐인데, 200여 명의 경찰관들과 SWAT, 극좌집단들에 의해 7시간이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언론 매체들이 린 목사에 대하여 혐오 발언을 하는 나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10월 29일, 워싱턴 의원은 토론토 시설 사용 허가 시 관련 LGBTQ들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의회는 이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1월부터 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린 목사는 이 발의안에 대하여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하는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으며 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기에 힘들어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린 목사는 현재 토론토 시내 중심에 있는 시설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캐나다에서 가장 부동산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기적에 가깝다고 말한다. 또한 선교회가 팜 맥코넬 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있을 때 많은 동성애자들이 방문하였으며 선교회의 도움을 찾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 ② 원본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toronto-calls-preaching-to-homosexuals-hate-activity-evicts-christians-from-city-facility>

## ③ 뉴스타운 <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 ‘동성애’ 의 해악>(2020.7.16.)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70>

또 동성애 반대 설교한 목사는 LGBT(성적소수자들을 이르는 말. 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인 군중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이 사용중지되었으며(후략)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⑤/노방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이 문제>(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9>

데이비드 린은 초교파 복음주의 사역 단체 '예수의용서'(Christ's Forgiveness Ministries · CFM)를 설립한 목사다. 토론토에서 나고 자란 그는 주로 토론토에서 활동한다. 린 목사 역시 주로 거리에서 동성애 · 낙태 · 이슬람 반대 운동을 한다.

린 목사는 CFM 소속 10여 명과 함께 지난해 6월, 토론토시의 '처치-웰즐리' 구역을 방문했다. 이 동네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토론토 프라이드'가 지나는 길목이기도 하다. 린 목사는 이곳에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확성기를 이용해 “나는 크리스천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

신다.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무지개 깃발, '사랑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은 린 목사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알고 “떠나라“고 요구했다. 린 목사는 “나는 세금을 내는데 왜 이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가“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CFM 교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린 목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토론토시 당국은 린 목사와 그의 사역팀 CFM이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적대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교회 시설 사용을 중지했다. 교회 시설이 시 소유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토론토시는 CFM이 시의 다른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이 사건 역시 극단적인 인물이 일부러 충돌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했을 때 체재를 받은 것이다. 단순히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잡혀가거나 교회 시설 사용이 중지된 게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다.

진평연 및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평등법에 '괴롭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발언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등법에는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한해 차별 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진평연이 선동하는 것처럼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가 맞다.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건 당시 린 목사는 다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혼자로서가 아니라 CFM 소속 10여 명과 함께였다.

또한, 린 목사는 평화로운 설교를 하던 도중 LGBT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확성기를 이용해 설교를 하던 도중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참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기독교인인 자신이 옷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하거나 그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고집쟁이(bigot), 증오스러운(hateful)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소란은 발생했으나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

- 린 목사는 혐오표현이 아니라 소란으로 신고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린 목사를 혐오 표현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으킨 소란으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이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고 떠나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확성기를 사용하자 경찰이 그를 체포하였다 (CTV NEWS <Pastor charged after confrontation in Church-Wellesley Village released on bail / Chris Herhalt / 2019.06.05.>)

<https://toronto.ctvnews.ca/pastor-charged-after-confrontation-in-church-wellesley-village-released-on-bail-1.4453380>

## ② 프레임 체크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위 사건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없다. 린 목사가 사용한 표현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표현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린 목사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통해 계속 소란을 조장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다. 해당 소란이 동성애자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발생했다더라도 동일하게 경찰은 소란을 조장한 자를 체포했을 것이다.

## 6) 스웨덴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가 처벌받았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 스웨덴 동성애 부정적 설교한 목사 처벌

2004년에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오케그린(Ake Green) 목사에게 증오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순절교회 목사인 아케 그린은 2004년 스웨덴 동부 연안 도시 보그홀름에서 행한 한 설교에서 “동성애는 비규범적이며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존재”이며 “동성애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목사의 설교 내용을 조사한 검사는 스웨덴 교회 신문 키르칸스에 “그린 목사의 설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으며, 성경을 인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며 그린 목사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린 목사는 자신의 설교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지 동성애자들을 경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향변했다.

그런 목사의 변호사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와 동성애자의 인권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번 유죄 판결로 자신의 신념을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웨덴 레즈비언·게이·트랜스젠더 인권연맹 쇠렌 앤더슨 회장은 “종교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스웨덴에서 증오언론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애에 관한 설교에 이법이 적용된 처음 사건이었다. 스웨덴은 설교를 포함,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드러내는 언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증오언론금지법(Hate Speech Law)을 2003년에 제정했다. 애초에 유대인을 공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던 이 법은 교회의 설교까지 잠재적 증오 언론에 포함,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로 부터 우려와 반발을 샀다. ‘증오언론금지법’은 동성애자나 유대인 등 소수 집단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영국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캐나다는 2003년에 이 법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법률의 도입에 대해 동성애 지지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인권 단체나 종교 단체 등에서는 종교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 ②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스웨덴 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교회 내 회중에게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 목사(오순절교회)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2004)

## ③ 데일리굿뉴스 <해외 사례로 보는 차별금지법 부작용은?>(2020.7.21.)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0888](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0888)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부작용 해외 사례’로 전한 데일리굿뉴스TV 보도 화면 캡처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 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에서는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⑤/노방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이 문제>(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9>

스웨덴의 오케 그린 목사는 단순히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해 제재를 받은 게 아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성적 비정상인들은 사회 전체에 깊게 박힌 종양과 같다. 주님은 성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이 동물을 강간할 것을 아신다”였다. 그린 목사가 위반한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형법 16조 2항이다. 1심 재판부는 그린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성명서나 발언을 통해, 특정 집단에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며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종교의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소개하는 게 맞다. 대법원 선고도 2005년 나왔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원문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차별금지법이 아닌 혐오범죄법이 적용된 재판이었다.

뉴스엔조이의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케 그린 목사에게 적용된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2003년 제정된 혐오범죄법(Hate Speech Law)이다. 1심 재판부는 오케 그린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성명서나 발언을 통해, 특정 집단에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며 징역 1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오케 그린 목사의 위 발언들이 전체 맥락에 비추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목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종교 지도자는 시대 관습 변화에 따라 가르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진리에 대한 텍스트를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케 목사의 설교는 유럽인권협약상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오케 그린 목사가 자신의 회중들 앞에서 설교했다는 것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Swedish Pastor Acquitted By Court For Anti-gay Sermon / 2006.01>)

<https://www.au.org/church-state/january-2006-church-state/au-bulletin/swedish-pastor-acquitted-by-court-for-anti-gay>

## ② 프레임 체크

뉴스엔조이 팩트체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 스웨덴의 동성애자 권리단체들은 위 대법원판결이 교회를 혐오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반대로 기민당 리더인 Göran Hägglund는 해당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성경 해석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THE LOCAL <Åke Green cleared over gay sermon>2005.11.29.)

<https://www.thelocal.se/20120216/2590>

즉,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두 법리의 적용 범위는 별도의 논의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위 사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정도로 진보적인 국가들에서 표현의 자유 또한 최대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7)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영국의 사례들은 사실일까?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 스테픈 그린(Stephen Green) 반동성애 유인물 배포 사건 2006년 9월 2일에 Stephen Green은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고 적힌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공질서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 앤소니 롤린스(Anthony Rollins) 반동성애 길거리 설교 사건 2008년에 Anthony Rollins는 버밍햄에서 거리 설교를 한 후에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으로 수감에 채워져 체포되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사건으로 공포와 충격 그리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해에 Miguel Hayworth는 켄트에서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거리 설교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석방이 된 후 그는 거리 설교를 계속 하였다. 경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 그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

△ 데일 맥알파인(Dale McAlpine) ‘동성애는 죄’ 길거리 표현 사건 / 2010년 4월 20일에는 기독교 설교자인 Dale McAlpine이 거리에서 동성애 행위는 죄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

△ 마이크 오버드(Mike Overd) 타종교 비판 사건/ 영국에서 Mike Overd는 거리에서 “이슬람교의 무하마드가 9살 소녀와 결혼하였다” 는 말을 하였는데, 공공질서법 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토니 미아노(Tony Miano) 목사 노방 설교 사건/ 2013년 7월 토니 미아노 목사는 영국 남부 워블던에서 노방포교를 하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1~12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적인 타락을 설교하였는데,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설교는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이었고, 동성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전했다. 당시 미아노 목사는 경찰서에 7시간 동안 구금된 채, 동성애와 유전자와 관련된 입장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경찰은 미아노 목사에게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는 공공질서법 제5조를 적용했다. 미아노 목사는 크리스천 라디오 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서 모든 설교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한다. 나의 설교의 초점은 ‘동성애는 죄’ 라고 강조하는데 있지 않다. 나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을 강조했다” 고 전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변호사는 “미아노 목사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체포됐으나, 당시 경찰은 그에게 욕설을 내뱉은 행인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서신에서 “최근 경찰은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시각에 대해서 침묵하는 법안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우리의 목표는 런던 경찰이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분명한 권리를 보호하게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윌리엄스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고, 우리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경찰청장이 이를 알고 이끌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기독교 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영국에서 기독교인이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했다가 체포된 경우는 16건이었다.

△ 마이클 오버드(Michael Overd)와 마이클 스톡웰(Michael Stockwell)/ 길거리 동성애는 죄 언급, 타종교 비판 사건

2017년에 Michael Overd와 Michael Stockwell은 영국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를 설교했고, 타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동성애는 죄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유로 공공질서법 제5조의 소란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사회 질서 유지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 졌는데,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소결 / 통계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중요 범죄는 총 62,518건이었는데, 이 중 성적 지향 관련 중요 범죄는 총 7,194건이었고, 성전환 관련 중요 범죄는 총 858건 이었다. 이 중 ‘중요(혐오) 표현’ 을 처벌하는 공공질서법 위반 건수는 성적 지향의 경우 약 46%(약 3,309건) 이었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약 46%(약 394건)이었다. 따라서, 연간 약 3,700여 건의 범죄가 성적 지향/트랜스젠더 관련 ‘중요 표현’ 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 ②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설교자 Dale McAlpine은 거리에서 '동성애 행위는 죄' 설교(경찰에 체포 2010.4.20.) / HM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간 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중단되어야 함을 설교(고전6:9-10 인용)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설교한 목사가 고소당하여 패소했다./ 퀴어 축제 반대하였다가 동성애 혐오 범죄로 고발당한 영국 목사 사건(2013.8.30.)/ 치모바 호텔 소유주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방을 함께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에 게이 커플이 더블룸을 예약하자 숙박을 거부하자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 배상금 지불(2011.1) 등 다수

## ③ 크리스천투데이 <英 법원, “거리 설교 허용” ... 경찰의 가처분 기각>(2020.10.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118>

영국고등법원이 거리 전도자의 설교를 금지시키려 했던 경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아본과 서머셋 카운티의 경찰은 톤턴(Taunton) 지역에서 마이크 오버드(Mike Overd) 씨가 매일 20분간 확성기와 플랜 카드 등을 사용해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고 낙태를 반대한 것에 대해,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 유지법’을 내세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카터(Cotter QC) 고등법원 명예 판사는 거리 설교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낙태자들을 ‘살인자’로 지칭하는 행위만 금지하며, 거리 설교는 허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판결에 대해 오버드는 “애초에 (경찰의) 가처분 신청이 나를 상대로 했다는 것은 슬프지만, ... 경찰이 요구했던 제약들이 완전히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톤턴 거리에서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후 5차례나 기소되고 4차례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다.

오버드는 “나는 거의 10년 동안, 설교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직면해 왔다”면서 “경찰은 내가 설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 또는 나와 같은 설교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할 때, 기독교 설교자들을 문젯거리나 심지어 적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 이라고 덧붙였다.

## 英 법원, “거리 설교 허용”… 경찰의 가치분 기각

뉴욕=김유진 기자 | 입력:2020.10.09 11:08

변호인 측 “경찰, 누군가 불쾌감 느끼면 범죄라고 믿는 경향”



▲영국 거리 설교가 마이크 오버드. ©Facebook/Mike Overd

### ■ 오버드 씨 사례 보도한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캡처

오버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LC)는 ‘반사회적 행동 규제’ 조치가 합법적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에 의해 점점 더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회장은 거리 전도자들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곧 교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기독교법률센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전국 경찰들은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끼면 반드시 범죄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라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많은 허위 체포와 기소를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그녀는 “오늘 판결은 환영하지만, 마이크의 사례는 ‘우리가 설교자들을 옹호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국 ‘온건한’ 기독교인, 즉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닥쳐올 위협이 있음’ 을 보여준다” 고 경고했다. 오버드는 오는 12월 아본과 서머셋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영국 데일리메일

Dailymail <Christian dubbed Britain's 'most arrested' street preacher walks free from court again after anti-social behaviour case collapses when police bungle paperwork>(2019.4.3.)

영국 데일리메일의 2019년 4월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마이크 오버드, 마이클 스톡웰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거리에서 성소수자, 무슬림을 향한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기 위해 외쳐왔으며 이를 ‘거리 설교’라 주장해왔다. ‘불과 유황’, ‘회개하라’라고 적은 피켓도 사용했다고 한다. 3000명 이상의 브리지위터, 톤턴의 시민들이 오버드 씨의 설교를 금지해달라고 청원서를 낼 정도였다. 이로 인해 오버드 씨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4차례 법원에 섰으며 진평연이 말한 2017년 사례는 이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4번의 기소 중 2번은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1건은 유죄가 나오기는 했으나 항소에서 뒤집혔고, 가장 최근의 사건은 아예 기각되었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기존 팩트체크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

### ② 프레임 체크

위 사건들에 적용된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1986년 제정된 “사람들에게 분노, 스트레스, 경고, 모욕을 줄 수 있는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처벌하는 공공질서법(the Public Order Act) 제5조”이다.

드물게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2017년 마이클 오버드(Michael Overd)와 마이클 스톡웰(Michael Stockwell)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이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들이 카메라로 그들의 설교를 녹화하여 자신들이 사용한 단어 및 청중의 반응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설교가 청중에게 미칠 영향 및 초래할 긴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BBC NEWS <Christian street preachers fined over Bristol shopping centre sermon>(2017.03.01.)

<https://www.bbc.com/news/uk-england-bristol-39118846>

하지만 뉴스엔조이 팩트체크에서 인용한 2019년 데일리메일 기사에 의하면

이조차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조차 법원이 혐오범죄를 얼마나 좁게 해석하고,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넓게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물론 그 후속 조치로 혐오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정도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된다.

## 8) 기타 평등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선교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 가) 주장

#### ①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종교를 사유로 한 괴롭힘의 사례로 영국 고용재판소의 Wasteney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2016) 결정이 있다. 빅토리아 와스테니는 기독교인으로 NHS 병원에서 물리 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예나 나와즈라는 젊은 무슬림 여성이 새로 물리 치료사로 입사를 했고, 빅토리아의 팀에 배치되어 그녀의 감독을 받았다. 둘은 몇 번 만났고, 빅토리아는 우정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빅토리아는 나와즈를 개종 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나와즈는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빅토리아는 그녀의 교회가 인신매매 방지활동을 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했고, 나와즈는 그녀의 교회에 가서 현대 노예제와 관련된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관심을 표현했다. 빅토리아는 그 주제에 대한 영화를 담은 DVD를 주었다. 빅토리아는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연에 대한 책을 나와즈에게 주었다. 나와즈는 어느날 빅토리아의 사무실로 울면서 찾아 와서 자신의 건강 문제와 집에서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말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울면서 말했다. 빅토리아는 무릎에 손을 대고 위로해 주며 기도해 줘도 되는지에 대해 물은 뒤 동의를 받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평화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나와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교적 사유로 인한 진정을 회사에 제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나와즈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기독교 여성과 종교적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결국, 나와즈는 빅토리아가 종교적 관점을 강요했고, 자신의 무릎에 손을 대고 기도했으며,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책을 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병원에 제기했다. 이로 인해, 빅토리아는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빅토리아는 병원을 상대로 병원이 영국 평등법을 위반하여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하였다고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고용재판소는 빅토리아가 종교적 사유에 의한 괴롭힘을 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괴롭힘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징계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 ②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는데,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인식, 사안의 다른 환경 그리고 행동이 합리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갖는가를 고려한다. 평등법상 괴롭힘 금지는 직장에서 종교적인 대화를 거의 봉쇄시킴으로써, 포교(선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왜냐하면 괴롭힘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어 포교 행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독실한 신자인 직원이 동료 직원들을 불신자라고 부르고, 신앙이 없는 결과로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경우에, 그의 위협적인 행위에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 동료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사에게 제보를 하였다면, 당사자는 직장 동료의 다른 신앙 또는 무신론을 이유로 그들을 괴롭힌 것이 되어 불법적인 괴롭힘이 성립하게 된다. 종교를 사유로 한 괴롭힘의 사례로 영국 고용재판소의 *Wastene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결정이 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빅토리아 와스테니씨는 영국 국립 NHS 병원에서 정신건강법에 의해 입소한 환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의학 전문 치료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인 직장 동료에게 기도를 해 주고,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야기에 대한 책을 주었으며, 교회 행사에 초대를 하는 등 세 가지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했다.

와스테니씨가 근무했던 NHS 병원은 런던시에 정신 치료와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 3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와스테니씨는 2007년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입소한 환자들에게 정신 건강 치료를 해 주는 센터에서 일을 하였다. 와스테니씨는 재판부에 자신을 ‘중생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였다. 자신은 8세에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2011년 4월에 친구의 초대로 크리스찬 리바이벌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기독교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지는 않았다고 했다. 자신은 이 때 이후로 신앙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했고, 교인이 약 3500명이며, 지금은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2011년 와스테니씨는 직장 상사에게 NHS 병원에서 기독교 예배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고, 자신의 교회가 예배에 자원봉사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상사의 승낙 후에 2011년 11월부터 매주 ‘생명을 찾는 그룹’이라는 이름의 예배가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에 병원 직원 한 명이 예배에 참석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개인 신상에 대해 알려 달라고 요청을 받아 불쾌하다는 이메일을 와스테니씨의 직장 상사에게 보냈다. 또 다른 한 명의 직원은 와스테니씨가 병원 예배에 참석하는 환자를 병실에서 데려오는 것이 다른 간호사들의 심기를 거스렸고,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2012년 3월에는 ‘생명을 찾는 그룹’의 자원봉사자가 예배 참석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도록” 예배 참석을 권면하라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다. 또한, 생명을 찾는 그룹 예배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박수를 치라는 압력을 한다는 불만도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병원 예배는 중단이 되었다. NHS 병원 측은 크리스천 리바이벌 교회에게 예배 형태를 에큐메니컬(ecumenical)한 교파의 예배형태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는데, 크리스천 리바이벌 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2년 7월에 한 젊은 무슬림 여성이 NHS 병원에 1년 계약으로 입사를 했다. 이 여성은 와스테니씨의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직속 상사는 와스테니씨가 아니었다. 2013년에 이 무슬림 여성은 와스테니씨의 직속 상사인 월슨씨에게 와스테니씨가 자신의 종교적 관점을 강요함으로써,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무슬림 여성은 와스테니씨가 크리스천 리바이벌 교회의 행사와 예배에 자신을 초대 했고, 교회 도서와 DVD를 주었으며, 자신에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진술하였다. NHS 병원은 와스테니씨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3년 6월에 와스테니씨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하였다. 곧이어, 와스테니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와스테니씨는 진정을 제기한 무슬림 여성이 입사한 후 둘은 몇 번 만났고, 와스테니씨는 우정이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와스테니씨는 그 무슬림 여성을 강제로 개종시키려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진술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무슬림 여성은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와스테니씨는 자신의 교회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했고, 무슬림 여성은 그녀의 교회에 가서 현대

인신매매, 노예제와 관련된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관심을 표현했다. 와스테니씨는 그 주제에 대한 영화를 담은 DVD와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연에 대한 책을 그녀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 무슬림 여성은 어느 날 와스테니씨의 사무실로 울면서 찾아 와서 자신의 건강 문제와 집에서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말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울면서 말했다. 와스테니씨는 무릎에 손을 대고 위로해 주며 기도해 줘도 되는지를 물은 후 동의를 받고, “하나님, 저는 당신이 평화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와스테니씨가 개인적인 신앙과 직장에서의 역할 간의 경계를 넘었고, 부하 직원인 무슬림 여성이 교회에 참석하라는 상사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한 DVD를 준 것도 기독교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와스테니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다. 와스테니씨는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악의를 가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시다. 그 당시에 제 앞에서 그 무슬림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가학자와 약탈자로 취급하였습니다. 불만을 품은 그 무슬림 여성의 진술을 검증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진술에만 근거하여 징계를 한 것은 회사가 저에 대하여 ‘저의 종교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에 와스테니씨는 영국 고용재판소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와스테니씨는 영국의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근거하여 NHS 병원이 (1)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직접 차별을 하였고(제13조), (2) 의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함으로 간접 차별을 하였으며(제19조), (3)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자신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적, 적대적, 헐박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혔음(제26제 제1항과 제40조 제1항)을 주장하였다. 이 소송에서는, 그 무슬림 여성을 근무 시간 이후에 열리는 행사에 초대를 했고,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거나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처벌을 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의 권리를 위반한 것인지, 동의하에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것으로 징계를 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무슬림 여성이 원했거나 또는 시작한 대화에서 동의하에 진행된 대화를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의 결정 : 고용재판소 1심 재판부는 무슬림 여성의 진정은 심각한 내

용이고, 몇 가지 증거도 있기 때문에 무슬림 여성의 진정서를 근거로 징계를 한 것이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직접 차별이 성립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와스테니씨에게 정직 결정을 내린 자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와스테니씨가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징계가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한 조치도 아니라고 하였다. 아울러, 재판소는 와스테니씨가 직장 상사가 한 이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대화를 넘어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괴롭혔기 때문에 단순히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끝으로, NHS 병원에 종교를 가진 직원이 다른 종교를 가진 직원을 자신이 가진 종교 행사나 예배에 초청해서는 안 된다거나 기독교를 홍보하는 도서나 미디어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와스테니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와스테니씨는 항소를 하였다. 항소 이유에서 와스테니씨는 원심이 와스테니씨의 종교 또는 신앙을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종교 또는 신앙을 ‘행사할 자유’로 보지 않은 오류가 있고, 또한 NHS 병원이 징계 조치를 함에 있어 조정 절차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에 대한 적정성 심사에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와스테니씨가 자발적이고 동의에 의하여 직장 동료에게 종교적 신앙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대화를 넘어서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가하는 괴롭힘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와스테니씨가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신앙의 행사가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고용주가 심각한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내린 징계 조치는 억압적인 것이 아니고, NHS 병원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와스테니씨에 대한 직접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비판적 검토 :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언급 되어 있지 않지만, 와스테니씨는 텔레그랩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 여성과 종교적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것에 반대했었던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종교적 사유로 인한 진정을 회사에 제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로 인해, 그 무슬림 여성이 와스테니씨가 종교적 관점을 강요했고, 자신의 무릎에 동의 없이 손을 대고 기도했으며,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책을 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회사에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고용재판소는 와스테니씨가 무슬림 여성에게 ‘종교적 사유에 의한 괴롭힘’을 했다고 결정했고, 괴롭힘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시했으면서도, 회사의 와

스테니씨에 대한 징계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NHS 병원 측은 크리스천 리바이벌 교회가 주관하는 병원 예배에 대하여 몇 명 직원들의 불만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고, 예배 형태를 애큐메니컬한 교파의 예배 형태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특정 종교나 신앙에 의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테니씨의 포교 행위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종교적 괴롭힘으로 본 반면에, 와스테니씨를 징계한 회사의 조치는 와스테니씨의 기독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고용재판소의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임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키는 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평등법에는 명시적으로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한 직·간접 차별과 괴롭힘 금지가 모두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NHS 병원의 와스테니 씨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한 법원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평등법상 괴롭힘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어 있지만, 고용재판소는 징계를 받은 와스테니씨의 주관적 인식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법원이 피해자가 무슬림이고 가해자가 기독교인인 점을 크게 고려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와스테니씨는 개종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았고, 종교적 대화와 기도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무슬림 여성의 주장만을 거의 다 사실로 수용하였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더라도, 가해자가 다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괴롭힘이 성립하게 된다. 특히, 종교적인 대화와 같이 양자간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물증으로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종교선전과 포교 행위를 위축, 제한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와스테니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등법으로 인해 직장에서 직원들이 종교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과거에 합법적이었던 종교선전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종교적 괴롭힘의 불법행위가 되어 버림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가진자가 괴롭힘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직장, 학교 등 사회에서 타인과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종교선전과 포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영국 고용재판소의 Wastney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2016) 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Wastney는 영국 공립 NHS 병원에서 법의학 작업 치료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 입사한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여성 하급자에 대해 안수 기도를 해주고,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정한 내용의 책("I Dared to Call Him Father", 국내 출판명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을 주었으며, 교회 행사에 초대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2개월 간 유지되는 최종서면 경고(final written warning lasting 12 months)" 라는 징계를 받았고(이 징계는 Wastney의 징계에 대한 항소 중 first written warning으로 감경되었다) 징계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 정직되었다.

위 사건에서 Wastney는 하급자인 무슬림 여성과 서로 합의 하에 종교적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동의를 얻고 안수기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Wastney가 직업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하급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징계 위원회는 징계 청문 과정에서 기독교 개종을 장려하는 책을 주고, 안수기도를 하고, 교회 행사에 여러 차례 초대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녀는 징계 청문회에서 안수기도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상황에 따라 부적절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였고, 안정을 주려한 행위이나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징계위원회는 또한 그녀가 2012년 3월 관리자로부터 직원을 대할 때 개인적인 영적 신념과 관련하여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Wastney는 영국 고용재판소에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이후 그녀는 두 번째 항소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Wastney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무슬림 여성이 왕따였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며, 반기독교적인 동료들에 의하여 조종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https://www.telegraph.co.uk/news/health/news/10933206/NHS-worker-who-bullied-Muslim-by-praying-for-her.html>

## ② 프레임 체크

Wasteney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사건은 본질적으로 종교선전과 포교의 자유에 관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Wasteney는 종교선전과 포교의 자유를 행사한 것 때문에 징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장의 상급자로서 직장 내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하급자에게 강요하였기 때문에 징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직장 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 또는 압력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2에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Wasteney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 피해자와 지위상 우위를 가진 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강요하여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무슬림 여성은 Wasteney를 고발하며 그녀가 “실무 첫해를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까지 주장하였다.

진평연은 “고용재판소는 와스테니씨가 무슬림 여성에게 ‘종교적 사유에 의한 괴롭힘’을 했다고 결정했고, 괴롭힘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시했으면서도, 회사의 와스테니씨에 대한 징계는 종교적 사유에 의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항소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 EAT)는 징계절차의 대상은 종교적 행위이나, 그 행위가 문제된 이유는 하급 직원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이며, 만일 특정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했을 경우라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한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부여된 징계는 서면 경고에 불과하여 억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Wastney는 직장 내에 반기독교 세력이 있다거나, 그녀를 고발한 하급자가 그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직장 내에 포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암묵적 룰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고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해외 사례를 해설하는 것은 논점을 오도할 뿐 아니라, 섞여 있는 사실 때문에 쉽게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워 가짜뉴스보다 더 큰 해악을 가진 행위이다.

이상과 같이 Wastney는 단지 ‘종교적 토론’을 행한 것 때문에 징계된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징계된 것도 아니다.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하급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다면 그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든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진평연은 “이 사건은 과거에 합법적이었던 종교선전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종교적 괴롭힘의 불법행위가 되어 버림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과거에는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던 직장 내 갑질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으로 영국 사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 나. 반동성애 신념으로 종교기관 운영하다 불이익받은 사례 검증

### 1) 영국에서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한 가톨릭 입양기관의 절반이 폐쇄되었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영국 고등 재판소,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천주교 입양기관은 차별금지법 위반”

영국 고등 재판소(Upper Tribunal)는 천주교 입양기관인 캐톨릭 케어(Catholic Care)가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부금 모집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양이 감소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캐톨릭 케어는 로마 카톨릭교의 리드 교구에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단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였다. 이 단체는 입양 부모를 모집하고, 적합성 평가를 하며 입양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였는데, 입양 후의 지속적인 지원도 하고 있었다. 특히, 캐톨릭 케어는 장애, 연령, 피부색 등의 이유로 일반 아동보다 입양이 어려운 아동을 입양 시키는 데 있어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 또한, 카톨릭교 교회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입양 후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입양기관에 비해 더 낮은 입양 실패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카톨릭교 입양단체와 마찬가지로, 캐톨릭 케어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로마 카톨릭교 교리를 따르고 있었는데 정관에 가족생활의 모델로 아빠와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거룩한 ‘나자렛 가족’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근거하

여, 동성커플에게는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혼인을 한 이성커플에게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영국에서 동성애(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위법성이 문제가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본 사건에서 동성커플에게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양육환경이 이성커플 가정에 입양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가 이미 법제화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지 캐톨릭 케어가 차별금지법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 - 사실관계

천주교 입양기관인 캐톨릭 케어는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를 찾아주고, 검증하며 아동 입양과 입양 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입양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8년까지 캐톨릭 케어는 이성애자 부모만을 대상으로 입양을 실시해 왔고, 동성 커플은 입양 부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로마 카톨릭교의 교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캐톨릭 케어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7년에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법 위반 사항이 되었고, 동 시행령 제15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다. 다만, 동 시행령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원칙에 대해 공익단체에게는 일부 예외를 인정해 주었는데, 제18조에서 공익단체의 정관에서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주었다. 2010년에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도 공익단체에 대해 제19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 주었다.

캐톨릭 케어는 이러한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정관상의 설립 목적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였다. “본 법인은 입양 서비스를 이성애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고, 이성애자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는 교회의 교리를 따라야 한다. 입양 서비스의 제공과 그 방법이 교회의 교리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리드 교구의 로마 캐톨릭 주교가 결정한다.” 캐톨릭 케어는 공익단체 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정관 개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공익단체 위원회는 이를 불허하였고, 캐톨릭 케어는 1심 재판소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소는 캐톨릭 케어가 신청한 정관상의 설립 목적 변경을 허가할 경우 시행령 제18조의 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동일한 활동을 지속하도록 허용되고, 이는 시행령 제15조의 입법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점과 캐톨릭 케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설립 목적

은 시행령 제8조와 제14조 제8항에 의해 법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캐톨릭 케어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법원(High Court)은 정관상의 설립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인해 야기되는 불리한 처우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 따라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공익단체 위원회로 환송하였다. 그러나, 공익단체 위원회는 2010년 7월에 캐톨릭 케어의 정관 개정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하였고, 캐톨릭 케어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이 변경되었고,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 2010이 입법이 되었다.

2010년 법원의 판결에서는 시행령 제18조가 유럽인권협약 제14조를 이행하는 조항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별이 허용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2010이 입법이 되면서 동법 제29조는 입양기관과 같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제13조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하여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직접 차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제4조는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93조는 정당한 목적에 대한 항변 사유를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18조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 즉, 유럽인권협약 제14조가 제193조에 유추적용 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캐톨릭 케어는 차별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을 주장하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같이 입양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캐톨릭 케어는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였고, 연간 약 10명 정도의 아동을 입양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캐톨릭케어가 폐업을 한다면 많은 아동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몇몇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하였다. 아동들은 다른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될 수 있고, 더욱이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는 많으나 입양이 적게 이루어지는 것은 입양을 위한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입양기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소는 아동의 이익을 고려할 때 캐톨릭 케어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 입양 대상 부모를 이성애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되는 아동에 맞는 가정을 찾는 어려움과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 부모로 한정을 하더라도 더 많은 아동이 입양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수단의 적

절성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성커플 입양 부모에 대해서는 다른 입양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캐톨릭 케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커플에게 입양을 하면 기부를 중단할 것이라는 점도 동의하지 않았다. 캐톨릭 케어가 지속하고자 하는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 될수 없고, 2010년 제정 차별금지법 제193조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부칙 제149조 제1항에 의해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의무가 입양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 법원의 결정

마지막으로 캐톨릭 케어는 고등 재판소에 항소를 하였다. 캐톨릭 케어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종교적 신념만으로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동성 커플은 다른 입양기관과 정부를 통해 입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톨릭 케어의 이러한 차별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입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을 더 이상 모집할 수 없고, 기관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캐톨릭 케어가 폐업을 한다면 입양 서비스 제공이 감소하게 되고, 입양 가정에 위탁되는 아동의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등 재판소는 1심 재판소 결정에 일부 흠결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그로 인해 결정 자체가 번복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1심 결정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아동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캐톨릭 케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양한 부모들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많은 아동들이 입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캐톨릭 케어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캐톨릭 케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동성 커플이 다른 곳에서 입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입양 제도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정적 손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의회가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승인한 가치-즉,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의 증진에 대한 위해도 없애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고등재판소는 천주교 교리에 따라 전통적 가정에 대한 입양을 지지하는 기부자와 인종 차별주의에 근거한 기부자를 동일시 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캐톨릭 케어의 주장이 신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짓되지 않은 것임은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성애자 부모에게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금

지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캐톨릭 케어가 차별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 비판적 검토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차별금지법 입법 후 야기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캐톨릭 케어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일단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입양되는 아동에게 최상의 양육 환경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가 포함되고, 모든 용역의 제공에 있어 차별이 금지되며, 입양도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애자 부부 가정과 동성커플 관계를 비교하여 과연 아동의 양육에 있어 최상의 환경은 어느 쪽인지, 동성커플에게 입양을 허용했을 때의 부작용과 입양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있을 뿐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과연 입양 아동의 인권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최상위의 인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 허용 문제는 무엇보다도 입양되는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에서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라고 선언하면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이 아동의 성장과 복지에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부모로 구성된 전통적 가정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입양제도 허용에 있어 당사국에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21조). 성급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입양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캐톨릭 케어 판례에서와 같이, 일단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성적 지향 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지엽적인 이슈만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데, 캐톨릭 케어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를 적용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 입법 이후에 주무관청이 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해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입양제도가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것에 가리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해서 안된다. 동성 커플에 입양을 허용해도 입양아에게 최상의 양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도,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성급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되풀이 되고 있을 뿐이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차별 금지를 넘어서 부모 개념의 변화, 가족개념의 재정의, 입양제도의 변경 등 전사회적인 변혁을 야기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어도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안주하고 있는가?

크리스천투데이는 2015년 3월 22일자 기사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서 자란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며 전통적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하였다. 히더 바웬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후, 아버지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다”면서 “난 어머니의 파트너에게서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결코 아버지의 빈 자리를 대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동성 커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동성결혼은 단순히 결혼을 재정의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양육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동성 커플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상처와 고통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동성 커플 밑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무시를 당하거나 동성애 혐오자로 낙인이 찍힌다. 그러나 그런 말은 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해 입양 아동의 선택권과 최상의 이익 보장을 훼손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입양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의 어두운 민낯을 직시하고, 성급한 입법을 주장하기 전에 진지하고 정직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

여야 할 것이다.

## ② CTS <차별금지법, 영국 사례는?>(2020.11.24.)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8&dpid=270961>



- ‘영국 차별금지법의 폐해’ 사례로 ‘동성 커플 입양 거부 천주교 입양기관’ 보도한 CTS

2003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을 제정한 영국. 2006년에는 평등법을 제정, 2010년에는 ‘이퀄리티 액트 2010(Equality Act 2010)’ 라는 이름으로 평등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현 평등법은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역차별을 우려할만한 사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영국 고용재판소가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재판소는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슬림 직장 동료에게 기도해 준 빅토리아 와스테니는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리아는 고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전도 행위는 직장 동료에 대한 종교적 괴롭힘이지만, 병원 측의 징계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모순된 이유에서였습니다.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천주교 입양기관 가톨릭 케어는 영국 고등 재판소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관련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뷰세이 랫지 초등학교에서는 6세 학생들에게 해리왕자의 역할로 동성 하인에게 청혼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8년 영국 헤버스 팜 초등학교는 LGBT 축제를 열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영국의 평등법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유사점이 많다” 며 차별금지법이 영국

의 사례처럼 성별제도를 비롯해 사회 전 영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평등법을 제정한 영국의 사례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국내에 경각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5>

이 뉴스도 사실이다. 영국은 2007년부터 입양기관이 동성 커플 입양을 거부하면 벌금을 물고 정부 지원금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톨릭은 교리적 이유로 동성 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내 가톨릭 입양 기관들은 사업을 접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관으로 알려진 '카톨릭케어'는 2012년 종교 기관으로서 법 적용을 예외로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카톨릭케어가 왜 차별금지법에서 예외로 적용돼야 하는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이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법 개정이 재정난을 심화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뉴스 또한 한국의 차별금지법안과는 상관이 없다. 동성 커플 입양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동성 결혼에 관한 문제다. 한국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먼 얘기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동성 커플의 입양 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기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을 뿐이다.

뉴스앤조이의 보도가 사실과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영국 내 가톨릭 계열 입양기관들은 사업을 접기도 했으나,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동성 커플의 입양을 거부한다고 하여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동성 커플의 입양 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기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을 뿐이다.

## ② 프레임 체크

- 한국에 평등법이 제정되더라도 동성 커플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양’ 개념에 걸맞은 한국의 제도는 ‘친양자 입양’ 과 ‘양자 입양’ 으로 나눌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기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이라는 민법상의 양부모 자격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게다가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동성 커플에게 입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동성혼이 법제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동성 커플이 양부모로서 적절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친양자 입양을 할 방법은 없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의 문제이다.

한국의 ‘양자 입양’ 제도는 조금 특이한 것으로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부모가 입양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현행 법제상 ‘독신 입양’ 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친의 입양 동기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한다.

백 보 양보하여, 입양기관이 동성커플 입양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영국에서는 시행령 등으로 공익법인의 의무를 명확히 한 반면,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법인에 관한 제재조항은 매우 간접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만으로는 이행강제금 외에 별달리 입양기관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나아가, 기사에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를 고려할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의 입양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개별 입양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동성 부부의 입양 검토하는 게 맞다.

진평연은 동성 부부에게 입양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동성혼이 법제화된 국가들의 연구 결과 이성 부부와 동성 부부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2017년 8월 발표한 레즈비언, 게이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

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동성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성 부부가 입양해 키운 자녀의 성정체성 발달 양상은 이성 부부의 입양 자녀와 차이가 없었다. (프레스리안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2018.5.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97057?no=197057#0DKU>

만일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 문제가 다루어진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이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포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영국에서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고용하지 않은 교회를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한 것은 역차별이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차별금지법은 「소수자특권법」이고 「역차별조장법」이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남성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고용하지 않은 영국 성공회 교회에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47,000파운드(약 8,5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2007년에, 영국 성공회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며 헤리퍼드 교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성공회 주교를 상대로 제기된 동성애자와 교회간의 최초의 소송 사건이었다.

#### - 사실관계

존 래니는 2006년에 영국 성공회 헤리퍼드 교구의 교회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을 하였다. 그는 부스브릿지의 성 세례요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일하였고, 그 후 성공회 노르빅 교구에서 교회와 관련한 청소년 사역을 하였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성공회 체스터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로 일하였다. 그는 채용 지원서에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체스터 교구의 청소년 사역을 그만 둔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는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일을 하던 중 기독교 청소년 사역에 복귀하고 싶다는 이유로 헤리퍼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8명으로 구성된 패널과의 1차 면접에서 그는 뛰어난 채

용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프리디스 주교와의 2차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2차 면접에서 주교는 존에게 왜 체스터 교구의 청소년 사역을 그만 두었는지 물었다. 그는 체스터 교구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있었을 때 동성 성행위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와 마찰이 있었다고 답했다. 체스터 교구는 그에게 그의 파트너와 사역 중에 양자택일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는 파트너를 택하고 사역을 내려놓았다고 하였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하지 않고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가, 이번 채용에 지원하기 직전인 2006년 부활절에 그의 동성 파트너와 헤어졌다고 하였다.

영국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준수하는 기독교 교리는 혼인 외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고, 존은 이를 위반한 것이었다. 면접 과정에서 존은 주교에게 자신은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주교가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하자, 그는 성행위를 하지 않으며 스스로 금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주교는 “만약 누군가를 사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고, 존은 사귀는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주교와 논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였다. 2차 면접 후에 주교는 존에게 전화로 채용 불합격을 통보하였고, 이성애자 이든, 동성애자 이든, 양성애자 이든 또는 트랜스젠더 이든 간에 상관없이 혼인 외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영국 성공회의 공식적인 교리이고 정책이라고 불합격 이유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존의 성적 지향 자체는 이슈가 아니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교구 내에서 영적, 도덕적, 윤리적 리더십에 잠재적인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당시에는 영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이 당시 동성커플은 2004년에 제정된 시민결합법(Civil Partnership Act)에 의해 시민결합 등록은 할 수 있었다.

존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헤리퍼드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면접 과정에서 헤리퍼드 주교가 그에게 동성애 관계에 대해 질문을 했고, 당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다. 동성애 인권운동 단체인 스톤월이 존에게 이 소송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였다.

#### - 법원의 결정

영국 고용재판소는 주교의 행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금지 시행령상의 불법적인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존의 주장은 기각하였다. 법원은 지원서에 동

성애자임을 밝힌 존을 불합격 시킨 것은 그의 성적 지향 때문이고, 이성애자 지원자의 경우에 사용했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교회의 채용에 있어 주교가 평신도에게 독신의 조건을 요구한 것은 교구가 간접 차별을 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동 시행령의 제7조 제3항은 종교단체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목적을 위한 채용에 있어, 종교 교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채용 직종의 성격과 관련하여 종교 신도 대다수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지원자가 자격 조건에 미달하거나 고용주가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자가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성적 지향을 채용 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법원은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가 종교의 목적을 위한 채용임은 인정하였고, 동성애가 성공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직종의 성격과 관련하여 종교 신도 대다수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존은 지원 당시에 주교가 요구한 대로 교회의 교리에 따라 독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교가 그 부분에 결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즉, 원고가 수년 동안 동성애 관계에 있다가 최근 그의 파트너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성공회 교리에 따라 장래에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주교가 이를 무시하였거나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원고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주교가 그의 확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고, 부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원고가 2차 면접과정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괴롭힘(harassment)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영국 성공회의 교회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을 하였고, 지원서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교가 성공회 교리를 준수할지에 대한 원고의 동의 여부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고 보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주교의 질문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2008년 2월에 영국 성공회가 래니씨에게 47,000파운드(당시 환율 기준, 약 8,500만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배상액에는 25,000파운드의 장래 임금상실액과 8,000파운드의 장래 연금 상실액, 7,000파운드의 상해 배상, 그리고, 6,000파운드의 위자료가 포함되었다. 존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게이 로비 그룹인 스톤월의 지지와 재정 지원을 받아 승소해서 기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영국 성공회 내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레즈비언, 게이 기독교인들이 공평하고 존중받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 - 비판적 검토

영국 고용재판소의 이 결정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타당하지가 않다. 첫째로,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성 파트너와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 체스터 교구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근무할 동안에 이 문제로 인해 교회와 분쟁이 있었고, 사임을 하기도 한 전력이 있다. 그가 헤리퍼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 지원했을 당시에 그의 파트너와 헤어졌다고는 하나, 그가 이후 앞으로 독신으로 지낼 것이고, 혼인 외의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말을 지킬 여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혼이 합법화되기 이전이었고, 원고가 동성인 배우자와 혼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평생을, 아니 적어도 청소년 사역자로 일하는 동안에는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원고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과 혼인을 할 수도 없을 것인데, 앞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지내면서 성적 순결을 지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만약, 채용 후에 동성 파트너를 사귀게 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2차 면접에서 누군가를 사귀게 되어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주교와 상의하겠다고 한 말은 동성 성행위를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원고의 약속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 주교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편향적으로 보인다.

둘째로, 고용재판소는 주교가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부지 중의 차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주교와 교회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물론, 당시에 동성애 문제는 영국 성공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큰 논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성공회 교리는 확립되어 있었고, 이 교리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교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동성애자임이 문제가 아니고, 혼인 외의 성적 순결 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언급하였다. 주교에게 차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부지 중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고의를 의제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 중립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셋째로, 목사, 교역자, 사역자와 같은 종교 직종에서의 채용 기준을 과연 비종교적인 일반 직종의 채용과 동일시 할 수 있는가이다. 종교 직종은 높은 도덕성 뿐만 아니라, 엄격한 종교 교리의 준수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종종 성직(聖職)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종교에 헌신된 봉사자, 신의 종이라고도 불리는 성직자의 채용을 일반 세속적 직종의 채용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특히, 종교 교리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교

단, 교회의 주관적, 종교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이 법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종교 교리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문제된다. 이 결정에서 고용재판소는 원고의 장래의 교리 준수 여부에 대한 주교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나, 수십 년간 종교에 귀의하여 온 주교의 판단은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서의 지원자에 대한 종교적, 신앙적 요소까지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에 존은 청소년 사역자를 거쳐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에 14세의 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성범죄자 명부에 기재가 되었다.

영국에서 교회와 동성애자 간의 첫 번째 소송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를 잘 보여 준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금지 시행령에는 종교단체 채용에 있어서의 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교회법의 영역에 놔두어야 할 문제를 사회법으로 무리하게 규율하려고 할 때, 종교단체의 채용과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종교의 세속화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종교가 세속화 되면 신앙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② CTS <차별금지법, 영국 사례는?>(2020.11.24.)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8&dpid=270961>

치를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3) 영국 고용재판소,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

2007년에 영국 성공회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을 원  
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42세의 존 래니가 성적지향



### "동성애자 채용 안한 교회, 차별 사례"

- ‘영국의 차별금지법 폐해 사례’ 로 인용 보도한 CTS

2003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을 제정한 영국. 2006년에는 평등법을 제정, 2010년에는 ‘이퀄리티 액트 2010(Equality Act 2010)’ 라는 이름으로 평등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현 평등법은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역차별을 우려할만한 사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영국 고용재판소가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⑤/노방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이 문제>(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9>

이 사건에서 ‘청소년 사역자’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사건에 나오는 잉글랜드성공회 헤리포드교구 청소년 사역자(youth officer)는 목회직이 아닌 단순 사무직에 가깝다. 헤리포드교구는 이 직책을 ‘보좌사목자’(support minister)로 분류해 왔다. 보좌 사목자는 교구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만, 헤리포드교구에서는 목회 권한은 없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헤리포드교구가 낸 구직 공고에도 이 일이 목회와 관련한 것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잉글랜드성공회 교인으로 직분이나 성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필요한 것은 헌신, 경험, 열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사례의 주인공인 동성애자 존 래니는 2006년 청소년 사역자로 지원했다. 래니는 사실 과거에도 타 교구에서 사역자로 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동성 애인과 파트너 관계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양자택일을 요구받고 결국 떠나야 했다. 래니는 1차 면접관에게 이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면접관은 혼외 성관계는 금지하는 잉글랜드 성공회 성적 규칙을 준수할 것이냐고 물었다. 래니는 앞으로 독신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후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는 결과와 함께 주교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잉글랜드성공회에서 동성애는 한창 논쟁 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종 인사권을 가진 주교가 그를 한 번 더 면접하게 된 것이다. 프리디스 주교는 2차 면접에서 래니가 독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한 번 더 물었다. 래니는 더 이상 동성 파트너와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러나 래니는 면접 후 채용 불가 고지를 받았다. 프리디스 주교는 혼외 성 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잉글랜드성공회 교리이자 정책이라는 이유를 댔다. 당시

영국은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래니가 확약을 깨고 동성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알 길이 없다며 불합격을 통보한 것이다. 래니는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두 번 면접을 진행하면서까지 불필요한 질문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고, 최종적으로 고용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차별받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용 과정에서의 괴롭힘은 기각하고 고용 영역에서 차별은 인정했다.

법원은 우선 교회에서 누군가를 채용하는 건 특정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잉글랜드성공회는 동성애 논쟁이 한창이었다. 법원은 일부 신도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면접에서 성적 지향과 관련해 대화 나누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면접 과정에서 래니가 앞으로 독신으로 살 것인지 물었던 것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래니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확약한 후에도 그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법원은 래니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주교가 그의 확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래니가 이성애자였다면 그의 확약을 받아들였을 것이었다며, 이를 '무의식에 근거한 차별'로 봤다.

무엇보다 래니가 지원한 '청소년 사역자'가 종교적 신념이 필수로 요구되는 성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성직자가 아닌 단순 사무직원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후 래니는 헤리포드교구를 상대로 약 8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다.

헤리포드교구와의 소송으로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래니는 이후 지방 소도시 의원직에 당선됐다. 청소년 사역자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표심을 얻었다. 하지만 래니는 2015년 6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소년을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임했다. 이듬해 래니는 아동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징역 1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향후 10년간 신상 공개도 함께 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교회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목회자나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적다. 애초에 보수 교단들은 동성애자가 목회자나 직원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은 기우에 불과하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 ‘2차 면접’ 과 같은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발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미 면접을 통해 선발하기 하여 통보까지 한 상태에서 이를 반복했다는 것이었다. 진평연은 지원 절차가 원래부터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쓰고 있으나, 당시 2차 면접 전형은 없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 면접을 통해 선발될 것으로 정해진 래니에게 프리디스 주교가 따로 접촉하여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직접 자기 집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끝에 래니를 선발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비공식적이고 부적절한 추가 절차 자체가 ‘차별’ 로 판단된 중요한 이유였다. 진평연은 프리디스 주교가 따로 접촉한 것이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2차 면접’ 이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 래니의 이직 사유는 처음부터 밝혀져 있었다.

또한 진평연에서는 면접을 볼 때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소위 ‘2차 면접’ 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전했다. 그러나 래니는 이미 지원서의 추가 기재 사항에 자신의 성적 지향을 나타내는 내용을 적었고 면접에서 이에 관해 논의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디스 주교가 비공식적이고도 부적절한 2차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점이 본 사건을 차별로 판단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 - 판결의 핵심은 교회 사역 보조직원이 노동 차별금지법 적용 예외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교회에서 설립한 재단의 노동자, 미션스쿨의 교직원 등 물론 교회에서 사역 외의 일을 하는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youth worker’ 는 사역의 보조인으로, 직접 목회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노동 차별금지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다.

영국 노동법원은 노동 차별금지법의 적용 예외 대상을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직접 목회를 하는 종교인들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예외 없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는 목회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하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역 보조인 역시 노동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 차별로 판단하게 된 주된 이유는 판단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다.

주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동성애나 혼외 성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은 본 사건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판결은 래니가 겪은 ‘채용 절차’가 남들과 다른 예외적이었는지에 집중했다. 영국 노동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미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사람을 주교가 따로 전화로 상담하고, 집으로 불러 면담을 하며, 사적인 생활에 대해 캐묻는 등의 절차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인 절차였고, 이러한 예외적인 채용 절차를 유독 래니에게만 적용한 것은 래니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래니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평연의 ‘비판적 검토’에 실린 주교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거나, 교리의 준수 여부는 성직자에게 맡겨야 한다거나, 혼외 성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 배제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하는 주장은 이 사건 판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법원은 주교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판단이 교리에 맞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 적이 없다. 심지어 래니의 선발 탈락 사유조차도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핵심적인 쟁점은 이미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마친 뒤에 교주가 따로 전화하고 면담하는 등 특별한 절차가 적용된 이유였다. 결국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영국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그래도 내용은 옳았다’고 주장하는 모양새이다.

## ② 프레임 체크

- 한국의 종교단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

진평연은 ‘정체성을 이유로 채용 절차를 달리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역차별 조장법”이라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독교계의 입장은 특정 지방 사람이라는 이유로,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채용 절차를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아가, 한국의 종교시설 노동자의 지위는 대체로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 노조 설립이나 최저임금 등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할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회 바깥이었다면 이미 사용자가 형사 처벌될 만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봉사자’라는 이유로 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있다.

과연 래니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차별금지법상 ‘고용’ 분야의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법 적용의 첫 번째 관문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 영역’ 단계에서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 교회의 고용 분야에

서는 차별금지법상 종교단체의 예외에 관한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교회에도 고용-사용 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당연한 명제조차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속의 노동법 위에 균립하고 있는 한국 종교단체들이 과연 차별금지법이 등장한다고 하여 대단한 규율을 받게 될 것인지, 이를 ‘역차별 조장법’ 이라며 호들갑 떨 일인지 의문이다.

### 3) 미국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카톨릭 학교 채용에 취소된 청년이 있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과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미국 메사추세츠주 밀튼시에 있는 카톨릭 여자 학교인 폰타본 아카데미는 학교의 급식 담당 직원으로 남성인 매튜 배럿을 2013년에 채용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가 직원의 비상연락처 서식에 그의 남편을 기록을 했고,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학교는 채용을 취소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주 법원은 학교가 동성결혼을 한 사실을 안 후에 채용을 취소함으로써 게이 남성에게 대해 차별을 했다고 판결했다. 배럿의 변호사인 ‘게이·레즈비언 변호 및 방어 법률회사’의 벤클라인은 동성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 고용을 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 종교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첫 번째로 거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카톨릭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교사직이 아닌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② 테오코람닷컴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의 적용과 폐해>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한 카톨릭 여학교(폰타본 아카데미)의 학교의 급식 담당 직원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채용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 주 법원은 학교가 게이 남성에게 대해 차별했다고 판결함 (2013)

#### ③ Life Site <Judge: Catholic schools must hire people in gay ‘marriages’ for non-teaching positions>(2015.12.21.)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해당 소송은 화해로 종결되었다.

이 사안은 폰타본 아카데미 종립학교가 패소하여 원치 않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억지로 고용을 강요당한 사례가 아니다.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 명령에 따라 당사자와 학교재단이 합의한 사건이다.

화해 후 학교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화해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배렛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학교는 그와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커뮤니티에서 우수한 교육과 사회 정의를 조성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당사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되어 공동체를 회복한 사건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 ② 프레임 체크

-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여도 일반 학교와 같은 고용 원칙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정규 교육의 원칙 밖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현행 한국법제 하에서 종립학교 내에서의 고용상 차별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즉, 본 사건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위헌 및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

종교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일반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종교적 사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지, 종교 교리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가해도 괜찮아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한국에서도 교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주 제기되어 왔다. 이런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해 왔다.

(참조 : 2018. 12. 28.자 결정 18진정0830800 [대학교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

유로 한 고용차별], 2015. 4. 28.자 결정 15진정0068000 [사립고등학교 교사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 2015. 6. 17.자 결정 14진정1066000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자격제한 개선 권고] 등)

#### 4) 미국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했던 목사가 시 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냅과 그의 아내 이블린 냅은 목사 부부인데, 2014년에 시 관계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코들레인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의 담당 변호사는 60세인 이들 부부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시 관계자는 영리행위를 하는 웨딩채플의 경우 동성결혼식 서비스를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 테데스코 변호사는 “코들레인 시는 법적인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시에서 냅 목사 부부에게 그들의 신념과 양심, 성직 서약에 배치되는 동성결혼식을 강제적으로 주례하도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강요’ ” 라고 설명했다.

##### ② 크리스천투데이 <동성결혼 주례 거부한 美 목사, 투옥과 벌금 위협받 아>(2014.10.21.)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75751>

미국 아이다호 주에 거주하는 목사 부부가 코들레인(Coeur d'Alene)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성결혼식 주례 강요를 금지해 달라” 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냅(Donald Knapp) 과 그의 아내 이블린 냅(Evelyn Knapp)은, 지난해 시 관계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 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 변호사들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들레인 시(市) 측은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사람이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법률대리자인 자유수호연맹의 수석법률상담가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 변호사는 “정부는 안수받은 사역자들이 투옥과 벌금의 위협 아래서 그들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는 성명을 발표하고, “목회자가 자신의 신념과 완전히 반하는 결혼식 주례를 강요 받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 했다.

### 동성결혼 주례 거부한 美 목사, 투옥과 벌금 위협받아

강혜진 기자 [elien@christoday.co.kr](mailto:elien@christoday.co.kr) | 입력: 2014.10.21 17:25

시 관계자들 상대로 강요금지 소송 제기



▲히칭포스트 채플을 운영하고 있는 도날드 냅 목사와 그의 아내인 이블린 냅 목사. ©자유수호연맹 제공

#### ■ 크리스천투데이 보도 갈무리

테데스코 변호사는 “코들레인 시는 법적인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수정헌법을 통해 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며 “시에서 냅

목사 부부에게 그들의 신념과 양심, 성직 서약에 배치되는 동성결혼식을 강제적으로 주례하도록 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강요’ ” 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60세인 이들 부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고소장에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간다” 고 설명하고 있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코들레인 시는 이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하고, 이를 정부의 강요와 편협함으로 바꿀 수 없다” 고 했다.

UCLA 법학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유진 볼로흐(Eugene Volokh)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글에서 “두 사람에게 스스로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행사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인 연설 강요” 라고 했다.

그는 “ ‘자유로운 연설’ 조항에 의하면,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운전자들에게 차량 번호판에 슬로건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목회자들에게 (혹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통을 받으며 행사에서 연설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 ③ 국민일보 <모든 시설물에서 반동성에 표현 금지 가능성… 교회도 예외 아니다>(2020.9.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4277&code=231111111&cp=nv>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웨딩 채플을 운영 중인 도널드 넵 목사 부부는 2014년 시 관계자로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서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돼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재화 용역 공급이나 시설 이용에 있어 동성애를 수용하는 행동을 요구받을 때 기독교 신념에 의해 거절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이 법위반 책임을 부과한다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해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행위가 금지되고 동성애 지

지 의견 표현 행동만 허용되는 것은 결국, 경제 영역에서 동성애 지지 전체주의로 귀결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중대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5>

이 사례 역시 <뉴스앤조이>가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 동성애 관련 해명 분석①'에서 검증한 바 있다. 반동성애 진영 인사들은 최초 이 사건을 가리켜 '감옥에 갔다', '벌금을 냈다'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은근슬쩍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당했다'고 표현을 바꿨다.

냅 목사 부부가 운영하던 '히칭포스트채플'은 평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곳이었는 데, 유독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냅 목사 부부는 동성혼이 법제화하기 직전 예식장을 종교 법인으로 전환해 동성 결혼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냅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로 예식장 운영에 피해를 봤다면, 커들레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승소해 2016년 5월, 1000달러 1센트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까지 했다. 개신교의 특수성을 내세워 승소한 사례인데도, 진평연은 마치 차별금지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냅 목사 사례는 반동성애 진영 몇몇 강사가 자신들 말에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 준다. 에스더기독교운동본부(에스더·이용희 대표)는 <뉴스앤조이>와의 소송 중 낸 서면에서, 냅 목사가 징역·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와전돼 잘못된 내용이다”며 “앞으로는 정정된 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내용이 교계 전반에 퍼져 있고, 지금도 에스더 홈페이지에는 냅 목사가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에스더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정정한 적 없다.

길원평 교수(부산대)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2020년 2월 선고)을 보면, 재판부는 두 사람이 “미국 아이다호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간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동성 결혼 주례를 해 줄 때까지 내도록 했다”는 사례를 들었지만, 이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길 교수와 김 약사 강연은 반동성애 성향 언론 및 블로그에 계속 남아 있고, 이들 역시 자신들 발언에 대해 한 번도 공적으로 사과하거나 정정한 적 없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⑤>(2020.7.28.)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7>

뉴스앤조이는 “오히려 넵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로 예식장 운영에 피해를 봤다며, 커들레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 승소해 2016년 5월, 1000달러 1센트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까지 했다. 개신교의 특수성을 내세워 승소한 사례인데도, 진평연은 마치 차별금지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결혼식 주례 거부 목사 부부의 차별금지법 위반 사례는 팩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예식장이 없고, 교회에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거나 또는 목사가 운영하는 소규모 웨딩채플에 소정의 비용을 내고 결혼식과 주례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날드 넵(Donald Knapp)과 그의 아내 이블린 넵(Evelyn Knapp)은 목사 부부이다. 그런데, 2013년에 코들레인(Coeur d’Alene)시는 공공편의시설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위반하면 위반 행위 한 건당 중지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씩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하도록 하였다.

2014년 5월에 지방법원은 아이다호주에서 동성 결혼을 한 커플에게 혼인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곧 이어 시 관계자들은 넵 목사 부부에게 “동성 결혼식의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조례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의 담당 변호사는 60세인 이들 부부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동안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벌금이 7,000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시 관계자는 영리행위를 하는 웨딩 채플의 경우 동성결혼식 서비스를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넵 목

사 부부는 웨딩채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냅 목사 부부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도움으로 시 당국의 협박에 대해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웨딩 채플을 닫은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만 인정을 하였고, 그 이외의 냅 부부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Knapp v. City of Coeur d'Alene, 172 F. Supp. 3d 1118 (D. Idaho 2016)].

이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시 당국은 냅 목사 부부에게 먼저 소송상 화해를 제안하였고, 냅 목사 부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화해 조서에 따라 1000.01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이 손해배상액은 그동안 발생한 소송비용과 냅 부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시 당국은 차별금지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의 교인 중에 누군가가 교회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식을 하기 위해 예배당 사용 요청을 하는 경우에 교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시설물 사용 차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기존의 팩트체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같다.

진평연과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의 문제점은 뉴스앤조이의 기사가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냅 목사 부부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겨레를 상대로 길원평 교수, 김지연 약사 등이 제기한 기사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12부)에서 2020년 2월 19일에 모두 기각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냅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징역이나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한가모)도 스스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은 와전된 내용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냅 목사 부부는 1) 동성혼이 법제화하기 전에 예식장을 종교 법인으로 전환해 동성 결혼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2) 그에 따라 냅 목

사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인데, 마치 냅 목사 부부가 엄청난 손해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의 합의에 응한 것처럼 묘사한 위 코람테오닷컴의 기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위 기사들은 애초 당국이 냅 목사 부부를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협박’ 했다고 불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협박’이라는 표현을 과격하게 사용한 점, 예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식장과 장소 제공의 목적, 상업적 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단순 종교시설인 교회에 차별금지법 제26조의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② 프레임 체크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코람테오닷컴의 기사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6조가 교회의 교인이 동성결혼식에 대하여 교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거부 시 시설물 사용차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제26조는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된 시설물 접근과 이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회는 예식장과 달리 상업적인 목적으로 결혼식 장소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 5) 스웨덴 총리가 모든 목회자는 동성 결혼을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 주장

#### ①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2017년에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교회의 모든 목회자는 동성결혼을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 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美 CBN뉴스는 “스웨덴 총리이자 사회민주당 당수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이 “스웨덴 교회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고 말했다” 고 보도했다. 뢰벤 총리는 “산부인과 간호원이 낙태 시술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하는 목회자들도 목회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뢰벤 총리의 발언은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엘이노어 그리마크라는 한 산부인과 간호원과 관계가 있다.

엘이노어 그리마크는 낙태 시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한 상황이다. 2009년 스웨덴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비 종교인인 뢰벤 총리는 “스웨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교회여야 한다”며 “성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이들 모두는 결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사제 임명에 동성결혼 주재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교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독교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 축하 행사가 아니라 예배이다.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집례하게 되어있고, 따라서 기독교의 결혼식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다. 동성결혼 주례를 안 할 경우 목사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 ② 데일리굿뉴스 <스웨덴총리 “목회자 동성결혼 거부 안돼>(2017.6.26.)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4927](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4927)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교회의 모든 목회자는 동성결혼을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美 CBN뉴스는 “스웨덴 총리이자 사회민주당 당수 스테판 뢰벤(Stefan L fven)이 “스웨덴 교회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뢰벤 총리는 “산부인과 간호원이 낙태 시술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하는 목회자들도 목회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뢰벤 총리의 발언은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엘이노어 그리마크라는 한 산부인과 간호원과 관계가 있다.

엘이노어 그리마크는 낙태 시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한 상황이다.

2009년 스웨덴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동성결혼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비 종교인인 뢰벤 총리는 “스웨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

장하는 민주적인 교회여야 한다”며 “성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이들 모두는 결혼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사제 임명에 동성결혼 주제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교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교회의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 ② 프레임 체크

스웨덴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의 주장일 뿐이며 이는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 스웨덴 국회는 2009년 4월 1일 결혼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09년 5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즉, 스웨덴에서의 동성결혼은 차별금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결혼법에 의한 것이다. 참고로, 그 한참 이전인 1995년부터 스웨덴에서는 시민결합이 도입되었다. 스웨덴의 시민결합은 결혼과 같은 법적 보호, 의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양육권과 이혼 절차도 포함하였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는 2005년부터 허용되었다

(WIKIPEDIA <스웨덴의 동성결혼>(2019.12.09.)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C%9B%A8%EB%8D%B4%EC%9D%98\\_%EB%8F%99%EC%84%B1%EA%B2%B0%ED%98%BC](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C%9B%A8%EB%8D%B4%EC%9D%98_%EB%8F%99%EC%84%B1%EA%B2%B0%ED%98%BC)

다. 반동성애 신념으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아 불이익당했다는 사례 검증

1) 미국에서 동성 결혼 축하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빵집이 벌금 판결을 받았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미국 오리건 주에서 ‘멜리사 스위트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공공시설로 인정되는 빵집에서 원고의 성적 지향에 의거하여 웨딩 케이크 제작 판매를 거부한 행위는 오리건 공공시설 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O.R.S. § 659A.403).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그러한 위법행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원고가 실제 겪은 피해의 보상(actual damages)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ORS 659A.850(4)(a)(B)), 주 법원은 피고의 케이크 판매 거절로 인한 위법행위(차별금지법 위반)로 인해 원고가 실제 겪은 피해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대해 원고 각각에게 \$75,000, \$60,000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고,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 대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 오리건 주 항소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클라인 부부는 사건 발생 후 6년 만에 연방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오리건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 용역의 제공

김재연 의원이 2012년에 대표발의 했던 차별금지법안은 금융서비스 공급·이용(안 제21조), 교통수단·상업 시설 공급·이용(안 제22조),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안 제23조), 문화 등의 공급·이용(안 제25조)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의무에 있어서 종립 기업, 종교 언론

사 등에 대한 예외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교 기업이 쿼어 축제 홍보 티셔츠 제작 주문을 받은 경우나 종교 언론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를 의뢰 받은 경우에 이를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단체의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이 영리 추구인 경  
우에는 영업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적용 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교 신조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면제를 적  
용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종교 언론사도 영리 기업이라면 마찬가지일 것이  
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독교 사진사가 동성결혼 사진 촬영을 거부  
하거나, 종교 언론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종교 제과점 사업  
가가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 하면 모두 평등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  
다. 또한, 서구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문예식장이 거의 없고, ‘웨딩 채플’ 이  
라는 결혼 전문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 이런 웨딩 채플은 전형적인 교  
회는 아니기 때문에 평등법상 종교 단체로 인정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웨  
딩채플의 목사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다면 평등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신조로 설립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영리 활동을 한  
다고 해서 종교 단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특정 영업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영업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

## ② 국민일보 <“그 빵집은 정말 유죄일까” 美 케이크 사건 대법원으로>(2018/10/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88967&code=61221111&cp=du>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절했다가 유죄 판결과 함께 1억  
50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오리건 주 제과점 부부가 사건을 미  
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데일리시그널 등 현지 언론들은 오리건 주 그레섬에서 ‘멜리사의 달콤한 케  
이크(Sweetcakes by Melissa)’ 라는 제과점을 운영했던 아내 멜리사 클라인과  
남편 애런 클라인 부부가 최근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  
다.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레즈비언 커플인 레이첼 바우만-크라이어와 로  
렐 바우만-크라이어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은 2015년 7월  
클라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5000달

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클라인 부부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오리건 주 항소법원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클라인 부부의 고난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소송에 휘말린 직후 동성애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제과점 문을 닫아야 했다. 다행히 클라인 부부의 사정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35만여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클라인 부부는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클라인 부부는 레즈비언인 레이첼 크라이어와 로렐 바우만이 결혼하기 2년 전 크라이어의 모친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제작해준 적이 있다. 즉 주문자가 레즈비언이라도 동성결혼이 아닌 경우 케이크를 제작했으니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클라인 부부의 사건은 잭 필립스 사건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콜로라도 주(州)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덴버에서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 2012년 7월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가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자 거절했다가 제소됐다.

### ③ 크리스천투데이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한 빵집 주인 끝내 ‘승소’ >(2018.10.13.)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6779>

동성결혼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된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빵집 주인이 4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승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10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소재한 빵집 ‘아셸 베이커리’ (Ashers Bakery)가 영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셸 베이커리는 지난 2014년 동성애 인권운동가 개러스 리(Gareth Lee)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개러스 리는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동성결혼 지지’ 라는 문구를 장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독교인이었던 빵집 리자인 대니얼 맥아서(Daniel McArthur)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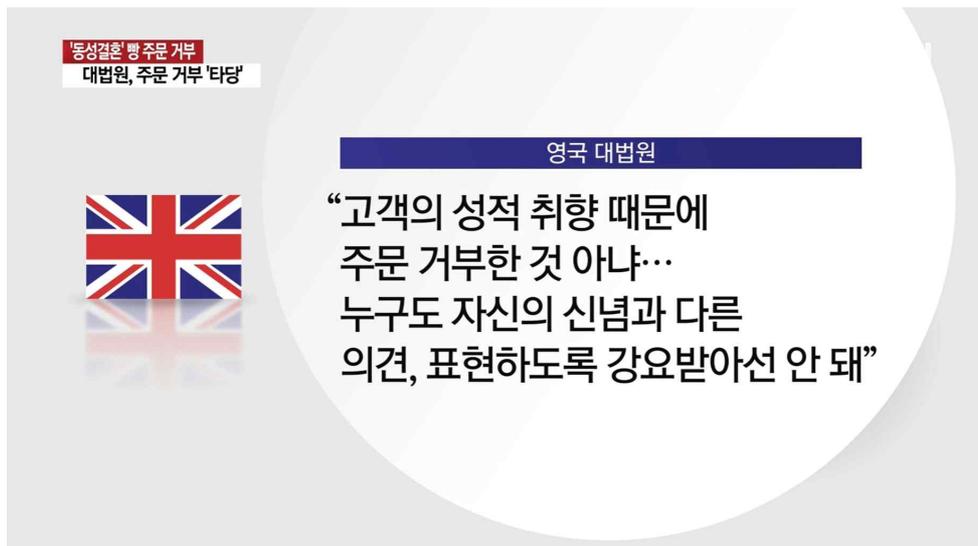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15년 1심에서 재판부는 아셀 베이커리가 리에게 500파운드(7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의 손을 들어주었다. 브렌더 헤일 대법원장은 “빵집 주인은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주문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 라면서 “다른 고객들이 주문하는 케이크 제작도 역시 그들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거절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고 했다. 대니얼 맥아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분은 지난 4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과 많은 기독교인 지지자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탱해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바위이시며 항상 공의로 우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판결로 인해 매우 기쁘고 안심 이 된다. 주문을 거절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일도 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후 대법원이 마침내 이를 인정해주었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 판사분들과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 덧붙였다.

#### ④ YTN <‘동성 결혼 지지’ 케이크 주문 거부...판결은?>(2018.10.13.)

[https://www.ytn.co.kr/\\_ln/0104\\_201810130551004756](https://www.ytn.co.kr/_ln/0104_201810130551004756)

영국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빵집, 애셔스 베이커리.



■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 거부 판결’ 보도한 YTN 보도 갈무리

지난 2014년, 동성에 인권운동가 개러스 리 씨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주문하자, 기독교인이었던 빵집 주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

유로 주문을 거부했습니다.

손님은 이 주문 거부가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항소법원은 손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빵집이 500파운드, 한화로 7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4년 만에,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빵집 주인이 고객의 성적 취향 때문에 제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니얼 맥아서 / 빵집 주인 : 저는 케이크가 가진 의미 때문에 이 주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리 씨는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개러스 리 / 주문 거부당한 손님 : 주문을 거부당했던 나는 내가 2등 시민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도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네요.]

앞서 지난 6월, 미국 대법원도 동성 커플 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에 대해 '동성 커플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소수자 옹호자들과 기독교 세력의 대립으로 비화하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던 이번 판결.

성소수자들의 신념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신념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⑤ 법률신문 <해외판례/美 대법원, '동성커플 결혼 케이크 사건'서 제과점주 승소 판결>(2019.6.2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3908>

레즈비언 커플 결혼케이크 주문 거절했다 거액 벌금... 미 대법원 “종교적 신념이 동성애자 권리보다 우위“

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동성 커플 차별 논쟁을 불러온 '레즈비언 커플 결혼 케이크 주문 사건'에서 원고인 클라인 부부(Aron and Melissa Klein)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원심인 오레건주 항소법원(Oregon Court of Appeals)에 되돌려 보냈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anti discrimination law)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재고를 권고하는 의견만 첨부했다.

미국 오레건 주 그레섬에서 '멜리사 스위트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한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레건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레건주 제6항소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 발생 6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게이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콜로라도 주 마스터스 피자점 주인 잭 필립스에 대해서도 승소판결 했었다. 현지 언론들은 보수성향 대법관의 증가가 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⑥ 국민일보 <“동성혼 주례 거부할 자유 침해하는 차금지법 반대”>(2020.9.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8243&code=23111111&cp=nv>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 의원이 “차별금지법으로 종교·표현·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목회자가 동성혼 주례를 거부할 자유까지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라면 반대한다” 고 했다.

- 지영준 변호사 발언 :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큰 차이가 없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구현하려는 가치는 국가인권위법을 통해 지난 20년간 실현돼 왔다”

- 김종민 의원 발언 : “목회자가 종교적·보건적·생물학적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해당된다”, “제빵업자가 동성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차별로 규정해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할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 유지가 안 된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5>

이 사건은 단순히 동성 결혼 커플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은 사례가 아니다. 게다가 2019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이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케이크 제작자 부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평연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⑤>(2020.7.28.)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7>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은 단순히 동성 결혼 커플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은 사례가 아니다. 게다가 2019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이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케이크 제작자 부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평연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와는 달리 미국 오리건주 고등법원은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 제작을 해주지 않은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Klein v. 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 410 P.3d 1051 (Or.App. 2017)]. 미국 오리건 주에서 '멜리사 스위트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동성결혼 축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 13만5000달러(한화 1억6000만원)를 부과했다.

미국 오리건주 고등법원 판결문 첫 페이지, 사진출처\_Klein v. 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 410 P.3d 1051 (Or.App. 2017)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공공편의시설로 인정되는 빵집에서 원고의 성적 지향에 의거하여 웨딩 케이크 제작 판매를 거부한 행위는 오리건주의 공공편의시설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O.R.S. § 659A.403).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그러한 위법행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원고가 실제 겪은 피해의 보상(actual

damages)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ORS 659A.850(4)(a)(B)), 주 법원은 피고의 케이크 판매 거절로 인한 위법행위(차별금지법 위반)로 인해 원고가 실제 겪은 피해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대해 원고 각각에게 \$75,000, \$60,000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고, 오리건 주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연방 대법원의 Masterpiece Cakeshop, Ltd.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사건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 오리건 주 항소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클라인 부부는 사건 발생 후 6년 만에 연방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오리건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동성결혼식 축하 화환 제작을 거부한 유사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이와 동일한 판결을 내렸지만, 워싱턴주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종래의 처벌 판결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케이크와 빵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제과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제과점이 동성커플에게 결혼식 축하 웨딩 케이크를 제작, 판매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사실관계는 뉴스앤조이의 팩트체크와 같다.

사실관계는 뉴스앤조이의 2020년 7월 16일 자의 기사가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과점 주인이 단순히 동성 결혼식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으로 배상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제과점 주인이 결혼식 주인공의 가족에게 동성결혼이 ‘가증한 일’이라는 성경 구절을 사용한 점, △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해당 동성 커플의 이름, 주소 등이 노출된 자료를 올린 점, △이후 제과점 주인이 여러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인터뷰 등을 하면서 해당 동성 커플의 신분 등이 노출된 점, △언론 노출 등으로 해당 커플

이 진행 중이던 입양과정에서 양육권을 뺏기는 등 차별이 빚어질 우려가 높았던 점, △일련의 위 과정에서 해당 커플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 ② 프레임 체크

- 빵집은 케이크 주문 거부만으로 제소당한 것이 아니다.

진평연, 크리스천투데이 등의 주장은 제과점업자가 단순히 케이크제작을 거부한 이유만으로 거액의 ‘벌금’이 선고된 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후 제과점업자가 자신의 동성커플의 가족에게 한 모욕적인 언행, SNS와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해 동성커플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차별금지법 없이도 충분히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 미국에서 동성애자에게 웨딩꽃 판매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가) 주장

#### ①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알렌 꽃가게 대 워싱턴주(Arlene's Flowers v. State of Washington) 사건(2013)에서 꽃가게 주인 배로넬(Barronelle Stutzman, 피고)은 지난 30여 년 동안 동성애자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동성애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오랜 고객이었던 한 동성애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사용할 꽃의 판매를 요구하였는데, 배로넬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해당 고객의 동성파트너가 이 사실을 SNS에 게재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워싱턴 주 검찰은 배로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고심에서 워싱턴 주 대법원은 정부가 워싱턴 주 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로넬이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2018년 6월에 워싱턴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연방대법원의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그

러나, 2019년 6월에 워싱턴주 대법원은 다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고있는 중이다. 참고로 워싱턴주는 2012년 11월 주민투표에서 54%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② 기독일보 <내가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은 이유>(2015.6.10.)

<https://han.gil/j7DX8>

나는 워싱턴주 리치몬드에서 3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많은 고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내 고객 중 한명이 롭 잉거솔(Rob Ingersoll)이다. 잉거솔은 자주 꽃 가게를 방문했고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나처럼 예술적인 눈을 갖고 있다. 나는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꽃을 제작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롭을 좋아하고 그의 특별한 날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다른 것이 있다.

창조적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재능을 어느 곳에 사용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은 내 가게에 오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꽃을 통해’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에 대한 것이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자랐다. 내 종교적 전통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스도 간의 신성한 종교적 행사이다. 그것은 교회와의 언약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 신앙의 핵심을 위반하는 것이다. 롭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과 이에 대해 말했다. 나는 기도했고 마침내 내 신앙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롭에게 이에 대해 말하면서 그와 이런 날을 맞게 된 것이 무척 힘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미안하지만 당신의 결혼식에 꽃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알겠다고 말했고 자신의 엄마가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입장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약혼을 하게 되었고 왜 결혼을 하기로 했는지 말했다. 그는 다른 꽃집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나는 잘하는 3곳을 소개시켜줬다. 우리는 서로 안아줬고 그는 떠났다.

나는 그 다음에 내게 일어난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언론을 통해 이 일을 듣고 나를 고소한 것이다. 충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롭과 그의 파트너가 (동성애자 권익보호단체인) ACLU 변호사들과 함께 바로 나를 고소한 것이다. 판사는 내게 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렸고 나는

이번주 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라는 단체의 도움으로 항소했다. 우리는 동성결혼이 결혼하기 원하는 동성커플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들어왔다. 하지만 판사는 결혼에 대한 내 신앙에 따라 살고 일하는 자유는 동성결혼이 이 주의 법이 되는 순간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인 수정헌법 1조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내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이다. 이것은 편견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는 동성애자 종업원들과 친구들이 있다. 립은 결혼에 대한 다른 신앙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단골 손님이자 친구였다. 나는 그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가 가게를 떠날 때 계속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 워싱턴주에서 립과 커트(그의 파트너)는 결혼증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주 정부가 나처럼 창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축하하도록 하기 위해 억지로 표현을 창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다.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한가지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부의 위협없이 어떤 이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벌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 내 사업이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은 돈이나 사업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립과 커트는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이 있고 그렇게 사는데 주정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나도 동일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바로넬 스투츠만(Barronelle Stutzman) / 알렌 꽃가게 주인

### ③ 전사연 블로그 <동성결혼식 꽃 장식 거부한 꽃가게 주인, 5년 공방 끝에 대법원 승리>(2019.9.17.)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hskr&logNo=221650987794&widgetTypeCall=true>

2013년 3월 동성결혼식에 쓰일 꽃 장식을 신앙적 이유로 거부했던 꽃가게 주인이 5년간 긴 법적다툼 끝에 대법원 승리를 얻어냈다.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신앙적 이유로 동성결혼 케익 제작을 거부했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꽃가게의 오랜 단골이었던 Rob Ingersoll은 게이였고 동성결혼 꽃장식을 주문했으나 주인이 신앙적 이유로 거절함에 대해 인정했었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이를 SNS에 올렸고 이것을 확인한 워싱턴 주 검찰은 동성결혼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

## Why a friend is suing me: the Arlene's Flowers story

Originally published November 9, 2015 at 4:23 pm | Updated November 12, 2015 at 4:11 pm



Barronelle Stutzman in Arlene's Flowers in 2013 (Bruce Ellefson)

### ■ 동성 결혼 꽃 주문 거부 사건 전한 외신 시애틀타임즈 기사 갈무리

많은 워싱턴 시민들이 부당한 소송을 겪고 있는 꽃집 주인 Barronelle Stutzman을 지지하며 응원했다. 동성애자는 그들의 삶을 살 자유가 있고 꽃집 주인은 신앙인으로서 같은 권리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다. 꽃집 주인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상충되는 메시지를 넣거나 그런 행사를 축하하는 맞춤형 예술 제작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워싱턴 주 검찰 총장은 결혼에 대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 승리한 Barronelle Stutzman 5년 간의 긴 공방은 끝이 났지만 결혼의 개념을 뒤바꾸려하는 자들은 또 다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이유로 공격해올지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자유가 무너지면 언제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승리는 대단히 환영하지만 편향적인 인권만 존중한채 LGBT를 옹호하는 워싱턴 주 검찰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LGBT를 편향적으로 옹호하는 지도자는 절대 세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④ THE DAILY SIGNAL <Supreme Court Tells State's Highest Court to Reconsider Case of Florist Who Declined Order for Gay Wedding>(2018.6.25.)

<https://han.gl/bR2Oe>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2019년, 워싱턴주 대법원은 꽃집 주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뒤 워싱턴주 대법원은 2019년 6월 6일 피고(배로널, 꽃집주인)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위의 기사연 블로그 등에서 5년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피고의 승리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https://www.seattletimes.com/seattle-news/politics/washington-supreme-court-rules-once-more-against-richland-florist-who-refused-flowers-for-gay-wedding/>

워싱턴주 대법원이 내린 2019년 판결은 대략 아래와 같다.

첫째, 꽃을 판매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결혼식에 꽃을 판매하는 행위는 표현이 아닌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무슬림 혹은 무신론자의 결혼식에 꽃을 제공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슬람, 혹은 무신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결혼식에 꽃을 제공 또는 거절하는 결정이 그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꽃을 판매하지 않은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피고는 다른 꽃집들이 기꺼이 해당 동성 커플에게 꽃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므로 해당 커플에게 실질적인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공 편의 법률들(public accommodation laws)에는 단순히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업 시장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커다란 사회적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 ② 프레임 체크

- 이 사건의 본질은 동성애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들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마치 피고의 승리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묘사한 것, 검찰이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기소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결혼에 대한 꽃집 주인의 신념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려 시도했다거나 LGBT를 편향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등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를 흐리고 반대진영

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위싱턴주 대법원의 지적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인 꽃집에서 동성결혼이라는 이유로 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지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것을 넘어 동성애자는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꽃집 이용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동성애자들이 받는 대우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모든 시민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이용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 3)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식 웨딩 촬영 거부를 차별이라 판결했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 “동성 결혼식 웨딩 사진 촬영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차별”

##### - 사실관계

2003년에 미국 뉴멕시코주의회는 공공편의시설(publicaccommodation)이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뉴멕시코인권법을 개정하였다. Elane Photography는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회사로 뉴멕시코인권법 상 공중시설에 해당하였다. 이 회사는 레즈비언 커플의 약혼식(commitment ceremony) 사진촬영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절하였다. Elane 회사의 주임 사진사이자 공동창업자인 Elane Huguenin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했고, 레즈비언 커플의 이메일 요청에 ‘전통적 결혼식만을 사진 촬영한다’고 답변했다.

피고가 재차 ‘동성 커플에게 대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자 ‘당신 말이 옳다’면서 ‘Elane 회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메일 답신을 보냈다. 이에 이 레즈비언 커플이 뉴멕시코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

다. Elane은 주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주항소법원에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Elane Photography 회사는 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 법원의 판결

뉴멕시코 주 대법원은 2003년 개정된 뉴멕시코 인권법은 차별 취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사람들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면서, 성적 지향을, 실제적이든 인식되든 상관없이,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로 정의한다고 전제하면서, 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애정을 느끼고 동성애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성행위를 지칭-을 경험하는 경향, 다시 말해 동성애로 인해 그 사람이 공중시설에서 차별받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인권법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성적체성, 혼인 여부(spousal affiliation),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였다.

Elane 측(상고인)은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맥락에서라면 이성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거절했을 것이며, 영화에서 동성결혼식 장면을 촬영할 때 동성결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성애자들인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동성애자라는 개인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아닌 동성 결혼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지향 차별의 맥락 속에서 개인의 지위와 행위에 대한 구별의 연기하는 배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행위에 근거해서 성적 지향에 대한 판단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성적 지향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행위에 근거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결국 일반 대중에게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도 뉴멕시코 인권법의 차별금지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성 간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 비판적 검토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호주에서도 뉴멕시코주 사례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호주에서는 2017년 12월에 국민투표로 동성혼이 합법화된 후, 호주의 최고 웨딩잡지인 화이트매거진에 왜 동성혼 기사가 실리지 않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 잡지사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에 대한 기사를 실지 않았는데, 동성결혼 찬성

론자들은 이 잡지를 공격했다. 잡지 제작진과 광고주, 심지어 잡지에 소개됐던 부부들마저 갖은 모욕에 시달렸다. 논란이 시작된 이후 무려 7곳의 광고주가 광고를 신지 않았다. 결국 잡지는 독자생존이 불가능해졌다. 화이트매거진은 12년간 발행을 이어왔지만, 결국 폐간됐다. 이 잡지의 공동창간자인 루크와 카를라 부루니는 법적 분쟁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잡지를 폐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②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2003년에 미국 뉴멕시코주 의회는 공공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뉴멕시코인권법을 개정하였다. Elane Photography는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뉴멕시코인권법 상 공중시설에 해당하였다. 이 회사는 레즈비언 커플의 약혼식(commitment ceremony)사진 서비스 제공 요청을 거절하였다.

Elane 회사의 주임 사진사이자 공동창업자인 Elane Huguenin은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했고, 레즈비언 커플의 이메일 요청에 ‘전통적 결혼식만을 사진 촬영한다’고 답변했다. 피고가 재차 ‘동성 커플에게 대한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자 ‘당신 말이 옳다’면서 ‘Elane 회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메일 답신을 보냈다. 이에 이 레즈비언 커플이 뉴멕시코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lane은 주법원에 제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주항소법원에의항소도 기각되었다. Elane Photography 회사는 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뉴멕시코 주 대법원은 2003년 개정된 뉴멕시코 인권법은 차별취급으로부터 보호되는 사람들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면서, 성적 지향을, 실제적이든 인식되든 상관없이,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애로 정의한다고 전제하면서, 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애정을 느끼고 동성애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성행위를 지칭-을 경험하는 경향, 다시 말해 동성애로 인해 그 사람이 공중시설에서 차별받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뉴멕시코주의 인권법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ublic accommodation)이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혼인 여부(spousal affiliation), 장애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일반 대중에게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도 뉴멕시코 인권법의 차별금지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성 간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뉴멕시코 인권법과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은 사실이다.

뉴멕시코 인권법은 공공 편의시설이 고객에게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 제공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뉴멕시코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 대중에게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동성결혼식을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프레임 체크

- 재화와 용역 영역은 차별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대중에게 사진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는 개인 간의 1대1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 영역이라는 공적인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홍성수 교수가 시사인에 기고한 <‘노란 옷 출입금지’와 ‘히잡 출입금지’의 차이>,(2020. 10. 2.)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보자.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의 음식점 출입을 거절한 사례와 히잡을 입은 사람의 음식점 출입을 거절한 사례. 학교에서 선풍기로 시험지를 날려서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높은 성적을 부여한 경우와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언뜻 보기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다 차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노란 옷을 입었다고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거나, 시험지가 덜 날아갔다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분명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심정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 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을 당했을 때 인격적 모멸감이나 수치심 또는 모욕·비하·멸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흔히 손님을 가려 받을 자유가 있고, 회사는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입학시킬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첫 손님으로 여성은 재수 없다며 문전 박대한다면? 성소수자라는 이

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만 입학을 허용한다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눈살이 찌푸려지고 거부감이 든다. 이 거부감의 실체를 파악한다면 차별의 부당함과 해악의 본질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라. 동성애 비판할 개인의 자유 억압했다는 사례 검증

### 1) 미국 보스톤에는 동성애 비판했다고 30년간 일한 병원에서 해고된 의사가 있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홈페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것인가?>(단행본)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지면 직업을 잃든지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 보스톤에 있는 병원의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들을 성경 구절 2개와 함께 병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원 위원회가 해고하였다. 해당 의사는 해당 병원에서 30년 일한 비뇨기과 의사이고 하버드 의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차별과 편견을 야기한다고 언급하며 해고했다. (출처: Lifesitenews.com 2015.9.14.)

#### ② 뉴스엔넷 <美의학교수, 동성애 위험 경고하다 병원서 쫓겨나>(2015.10.1.)

<http://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7>

미국 하버드 대학의 비뇨기과 교수가 동성애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여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쫓겨났다. 폴 처치(Paul Church) 박사는 하버드대학 비뇨기과 교수이며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30여 간 환자들을 돌봐왔다. 그는 또 멕시코와 아프리카지역에서 의료선교에도 참여했었다.

폴 박사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동성애 행사를 홍보해 온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다. 그는 이메일과 병원의 내부 포털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병원사회와 상충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견해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학대한다는

공격에 부딪혔다. 폴 박사는 병원내부 포털을 통해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보통 이뤄지는 행위는 건강에 해를 끼치며 HIV, 에이즈, 직장암, 간염, 정신적 장애 등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이어 “인간의 수명은 HIV/에이즈의 결과로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건강한 행위와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계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후 폴 박사는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아왔지만 성경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28절의 내용을 지적하며 대응했다.

결국 폴 박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결과가 병원집행위원회에 넘겨졌다. 위원회는 폴 박사가 동성애자들에게 공격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병원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폴 박사는 추방결정에 항소했지만 위원회는 당초 결정을 재확인했다. 폴 박사의 법률대표인 ‘리버티 카운셀(Liberty Counsel)’은 “이번 사건이 미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주식회사 미국은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보다는 크리스천들이 표현하는 세계관을 공격적이며 증오스러운 것이라고 몰아붙이며 종교적 믿음에 재갈을 물리는 명령을 서슴없이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③ CTS [성적지향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현실은?](2020.10.19.)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8&dpid=269698>



- ‘차별금지법의 악영향 보여준 미국의 사례’로 ‘의사 폴처치 해고’를 내세운 CTS

2015년에는 한 비뇨기과 의사가 30년 가까이 일한 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의사는 병원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사를 해고한 병원 위원회는 “해당 의사가 동성애의 위험성을 진술하는 것이 차별적 행동”이라고 해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5>

이 사건은 보스턴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BIDMC)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진평연이 써 놓은 것만 보면 단순히 글을 하나 써서 곧바로 해고된 것 같지만, 10년 넘게 논쟁이 지속된 사건이다. BIDMC는 1970년대부터 LGBT 기념행사를 열어 왔다. 병원은 매년 봄철 전 직원에게 행사 안내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폴 처치(Paul Church)는 이 행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2004년부터 병원이 안내 메일을 보낼 때마다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이사진에게 행사를 재고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동성애에 관해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 매년 항의 메일을 보내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병원은 처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갈등이 표면화한 것은 2011년. BIDMC가 LGBT 관련 영상 상영회를 계획한다는 메일을 보내자, 처치는 병원에 동성애의 의학적 문제점이 담긴 '반대 주장'(opposite side)도 틀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이런 행위가 성소수자를 모욕하는 행위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병원은 처치에게 사임을 권고했으나 그는 거부하고 '리버티카운셀'이라는 극우 성향 법률단체 지원을 받아 대응했다. BIDMC는 그를 내쫓지 않고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처치는 이를 함구령(gag order)으로 받아들였으나 일단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년 후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2013년 병원이 6월 LGBT 영상 상영 안내 공지를 돌리자, 처치는 "성적 도착(sexual perversion)을 기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고위험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행동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병원 구성원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거부감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다"는 글을 써서 돌렸다. 그래도 병원은 처치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2014년 행사 안내 공지가 돌아 처치는 한발 더 나아가 대표적 반동성애 구절인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28절을 써서 인트라넷에 올려 응수했다. BIDMC는 조사를 재개했다. 조사는 해를 넘겼고, BIDMC는 2015년 3월 처치를 병원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병원은 처치가 2011년 징계를 받았는데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사내 전자 시스템에 반동성애 의사를 표현했다는 징계 이

유를 고지했다.

결과적으로 BIDMC와 처치의 오래된 논쟁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직접적 상관이 없다. 법안 취지는 고용 관계에서 사업주가 성별·인종·정체성 등을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저지를 경우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처치의 사례는 병원 정책을 무시하고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징계 절차를 밟아 내보낸 일이다.

한국에서 발의되는 차별금지법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④>(2020.7.26.)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6>

뉴스앤조이는 “결과적으로 BIDMC와 처치의 오래된 논쟁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직접적 상관이 없다. 법안 취지는 고용 관계에서 사업주가 성별·인종·정체성 등을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해고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저지를 경우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처치의 사례는 병원 정책을 무시하고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징계 절차를 밟아 내보낸 일이다. 한국에서 발의되는 차별금지법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반동성에 표현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당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직접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차별금지법은 제109조에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 조항이 있다. 즉, 피고용자(근로자)의 차별금지법 위반 차별 행위는 고용주의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 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차별행위는 본인의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고용주나 본인이 그러한 차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혹은 승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차별 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러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차별금지법 위반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직장 내 반동성에 표현으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당한 크리스천의 사례는 바로 영국 차별금지법의 사용자 책임 조항 때문에 고용주가 차별금지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징계 조치를 취한 예에 해당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 제51조 제1항은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 우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조항인 민법 제756조를 준용하고 있다. 영국 차별금지법에 사용자 책임 조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동일하게 사용자 책임이 들어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는 항변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안 제12조(근로조건)는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 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소위 혐오표현)이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반동성에 표현이나 의견 제시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안 제55조의 불이익 조치를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한 경우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안 제57조)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인과 종업원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로 제39조에서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Fox news의 보도에서 신상이 매우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이 사건은 교회 블로그, 미국 내 시민단체들의 기관지 및 종교 매체에 실리다가 Fox news에 실리면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보도에서 이 사람의 신상은 매우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그와 인터뷰를 했다는 최초 보도 자체가 반동성에 인터넷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그 외의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소식은 주류 매체에서는 전혀 보도된 바가 없고, 오직 Fox news만이 몇몇 극우 블로그 및 기독교계 사이트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의 보도를 한 차례 했을 뿐이다. 직접 해당 병원 등에 확인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건 자체가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람에 관해 상당히 많은 보도와 글이 생산되었으나, 대부분이 최초에 블로그 등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관계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다.

**- 폴 처치 의사가 ‘하버드 의대 교수’ 일 가능성은 없다.**

폴 처치라는 의사의 신상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실관계 역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최소한 하버드 의대 홈페이지에서 현재 혹은 과거의 교수진으로 폴 처치 박사는 검색되지 않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최근 20년 안에 논문을 쓴 기록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하버드 대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기독교계 블로그에서 초반 보도는 ‘하버드 의대와 연계된 병원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ttps://www.thecollegefix.com/harvard-affiliated-hospital-expels-doctor-who-is-blunt-about-risks-of-gay-sex/>

이는 그가 근무한 병원이 하버드 의대생들의 수련 병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Harvard Pilgrim HMO, PPO’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arvard Pilgrim HMO, PPO’ 프로그램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일종의 의료복지 서비스로, 각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해당 의사가 과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점 역시 오해를 낳았을 것으로 보인다.

**- 폴 처치 의사가 30년간 BIDMC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낮다.**

폴 처치 박사는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연 개인 개업 의사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폴 처치 박사는 최소한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이하 BIDMC) 병원에 전속된 의사가 아니고 개업의로서 병원들과의 제휴 관계에 있다가 제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처치 박사의 개인 사무실이 ‘affiliated’, 즉 제휴된 병원 3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이하 BIDMC)도 그중 하나이다. 이러한 개업의사와 대형 병원의 ‘제휴’란 직접 소속되어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환자의 진료 의뢰 등에 관한 협력을 의미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처치 박사가 지난 28년간 매사추세츠 주의 대형병원 3개 및 본인의 개인 병원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처치 박사에 대한 제휴 계약 종료를 결정한 곳은 BIDMC의 의사들로 이루어진 ‘동료 의사 심사 위원회’ (Peer Review Committee)였다. 이는 병원 경영진

의 일반적인 ‘해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었다. 처치 박사는 병원 의료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이의신청했으나, 두 차례 진행된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요청한 것은 처치 박사였으며, 병원 경영진은 의사들의 자치적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사용자로서 처치 박사의 해고를 결정한 적이 없다.

진평연 홈페이지 내용에서 ‘집행위원회의 조사’ 부분은 ‘동료 의사 심사 위원회’의 조사 이후 ‘의료경영위원회’에 의한 재심의 절차를 비틀어서 마치 경영진에 의한 자체 조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도한 것이다. ‘추방하기로 결정’ 했다는 부분 역시, 처치 교수가 BIDMC의 전속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Fox news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치 교수는 여전히 다른 두 개의 병원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삼십 년간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당하여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은 아니다.

#### - 징계 사유는 ‘혐오표현’이 아니다.

Fox의 보도에서 밝힌 그의 징계 사유마저 ‘혐오표현’이 아니다. 그는 병원 내 자치규약인 ‘의사소통 규칙 위반’ 및 동료들에 대한 학대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징계 되었다. 위 병원 동료 심사 위원회는 처치 교수의 표현이 자치규칙에 위반했으며, 그러한 표현을 통해 주변 동료들을 괴롭히고 학대해 왔다고 판단하여 2011년에는 견책을 결정하였다. 병원 동료 의사들은 10년에 걸쳐 여러 차례 혐오표현을 멈춰줄 것을 명령해 왔으나 소용이 없었고, 자치조직인 ‘동료 의사 심사 위원회’에서 이러한 반복된 규칙 위반 행위를 ‘전문가의 자질 부족’으로 판단하고, 병원과 처치 박사와의 협력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② 프레임 체크

### - 해당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거나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매사추세츠주는 물론, 미국에는 차별적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본 사건은 해당 병원의 의사들이 자치적인 결정으로 처치 박사와의 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일 뿐, 표현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당연히 매사추세츠주 또는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거나 그 적용이 검토된 적이 없으며, 의사들의 자치적인 결정에 이러한 법률이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특정 병원과 계약

관계를 가진 의사가 동료들을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을 뿐, 이 과정에 어떠한 공권력도 개입하지 않았다.

**- 사용자 책임 규정 전면 도입되는 것처럼 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애초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도 아니었던 사안의 사실관계를 비틀어 ‘억울하게 해고당한 의사’ 이야기로 바꾸어버렸다. 여기에는 ‘사용자 책임’ 규정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확대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용자 책임 규정이 생긴다면, 차별행위를 한 노동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 법안과 평등법 시안 모두, 차별행위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된다. 금지되는 차별행위 자체가 고용, 재화 등의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차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단순한 ‘차별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처치 박사의 행위는 단순한 직장 내 동료 의사들에 대한 괴롭힘 사례로,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에서 남에게 괴롭힘을 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설사 노동자의 특정 행위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징계함으로써 면책을 주장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매우 넓게 인정되며, 노동자에 대하여 사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은 사용자 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장혜영 의원 법안 제12조는 차별 없이 공정한 징계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소위 혐오표현)이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와 같은 해석은 문언상 불가능하다. “양벌규정(안 제57조)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용인과 종업원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는 해석도 문언의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제57조의 양벌규정은, 해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이익조치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처벌받게 되고, 이때 소속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장혜영 의원 법안은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 등의 차별 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

에 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다.

## 2)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동성 결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방송에서 해고된 스포츠 방송 해설자가 있다?

### 가) 주장

#### ① 크리스천투데이 <아무리 일 잘해도 동성애 반대하면 직장서 해고?>(2013.9.26.)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67100>

프로 풋볼 선수였으며 상원의원에도 출마했던 크레이그 제임스 씨가, 동성결혼에 대한 과거 발언으로 인해 폭스 스포츠 채널 해설자에서 해고됐다. 그는 2012년 텍사스 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던 중 한 토론회에 나섰고, 그 자리에서 “동성 간 시민결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텍사스는 주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며, 시민결합(civil union)이나 동거(domestic partnership)하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금지한다. 제임스 씨 해고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폭스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보수적 인물을 해고했다는 점이다. 폭스가 주요 채널에서 동성결혼에 공공연한 반대해온 언론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적 이데올로기 성향이 적으며 시청률에 좌지우지되는 스포츠 채널에서는, 폭스 역시 반동성애를 매우 깔끄러운 요소로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두번째는 해고 사유가 그의 스포츠 방송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적 신념 때문이란 점이다. 제임스 씨는 “나는 24년간 스포츠 해설 방송을 하면서 개인적 배경과 신념에 관계없이 동료들의 존경을 받아 왔다. 방송 일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서로 다른 신념을 관용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방송에서 나의 신앙에 관해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직업적 전문성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신앙과 신념이 반동성애적이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다. 지난 8월 폭스 스포츠가 제임스 씨의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 사며 그를 고용했던 사실과 비교해 보면 더욱 놀랄 일이다. 미국의 유명 기독교대학 중 하나인 남감리회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의 스타 선수이며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에서 프로로 뛰던 그

는 CBS, ABC, ESPN 등에서도 해설위원을 맡은 바 있다.

세번째는 그가 과거에 한 발언들이 회자되며 그를 공격하는 데에 의도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도 오바마 대통령 제2기 취임식에서 축도를 맡았으나, 십수 년 전의 반동성애 설교가 이슈가 되어 사퇴한 적이 있었다. 제임스 씨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가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미국에는 현재 경제난이란 문제가 있지만 도덕적 문제도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한다” 고도 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ESPN의 스포츠 진행자 크리스 브루사드가 “동성애는 죄” 라고 발언했다가 ESPN이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ESPN은 브루사드를 해고하지는 않았다.

## ② CTS <성적지향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현실은?>(2020.10.19.)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8&dpid=269698>

프로 풋볼 선수 출신으로 상원의원에도 출마했던 크레이그 제임스 씨. 2012년 폭스 스포츠 채널 해설자에서 해고됐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 ‘차별금지법의 악영향 보여준 미국의 사례’ 로 ‘스포츠 해설가 해고’ 를 내세운 CTS

## ③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방송에서 동성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스포츠 방송 해설자에서 해고(2013.9.)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②/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 섞어 공포심 조장>(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5>

이 뉴스 자체는 사실이다. 미국 남감리대학교(SMU) 출신 유명 풋볼선수 크레이그 제임스가 동성 결혼 반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스스포츠 해설에서 해고됐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제임스가 2012년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벌어졌다. 그는 “그들(동성애자들)의 행동에 대해 주님에게 대답해야 한다“,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시민 결합(civil union)에 대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동성애 및 동성 결혼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폭스스포츠는 크레이그 제임스를 2013년 8월 30일 고용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자 딱 한 번 방송에 출연시킨 후 9월 2일 곧바로 해고했다. 보수 성향 매체로 알려진 폭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미국 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제임스는 폭스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차별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폭스스포츠 관계자는 “종교 문제와 관련 없으며 제임스를 어떤 문제로도 차별하지 않았다. 단지 방송을 개인 의견을 펼치는 곳으로 악용했다는 인식에 근거해 해고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쌍방 합의 및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끝났다.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휴스턴크로니클>은 “문제가 잘 해결되어 만족한다“는 제임스 측 변호사 인터뷰를 보도했다. 폭스스포츠는 코멘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지만, 역시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다. 폭스 스포츠가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제임스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④>(2020.7.26.)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86>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지만, 역시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이 없다. 폭스스포츠가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제임스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방송사가 반동성애 내용을 방송에서 말한 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9조(방송

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24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도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안 제51조 제1항과 제5항에서 근로자의 차별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등을 방송에 내보내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방송사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위 1번에서 본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을 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가 반동성애 내용을 방송한 직원을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있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크레이그 제임스가 ‘해고’ 되었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다.

크레이그 제임스는 본인이 폭스 스포츠의 노동자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3년 8월 29일, 폭스 스포츠는 제임스와의 계약을 발표했다, 8월 30일에 제임스는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9월 1일, 폭스 스포츠는 제임스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점까지 크레이그 제임스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크레이그 제임스와 폭스 스포츠 사이에 있었던 계약을 ‘고용’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9월 1일 시점에서 그러한 계약이 성립해 있었던 것인지 자체가 소송에서 다툼이 되었다.

결국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되어 법원의 판단은 없었지만, 폭스스포츠측의 주장에 따르면 크레이그 제임스는 폭스 스포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들은 ‘지방 사무소에서 계약이 진행되었고, 폭스스포츠 본사는 해당 계약에 관하여 검토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계약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크레이그 제임스의 고용은 물론 출연 계약마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을 입수하기는 어

렵지만, 크레이그 제임스의 방송 출연 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계약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하다. 따라서 크레이그 제임스가 ‘해고’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

- 평등법의 ‘방송 통신 서비스의 비차별’은 방송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코람데오닷컴은 차별금지법안상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비차별을 마치 방송 내용 검열 조항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문언 그대로 “방송 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뿐이다. 이 내용은 특정 시청자에게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장애인으로서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방송 서비스의 내용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재 모든 차별금지법안은 고용,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일반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고용, 재화 등의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본 법안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당연히 고용주의 책임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방송사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 동성애의 보편적 유효성에 대한 사실,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등을 방송에 내보내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방송사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은 터무니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하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을 한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내용 역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은 사용자 책임면제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사실 왜곡일 뿐이다.

## ② 프레임 체크

- 크레이그 제임스는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해고된 것이 아니다.

크레이크 제임스는 이와 반대로 폭스스포츠가 종교를 이유로 차별당했다고 ‘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오히려 기독교계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표현, 신념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기본적으로 ‘강자의 약자에 대한 행위’를 규율 영역으로 하고 있다. “고용,

재화 등의 공급자”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법률안이므로, 여기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해고된다거나 개인이 공적인 불이익을 얻을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연 크레이그제임스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할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법 덕분에 크레이그 제임스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말하고도 고용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 마. 기타 표현의 자유 불이익 사례 검증

### 1) 영국에서 반동성애 광고 게재를 불허한 판결을 정당화했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영국 법원, “반동성애 버스 광고 불허는 정당”

2012년에 동성애자 권리 지지 운동을 하는 Stonewall 이라는 단체가 영국 런던 시내 버스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이다. 인정하라!” (“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Anglican Mainstream이라는 단체는 2012년 4월에 “나는 동성애자 아니고, 예전에 동성애자이었다. 탈동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극복해라!” (“NOT GAY! EX-GAY, POST-GAY AND PROUD. GET OVER IT!”)라는 광고를 런던 시내버스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많은 항의를 받은 후에 런던 운송 회사는 광고를 중단하였다.

Core Issues Trust는 런던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항소 법원은 런던 운송 회사의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이거나 인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역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② 크리스천투데이 <동성애 대중교통 광고, 영국 ‘허용’-한국 ‘반려’ >(2012.4.17.)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55145>



■ 해당 사례의 실제 버스 광고 사진

동성애 광고’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동성애 단체가 런던 명물인 2층버스 측면에 ‘동성애 치료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하려다 무산됐는데, 동성애 단체는 1천여대의 버스에 동성애 지지 광고를 허가받아 말썽이 일고 있다.

동성애 단체 스톤월(Stonewall)은 지난 1일부터 버스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요.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여요(Some people are gay. Get over it!)’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에 기독교 단체 ‘코어 이슈스 트러스트(Core Issues Trust)는 ‘아니에요! 과거엔 그랬지만 치료했고, 이제는 아니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치료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요(Not Gay! Ex-Gay, Post-Gay and Proud. Get over it!)’이라고 응수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13일 런던시 교통국이 자신들의 광고를 불허한 것은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코어 이슈스 공동주임인 마이크 데이비드슨은 “우리 광고는 교통국의 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했고, 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버스 회사도 광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도 광고가 결국 취소됐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런던시 교통국 대변인은 이 광고가 “런던의 기풍인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며 “런던 도로에서는 이 광고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도 “동성애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주장은 분명 모독적이고, 나는 이 주장이 런던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사실관계가 전반적으로 부정확하다.

소송의 원고는 이 광고를 한 단체인 Core Issues Trust이고, Anglican Mainstream은 이 광고를 지원한 단체였다. 또한 소송의 피고는 운송회사가 아니라 ‘Transport for London’, 즉 런던 교통국이었다. 원고는 당시 선거를 의식한 런던 시장이 교통국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며 광고 불허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광고 불허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이 광고 불허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런던 교통국 규정에 따랐다. 해당 규정은 ‘대중의 논쟁거리 혹은 감수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이 위헌 혹은 위법인지를 판단하기는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런던 시장의 권한 남용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런던 교통국의 결정 절차는 이례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결정이 위법하거나 런던 교통국의 규정이 위법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광고 게재 불허 행위 역시 Core Issue Trust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② 프레임 체크

- 원고인 Core Issues Trust가 차별금지법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들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사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사안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Core Issues Trust가 본인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인 런던 교통국은 내부 규정 등을 들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이 사안만을 본다면, ‘동성에 반대’ 세력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 차별금지법은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안은 이미 런던 교통국에서 광고 게재를 불허한 이후에 이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광고 게재 불허와 런던 교통국의 승소 모두 차별 금지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내부 규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뿐이다.

## 2. 교육 및 양육 관련

### 가. 공교육 관련 해외사례 검증

#### 1) 영국에서 3세 아동에게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은 학교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

##### 가) 주장

##### ①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블로그 <3세 아이에게 동성애 안 가르쳐서 학교 폐쇄 위기>(2018.6.25.)

<https://m.blog.naver.com/pshskr/221306479733>

영국이 3세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에 관해 가르치지 않았다고 폐쇄하겠다고 협박하다! LONDON, England, June 28, 2017 (LifeSiteNews)

2017년 6월 28일, 영국, 런던 정부 조사에서 한 그리스 정교회 유대인 초등학교가 3세 아이들에게 “성 전환” 과 “성적 지향” 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비쉬니츠 여학교(Vishnitz Girls School)은 3세에서 11세까지의 212명의 여자 아이들을 가르친다. 2010년 5월 10일에 예고 없이 실시된 정부 조사에서 이 학교가 2010년 “평등법안“(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보고서는 어린이들에게 “성전환(트랜스젠더)“과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어린이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달에 해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의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같이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차이에 대해 배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지도자들과 경영주들은 2010 평등법에 명시된 대로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들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인식하지만, 보호되어야 하는 모든 특성들, 특히 성 전환과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학생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쉬니츠 여학교의 사명은, “모든 학생들이 생산적이고 활

를한 시민이 되도록 토라(유대인의 율법)의 원칙에 굳건히 기초를 두고 종교와 관계없는 튼튼한 교과과정이 결합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는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국가가 학교의 종교적 정신과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LGBT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아주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곳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한 사립 유대인학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대되고 파괴적인 세계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 규정자는 종교적 또는 학부모의 자유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검사 결과에서 학교가 식수대 표시, 수업 계획 및 위험 평가와 관련된 독립 학교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7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증진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했다.

“[5월] 방문 기간 동안 지도자들은 성적 지향과 같은 쟁점에 관해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불평했다. “이는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제한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기회 균등을 촉진하지 않는다.“

“슬프게도,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경향의 일부이다. 크리스천 컨선에서 매우 비슷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을 돕고 있으며, 크리스천 법률 센터를 통해 매주 비슷한 충동을 겪는 개개인을 돕고 있다.“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우리는 이 공격적인 의제에 맞서 싸우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영국 언론과 게이스타뉴스(Gay Star News)는 비취니츠 여학교는 바뀌지 않으면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② 뉴스앤넷 <美 의학교수, 동성애 위험 경고하다 병원서 쫓겨나>(2015.10.1.)

<http://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7>

미국 하버드 대학의 비교기과 교수가 동성애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여 근무하던 병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

달)(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3>

이 사건 역시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아서“ 폐쇄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다. 영국 교육부가 권고하는 성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다. 비시니츠여학교(Vishnitz Girls School)는 정통 유대주의 학교로, 3살부터 11살까지 아이들 200여 명을 가르친다. 학교는 이전에도 다른 문제와 관련해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2017년에는 아이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해 전혀 교육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 당국은 학교의 이런 방침이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성적 지향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했다. 이것과 함께 학교가 지적받은 다른 사안들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학교는 교육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학교 감사 기관 OFSTED는 2019년 비시니츠여학교가 모든 면에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진평연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3세 아이'에게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쳐야' 할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수 조항이 없다.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이는 영국 교육부가 언급한 것처럼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성적 지향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지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⑩>(2020.8.9.)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5>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3세 아이'에게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쳐야' 할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수 조항이 없다.” 고 보도하였다.

이 역시 차별금지법안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 쪽의 입을 막아 버리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법이고 역차별법이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32조는 반동성애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호를 해 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하고, 교육부가 정책으로 그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차별이 아

니며,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Devout Christian mother sues her son's school for forcing him to take part in a Gay Pride parade then barring parents who complained from school grounds

- Izzy Montague's son was forced to take part in his schools Gay Pride parade
- When parents complained they were barred from school grounds
- Mrs Montague will now sue Heaver's Farm Primary School in South East London

Devout Christian mother sues her son's school for forcing him to take part in a Gay Pride parade then barring parents who complained from school grounds, Mail Online, 2019년 3월 24일 출처 <https://www.dailymail.co.uk>

### ■ 코람데오닷컴이 인용한 외신 데일리메일 기사 갈무리

더욱이 차별금지법안은 제9조와 제4조에 의해 교육 관련 법령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도록 제, 개정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발의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이 포함된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러한 법 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영국 평등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평등법 전면개정으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할 것을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를 하였는데, 영국 정부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2010년에 영국 평등법이 전면개정이 된 후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적극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 학교의 성교육 등 제공 의무

2019년에 영국 교육부는 ‘관계와 성교육, 건강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 and Health Education] 지침’ (이하 “교육지침”)을 발표하

1) 영국 교육부, (2019), 관계 교육: 관계와 성교육, 그리고 건강 교육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08013/Relationships\\_Education\\_-\\_Relationships\\_and\\_Sex\\_Education\\_-\\_RSE\\_-\\_and\\_Health\\_Education.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08013/Relationships_Education_-_Relationships_and_Sex_Education_-_RSE_-_and_Health_Education.pdf)

였는데, 2020년 9월부터 해당 교육지침에 따른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는 법적으로 즉시 이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적절한 준비를 마친 후 2021년 여름학기부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교육지침(statutory guidance)은 (statutory guidance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내부 행정지침에 불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법적지침’으로 번역이 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지침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지침의 상위법은 2002 Education Act<sup>2)</sup>, 2016 Education Act<sup>3)</sup>인데 여기에서 학교 폐쇄 조항은 찾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영국 법령들을 전부 리서치한 것은 아니어서 관련 법령에 폐쇄조치 관련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폐쇄 대신에 ‘아카데미 명령 철회’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영국의 ‘아카데미 명령’이라는 특수한 제도와 연관된 것이어서 폐쇄 조치와는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참고로, 영국의 위 교육지침은 제45조 이하에서 부모가 이 교육지침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신의 자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즉, ‘성적 지향’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 - 교육지침의 내용

2019년 6월 발표된 위 교육지침에는 교육과정별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이 명시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관계’에 대해 정의하는 교육,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관계’의 정의와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지침[16]).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예시를 제공하며 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교육지침 [24]).

교육지침은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초등과정에서는 가족의 정의, 친구 관계, 관계 형성의 중요성 등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배우고, 중등과정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한 가족관계, 친구 관계를 포함한 관계에서 상호 존중, 관계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한 성관계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교육지침의 ‘초등과정이 끝날 때까지 배우는 내용(By the end of primary school)’, ‘중등과정이 끝날 때까지 배우는 내용(By the end of secondary

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2/32/contents/enacted>

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6/6/contents/enacted/data.htm>

school)’ 참고).

#### - 교육지침과 평등법

한편, 이 교육지침은 교육을 제공할 때, 학교가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부합하는 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교는 학생을 그들의 나이,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또는 믿음, 성적 지향, 임신 및 육아 여부, 결혼 또는 사실혼 여부 등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 되며, 교육 제공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는 또한 교육 제공 시 성차별, 여성 혐오, 호모포비아, 성적 고정관념 등의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교육지침 [27]~[32]).

#### - 교육지침과 종교적 가치

교육지침에는 ‘종교적 성격을 가진 학교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종교와 믿음(Religion and Belief, including teaching in schools with a religious character)’ 파트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파트는 “관계와 관련된 교육을 계획 및 제공할 때, 모든 학생의 종교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하여 본 교육지침의 주요 내용이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학교는 영국의 평등법이 보호하는 요소 중 하나가 ‘종교와 믿음(신앙)’ 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평등법에 부합하는 교육안을 구성하여야 한다(교육지침 [20]).

또한, 교육 내용에는 평등법에서 허용 또는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교육지침 [22]).

#### - 이 사건의 경우

건사연 블로그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7년 6월에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위 교육지침 발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에는 교육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위 교육지침이 적용되므로, 교육지침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건사연 블로그의 기사 제목은 <3세 아이에게 동성애 안 가르쳐서 학교 폐쇄 위기>인데, 위 팩트체크 내용상, 관계와 성교육, 그리고 건강 교육을 할 의무가 학교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종교 또한 참작되어야 하므로,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성애 교육 여부’ 만으로 학교를 즉시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위 교육지침 자체에는 학교 폐쇄조치를 언급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건사연 블로그에서 나타난 주장의 요지는 “3세 여아에게 성적지향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학생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학교는 폐쇄에 직면하였다” 라는 것이다<sup>4)</sup>. 폐쇄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뒤에 나오는, <로스쿨 인허가 사건>의 경우 동성애자의 입학이나 학업을 금하는 학칙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지향으로서 인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종교적 양심에 반한 의견을 말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될 수 있음으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고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과 평등의 문제이지 종교적 자유의 문제는 아니지만<sup>5)</sup>,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는 특정 종교인에게 ‘동성애를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적 지향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 가르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의견을 말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종교적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속 기사<sup>6)</sup>를 다시 찾아보니, OFSTED(영국 학교 감시기관)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비슈니츠 여학교가 “(평등법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성적

---

4) <https://culturewarresource.com/london-orthodox-jewish-girls-school-faces-closure-refusing-teach-children-homosexuality/>

5) 판결문 다수의견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The LSBC’s decision also reasonably balanced the severity of the interference against the benefits to its statutory objectives. The LSBC’s decision did not limit religious freedom to a significant extent because a mandatory covenant is not absolutely required to study law in a Christian environment in which people follow certain religious rules of conduct, and studying law in an environment infused with the community’s religious beliefs is preferred, not necessary, for their spiritual growth.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17140/index.do>

6) <https://www.thejc.com/education/education-news/ofsted-error-over-teaching-about-sexual-orientation-at-orthodox-girls-school-1.482262>

Ofsted explained the report was amended shortly after publication because it had incorrectly stated the school did not meet the independent school standards for teaching British values.

The inspection service said this week: “The standards do not expect schools to teach pupils in detail about different lifestyles, gender reassignment or sexual orientation.

“Only that they encourage respect for other people, paying particular regard to the protected characteristics set out in the Equalities Act. The report also now clearly states this.”

지향과 같은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 라는 점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였으나, 이후 수정된 보고서를 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성별 재배정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해 자세히 가르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평등법에 명시된 보호 대상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장려 할 뿐이다. 보고서는 이 점을 명시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국 학교 감시기관’의 수정된 보고서에 따르면 평등법에 따르더라도 학교(특히, 종교학교)가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의무(특히, 종교적 양심에 반하여 신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르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성적지향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성적지향의 현실 즉,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도 존재하고 이러한 성적지향을 가진 자 즉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종교학교의 신앙을 더불어 가르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영국의 교육지침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경우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은 허용” 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및 성적 지향, 종교를 포함한 보호 요소(protected characteristics)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장혜영 의원(안) 제32조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제1호),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3호)를 금지하고 있다. 즉, 교육 제공 시 동성애 뿐 아니라 제3조의 금지대상 모두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코람데오닷컴과 같이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32조는 반동성애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호를 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 영국의 교육지침을 참고해 볼 만 하다.

반대론자들은 ‘반동성애 교육 금지’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평등법의 입장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동성애를 부도덕하다거나 질병 혹은 장애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코람데오닷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성애는 인간의 다양한 성

적지향 중 하나로서 옹호나 조장의 대상이 아니고, 혐오나 증오의 대상 또한 아니다. 영국의 교육지침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일 뿐이다.

## ② 프레임 체크

영국 교육부가 학교에서 성적지향(특히, 동성애 및 동성애자의 현존)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는 것과 성적지향이 특정 종교의 교리 혹은 신념 상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도 반대진영에서 위 사건을 사례로 인용하면서 마치, “3세의 아동에게까지 강제로 동성애가 정당한 것처럼 가르치라고 강요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왜곡이라 할 것이다.

## 2) 미국에서는 학교의 낙태·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거부 못한다?

### 가) 주장

#### ①선데이저널 <논란/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지침서 논란>(2019.5.23.)

<https://sundayjournalusa.com/2019/05/23/%eb%85%bc%eb%9e%80-%ec%ba%98%eb%a6%ac%ed%8f%ac%eb%8b%88%ec%95%84-%ea%b3%b5%eb%a6%bd%ed%95%99%ea%b5%90-%ec%84%b1%ea%b5%90%ec%9c%a1-%ec%a7%80%ec%b9%a8%ec%84%9c-%eb%85%bc%eb%9e%80/>

#### 선데이저널 <충격리포트2/가주성교육 지침서는 포르노 수준>(2019.6.6.)

<https://sundayjournalusa.com/2019/06/06/%ec%b6%a9%ea%b2%a9%eb%a6%ac%ed%8f%ac%ed%8a%b82-%ea%b0%80%ec%a3%bc-%ec%84%b1%ea%b5%90%ec%9c%a1-%ec%a7%80%ec%b9%a8%ec%84%9c%eb%8a%94-%ed%8f%ac%eb%a5%b4%eb%85%b8-%ec%88%98%ec%a4%80/>

캘리포니아 주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 청소년보건교육법 표준에 근거로 공립학교에서의 K-12 교사들에게 선택적 교육과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건 교육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이른바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 지침’이다. 주정부측은 ‘어디까지나 선택과목’이고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장담하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 ② 비슷한 해외사례 인용

- 기독일보 <교사도 충격 받은 캘리포니아주 새 성교육 지침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2019.5.30.)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3758>

논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성교육 지침서에 대해 대학의 사교클럽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은 수준이며 의학적으로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 공립학교 교사가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기독교언론 크리스천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들이 이 지침서에 대한 반대 운동에 나서도록 돕고 있다.



■기독일보 보도 갈무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학교 정상화를 위해 싸우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신앙 지도자, 시민들의 연대인 '포 키즈 앤 컨트리(For Kids & Country)'의 설립자인 레베카 프리드리히(Rebecca Friedrichs) 대표는 이 지침서에 대해 “충격적”이라면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학교들에서 남학생들 앞에서 콘돔 릴레이 경주에 참여해온 10세와 11세 여학생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 여학생들은 이 경주를 통해서 발기한 성인 모델의 남성 생식기에 콘돔을 끼워주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어머니들의 전화를 받고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콘돔 릴레이 경주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녀는 “이 경우, 북캘리포니아주의 한 교육위원회는 새 지침서가 법이 되기 전에 이미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프리드리히는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

작했다. 일부 교사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성교육에 대해 놀랐는데, 성교육의 일환으로 맡기한 성인 모델 남성의 생식기에 정확하게 콘돔을 끼우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대표는 “교사들이 나에게 이 교육을 하지 않기 위해 월차를 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교육을 거부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사 자격이 없다면 해고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까지 만들어지면, 교사들은 교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을 거부할 수도 없다.

그녀는 또 11세의 어린 학생들이 구강 및 항문 성교를 파트너와 실험해보는 등의 위험한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여러 수준에서 의학적으로 위험하다”면서 “지침서를 읽어보면, 대학교 사교클럽에서 이 지침서를 무신경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쓴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침서가 논란 덩어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침서에는 미국 최대 낙태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의 위치와 그곳을 찾아가는 방법 등도 가르쳐주고 있다. 그녀는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남녀 공학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이 라디오에서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중략)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와 같은 단체들과 많은 부모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새롭게 승인된 도서들의 내용이다.

‘S.E.X.: The All-You-Need-to-Know Sexuality Guide to Get You Through Your Teens and Twenties’이라는 제목의 책은, 항문 성교, 결박 성교(밧줄, 쇠사슬 등으로 신체를 결박해서 하는 성교), 이외의 다양한 에로틱한 행동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논란이 되자 다른 몇몇 책들과 함께 지침서의 리스트에서는 제거됐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의 펠리자 오르티즈-리콘(Feliza I. Ortiz-Licon)은 AP 통신에 “우리가 이 책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이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새 지침서는 또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주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까지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에 가르친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 자녀들이 그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프리드리히 대표는 “트랜스젠

더 문제를 수업에서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교사 노조와 그 배후의 단체들 때문 “이라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 왕따를 조장한다고 딱지 붙인다“고 지적했다. 성 소수자(LGBT)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왕따 방지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 그래서 학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는 수업을 안 듣게 하겠다면서 그 교육을 신청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3>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 이슈는 지역 내 한인 개신교인들과도 연결돼 한국에 많이 알려진 사건 중 하나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일이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것이라는 식으로 소개된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사건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교육 관련 법안이 나올 때마다 몸살을 겪는다. 최종적으로 2019년 통과된 'Health Education Framework'는 2016년 처음 제시됐다. 진평연이 쓴 것처럼 단순히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이 아니다. UNESCO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일부 복음주의 개신교인 학부모의 극렬한 반대에 시달렸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적나라한 성교육을 받으면 불필요한 성적 호기심·상상력을 자극해 아이들을 '조기 동성애화'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반동성애 진영이 성교육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안 하나가 발표될 때마다 일부 한인 교인들은 연합해 반대 서명을 돌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운동도 했다. 한인 교회는 예배당을 열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봤다. 현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반대 운동이 전개돼 왔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하기 7년 전부터 동성 커플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결혼한 동성 커플은 자녀를 입양·출산할 수 있다. 당연히 유치원·학교에는 동성 부부 자녀들이 있다. 개인이 종교

적 신념으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에는 동성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성교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 의무 사항도 아니다. 주 교육 당국은 각 교육구 혹은 학교에 선택할 권한을 줬다. 그럼에도 일부 교인은 결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압력 때문에 학교가 이 교육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와 “그밖에 교육 내용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최근 반동성애 진영 몇몇 강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위 '성경적 성교육'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런 성교육은 시대착오적이며 성을 더욱 음지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9)>(2020.8.5.)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4>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이 성교육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다. 의무 사항도 아니다. 주 교육 당국은 각 교육구 혹은 학교에 선택할 권한을 줬다. 그럼에도 일부 교인은 결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압력 때문에 학교가 이 교육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의 보도는 반쪽짜리이다. 부모가 자신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성교육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 LGBTQ의 권리와 업적에 대한 수업 참여는 의무사항이다. 즉,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할 권리, 동성애와 성전환을 할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

또한, 뉴스앤조이는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

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와 “그밖에 교육 내용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의 교육내용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학, 미션스쿨도 동성 간 결혼은 옳지 않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이다. 동성애는 보편적으로 유해하다는 교육을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된 성교육 커리큘럼 중 초등학교용 교재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성행위를 설명하면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용어와 함께 자위하는 그림도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

그런데,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동성애는 정상이다, 제3의 성이 존재한다, 자신의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다라는 교육은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즉,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이고 LGBT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 캘리포니아의 Healthy Youth Act 2016

위 기사에서 언급된 캘리포니아주의 성교육 안은 캘리포니아의 2016년 ‘건강한 청소년법(Healthy Youth Act)의 제정에 이은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아동은 중학교에서 최소 1회, 고등학교에서 최소 1회의 포괄적 ‘성과 건강’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 아닌, 기존에 금욕만을 강조하던 성교육을 제공하던 것에서 시대와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기의 관계 및 관계에서의 학대, 성 착취 문제, 건강한 성과 건강한 행동,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HIV 예방 교육에 지난 20년간 발전한 치료 및 예방법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코람데오닷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승인된 성교육 커리큘럼 중 초등학교용 교재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성행위를 설명하면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퀴어’라는 용어와 함께 자위하는 그림도 포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 라고 하였다.

일단 사진의 출처로 써 놓은 ‘Elementary School, California Sex Ed Curriculum Excerpts’ 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사이트는 없다. 이는 단순 검색어로 보인다. 이것으로 검색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발견했다. 이 사이트에는 동성애 교육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캘리포니아 성교육 커리큘럼 발췌본이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이미지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췌해 놓은 이미지 중에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그림은 없었다.

<https://sex-ed-facts.com/elementary-school/>.

그리고 오히려 코람데오닷컴이 앞서 인용한 (California approves new guidance for teaching sex education, EdSource, 2019.5.9.)<sup>7)</sup> 글에서 보면, 위 발췌된 책의 원본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커리큘럼 프레임 워크 및 교육 자료부서 책임자인 Stephanie Gregson은 이 책이 교육 자료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교사를 위한 자료라고 말했다<sup>8)</sup>.

## - Health Education Framework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교육안은 단순한 낙태 또는 동성애 교육이 아닌, WHO와 UNESCO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고안된 것이며, 캘리포니아의 Healthy Youth Act 2016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포괄적 성교육 수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참여하지 않도록(opt-out)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교육 실시 최소 14일 전에 교육 진행을 알려야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는 서면으로 opt-out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람데오닷컴은 “부모

7)

<https://edsources.org/2019/california-approves-new-guidance-for-teaching-sex-education/612169>

8) Stephanie Gregson, director of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s curriculum frameworks and instructional resources division, emphasized that the books should not be mistaken as instructional materials. They are resources for teachers when students have questions relating to sex, she said.

가 자신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성교육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 LGBTQ의 권리와 업적에 대한 수업 참여는 의무사항이다. 즉,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할 권리, 동성애와 성전환을 할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 교육청(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sup>9)</sup>

- 캘리포니아의 Healthy Youth Act는 부모는 포괄적 성 건강 및 HIV예방 교육의 “전체 또는 일부” 불참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는 이 교육 과정의 LGBTQ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에서 부모가 원할 경우 아동이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는 아동이 포괄적 성 건강 및 HIV예방 교육의 다른 과정은 모두 참여하되, LGBTQ와 관련된 교육에만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이는 교육법 상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LGBTQ 포함 교육은 LGBTQ학생들에 대한 폭력 및 차별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LGBTQ에 대한 별도의 교육 제공 및 부모의 (다른 교육은 모두 들되 LGBTQ관련 내용에만 빠지도록 하는) 행위는 학교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별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법과 연방법 모두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부모의 아동 참여 배제권의 행사는 Healthy Youth Act에 의해 포괄적 성교육에만 적용되며, 다른 일반적인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음. 즉, 학교의 일반적 의무 - LGBTQ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기타 교육 및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제공 - 에는 적용되지 않음.

즉, 2016년 제정된 Healthy Youth Act 법은 명시적으로 부모가 원할 경우 아동이 포괄적 성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은 학생 간 차별 및 폭력의 금지, 건강한 학교 조성 등을 위한 교육에는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위 법 제정 및 성교육 표준안과는 무관하다.

## ② 프레임 체크

반대진영이 위와 같은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으로는 팩트를 허위 혹은 왜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그러한 교육 관련법이 존재하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불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도 마치 강제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9) LGBTQ 포함 의무와 부모의 아동 참여 배제 (LGBTQ-Inclusivity Requirements and How They Interact with Parental Opt-Out): [https://www.aclunc.org/docs/lgbtq\\_inclusivity\\_requirements\\_and\\_how\\_they\\_interact\\_with\\_parental\\_opt\\_out.pdf](https://www.aclunc.org/docs/lgbtq_inclusivity_requirements_and_how_they_interact_with_parental_opt_out.pdf)

### 3) 캐나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항문 성교를 교육한다?

#### 가) 주장

##### 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8세 동성애, 11세 자위행위, 12세 항문성교 가르치는 캐나다>(2016.4.29.)

<https://cfms.kr/headlin/education-department/4843/>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정상이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왕따가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6세)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때는 동성애와 성별정체성에 대해, 6학년(11세)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7학년(12세)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을 통한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토론토 중앙일보 <특집/ “교사가 ‘멘토’ 라야지 ‘지식전달자’ 는 아니잖아요” (2012.11.27.)

<https://www.cktimes.net/opinion/%ED%8A%B9%EC%A7%91-%EA%B5%90%EC%82%AC%EA%B0%80-%EB%A9%98%ED%86%A0%EB%9D%BC%EC%95%BC%EC%A7%80-%EC%A7%80%EC%8B%9D%EC%A0%84%EB%8B%AC%EC%9E%90%EB%8A%94-%EC%95%84%EB%8B%88%EC%9E%96%EC%95%84%EC%9A%94/>

이미 토론토 교육청은 ‘동성애 혐오증 및 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도전: 유치원-12학년 커리큘럼(Challenging Homophobia and Heterosexism: a K-12 Curriculum)’이라는 성교육 교재를 통해 전통적인 결혼관, 가정관, 성별, 성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오고 있었다. (중략) 이제 학교에서는 유치원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과 함께 아버지와 아버지만으로 이루어진 가정, 어머니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소개한다.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수치심,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및 왕따를 학습현장에서 제거하고 동성애자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같은 성교육의 취지이다. 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심어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학년(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 3학년(8세)때는 동성연애와 성적 정체성(여성과 남성 대신 동성, 양성,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의 개념에 대해 배움)에 대해, 6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그리고 7학년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성기를 통한 성행위 및 항문을 통한 성행위를 가르친다. 특히 이같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교측은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학교는 교내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동성애나 성전환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학생들이 보통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연합클럽활동을 고안, 지원해야 하며, 교회 등 학교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같은 온주의 교육정책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캐나다 성교육, 너무 ‘디테일’ 해서 문제?>(2010.12.19.)**

<http://if-blog.tistory.com/938>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이 정도로 ‘리얼한’ 성교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올 1월 교육부 웹사이트 공개된 성교육 새 교재는 초등 1학년에게 성기 등 신체의 이름을, 3학년에게 동성애(homosexuality), 6학년에게 자위(masturbation), 7학년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성병(MITs)을 가르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④ 캐나다 한국일보 <온타리오주의 성교육 논란 “사춘기는 언제부터 시작? 7살때부터” >(2015.3.9.)**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47481>

구강성교, 항문성교가 놀랍게도 7학년 항목에 나온 것은 너무 앞섰다는 것. 호기심 많고 나뭇잎이 굴러가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나이에 이런 성교육은 꽤 자극적이고 그만큼 재미도 클 것이다.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 동성애 관련 해명 분석 ①>(2018.10.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07>

그동안 반동성애 진영이 주장한 “학생인권조례 통과되면 캐나다에서처럼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게 된다” 는 내용을 <한겨레>가 가짜뉴스로 지목하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용희 대표는 2017년 11월 영

락교회에서 열린 '한국 장로교 여성 대회'에서 “캐나다에서는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를 학습한다. 교육을 거부할 시 '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거짓일까. 먼저 한가모가 출처로 제시한 링크를 따라가 보자.

교육부 블로그 링크는 '블로그 기자단'이 2010년 취재·작성한 내용이다. 글쓴이는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목격한 학교 성교육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수년간 커리큘럼을 짜고 교재를 만드는 등 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성교육은 너무 디테일하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골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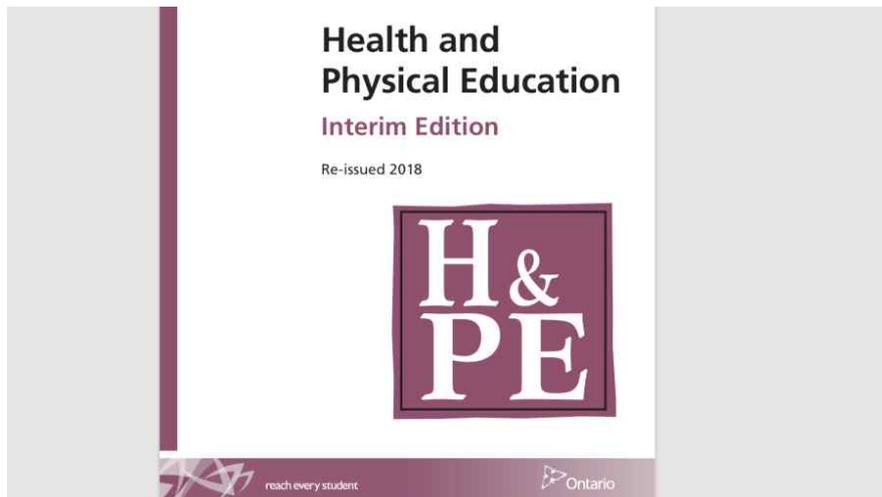
조금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는 온타리오주의 성교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캐나다한국일보> 기사의 핵심이다. LGBTQ(성소수자)의 존재를 언급하고, 성폭행이 미치는 심리·법적 영향 등을 설명하는 게 한국 성교육과 다르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소스가 어떻게 “캐나다에서는 항문 성교를 가르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는지 살펴보자. 한가모가 말하는 '캐나다'는 주로 온타리오주를 가리킨다. 캐나다는 주마다 독립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2015년, 1998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성교육 지침서를 전면 개정했다.

'건강과 신체 교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지침서는, 1학년(만 6세)부터 8학년(만 13세)까지 사용하는 것과, 9학년(만 14세)부터 12학년(만 17세)까지 사용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2015년, 이 지침서가 공개되자 캐나다 내 보수 기독교인과 무슬림 등이 반발했다. 이들 역시 지침서가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당시 온타리오주에서는 학부모들이 주 교육부의 성교육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야외 시위를 이어 갔다. 반대하는 쪽은 “학교에서 항문 성교와 구강성교를 가르친다”고 주장했다지만, <글로브앤더메일>·<허핑턴포스트캐나다>·<토론토스타> 등 캐나다 언론은 팩트를 체크한 후 “항문 성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교사들은 7학년 학생들에게, 항문 성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노민스노'(no means no), 동의(consent)와 부동의를 가르치는 과정의 일환이다. 또 성병 전염의 다양한 경로를 알려 주는 차원에서 항문으로도 성기 삽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성교육 지침서' 개정안. 온타리오주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뉴스앤조이] '캐나다의 항문 성교 가르친다'는 주장의 진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최근 일시적으로 개정안을 내놨다. 2018년 8월 발표한 최신 개정 지침서도 학습 목표를 바꾸지는 않았다. 이 지침서 7학년 부분에도 2015년과 같이 “7학년 학생들은 이 교육을 마칠 때 쯤이면 성병 전염의 다양한 경로를 알고 성병의 증상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적혀 있다.

“항문 성교 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지침서의 핵심은 '성행위'가 아니라, '성관계 시 동의 여부'와 '성병 전염 경로'다. 학생들이 성폭력과 성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언급되는 것이다. 200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인간 성애性愛의 한 범주로 언급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동성애를 가르친다”는 반동성애 진영 주장도 '성행위'가 아니라 '차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침서에는 9학년(만 14세,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호모포비아', 즉 동성애 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돼 있다. 인터넷과 학교 등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따돌림 및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호모포비아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 토론하는 시간도 있다.

100% 거짓말보다 거짓과 진실을 섞어 놓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에스더 이용희 대표와 반동성애 진영 활동가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회적 맥락과 성교육 지침 목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정보만 발췌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특히 각 지방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 이 같은 ‘허위 정보’는 개신교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타고 더욱 빠르게 확산돼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위 뉴스앤조이 기사 중 체크된 내용에 추가사항 없다.

### ② 프레임 체크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개로 국제인권기준은 “포괄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교육”은 아동의 건강권 및 교육권에 해당하며,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을 통해 성소수자 아동 역시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일종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일반논평을 통해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차별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존중은 건강 증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호). 한국의 현행 성교육표준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차별을 조장하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면에서 여러 비판을 받아왔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정 및 포괄적 성교육 표준안 마련에 대한 권고를 받아왔다.

## 4) 미국 메사추세츠주는 동성 성행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 가) 주장

#### ① CTS <차별금지? 차별조장!>(2013.5.3.)

<https://www.cts.tv/news/view?ncate=CATTV&dpid=155102>

“동성결혼 합법화 9년째인 미국 메사추세츠 주 교과과정에는 동성간 성행위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 ② 크리스천투데이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2013.6.5.)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64318>

동성애법이 통과된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가르쳐 교포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였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위 기사가 게재된 2013년, 매사추세츠 법에는 별도의 성교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0년 1월, 매사추세츠 상원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학교에서 나이에 부합한 정보와 LGBTQ 권리, 동의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법에 근거하여 학교는 LGBTQ-inclusive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캘리포니아 주의 Healthy Youth Act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도 부모의 자녀 교육 불참(opt-out) 조항이 포함되어, 향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방식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통과된 법의 이름은 An Act relative to healthy youth이고, 법안 초안이 수정되어 포괄적 성교육 수업이 부모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성교육 수업을 불참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sup>10)</sup> 따라서 성교육 수업은 필수적이지 않고 선택적이다. 그런데 법상에서 Opt out인지(부모의 철회가 있어야 수업 면제), Opt in(부모의 허가가 있으면 수업 참여) 인지 여부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는데, 위 수정 보강된 조항에서 포괄적 성교육 커리큘럼 통지를 처음에 학교가 부모에게 통지하고, 이후 부모가 학교에 대해서 철회를 할

10) 수정법안 링크 <https://malegislature.gov/Bills/191/S2459>

수정 보강된 부분 중 수업 불참권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A city, town, regional school district, vocational school district or charter school implementing or maintaining a curriculum that primarily involves human sexual education or human sexuality issues shall adopt a written policy ensuring parental or legal guardian not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sexua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provided by the school and the right of the parent or legal guardian to withdraw a student from all or part of the instruction and including a clearly articulated notification process for withdrawal by a parent or legal guardian to the school [SEP]

인간의 성교육 또는 인간의 성 문제를 주로 다루는 커리큘럼을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도시, 타운, 지역 학교, 직업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특수 인허가 학교)은 다음에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성 건강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학부모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통지, 학교 및 학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교육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학생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및 학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철회를 위하여 학교에 대한 명확한 통지 절차도 보장하는 서면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수 있는 구조를 보았을 때 Opt out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 5)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40배 증가?

### 가) 주장

#### ① 크리스천투데이 <영국서 성전환 아동 10년간 4천% 증가...원인 조사 중>(2018.9.1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6221>

영국 정부가 성별을 '전환'하려는 아동이 4천% 이상 증가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UK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데이터에 따르면 '성 전환 기술'(gender treatment)에 대해 언급한 청소년이 2009-2010년에는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2018년 사이 2,510명으로 늘어나 약 4,415% 증가했다.

영국 여성평등부 페니 모던 장관은 성별 전환 아동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이 특히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9년 전만 해도 40명의 여학생이 '성 전환 기술'을 받았으나 현재 1,806명으로 4,515%나 증가했다. 남학생 수는 동기간 56명에서 713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 전환 기술을 언급한 아동 중 45명이 6세 이하였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4세였다.

텔레그래프는 “일부 교육자들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혼란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아이들에게 성별을 의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industry)이 되었다“면서 ““여성 대 페미니즘'(Women Vs Feminism)의 저자인 조안나 윌리엄스는 학교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소년이든 소녀이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국에서는 8백여 명의 '성별 불쾌감'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지난해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는 약물을 투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10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 사춘기 차단제뿐만 아니라 성 호르몬을 포함한 이 화학 물질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브리스톨 왕립 병원(Bristol Royal Infrastructure)의 컨설턴트 정신과 의사인

루시 그리핀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술은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불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성 전환 시술'을 요구하는 미성년자의 급속한 성장은 '성별 불쾌감'의 급성 발병 요인인 사회적 파급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하고 있는 레딧(Reddit; 소셜 뉴스 웹사이트)과 유튜브 같은 인터넷 문화에 의해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자가진단을 하고 성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페더럴리스트는 지난 주 미국에서 13세 소녀들이 성별 불쾌감으로 인해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며 “연방 세금이 사춘기 차단제와 교차 성 호르몬 사용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왜곡된 연구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문제와 관련된 쟁점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며 이러한 의료 행위에 대한 찬반은 정치적 스펙트럼과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3>

법적 성별과 자신이 느끼는 성별이 다르다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사람은, 호르몬 투여, 성별 정정 수술 등을 통한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친다. 개신교 신념에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 현재 전 세계 정신 과학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한국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AP) 역시 '성별 위화감'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했다. AAP는 미국과 영국에서 실제 상담 사례, 성별 전환 수술 등을 종합해 만든 것이다. 성별 위화감을 겪는 아동은 자살·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이 정책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진평연이 인용한 CBN(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은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계열 방송사다. CBN은 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근거가 된 통계를 가지고

최근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증가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진평연은 40배 증가라고 했지만, 원문은 '4000% 증가'라고 더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수치로만 따지면 사실이다. 영국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2009년에 97명이었고 2017~2018년에는 2510명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성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존재함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호르몬 요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논리다.

영국 반동성애 운동가들은 2010년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트랜스젠더가 증가하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려대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2015년 <보건사회연구>에 발표한 논문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 접근성에 대한 시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조사 결과로 볼 때 트랜스젠더는 전체 인구 중 약 0.3%를 차지한다. 평등법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가시화한다고 보는 게 더 논리적이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9)>(2020.8.5.)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4>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이 인용한 CBN(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은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계열 방송사다. CBN은 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근거가 된 통계를 가지고 최근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증가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진평연은 40배 증가라고 했지만, 원문은 '4000% 증가'라고 더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너무 성급하게 기사를 쓰다 보니 팩트체크를 제대로 못한 듯하다. 이 사실은 CBN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영국의 다른 많은 언론들도 보도했다. 아래에 기재한 언론사들 이외에도 더 있는데, 그만큼 이 사실이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 언론사의 기사 제목도 4000%라고 한 CBN 기사 제목과 동일하다.

Minister orders inquiry into 4,000 per cent rise in children wanting to change sex, The Telegraph, 2018.9.16

■ Minister orders inquiry into 4,000 per cent rise in children wanting to change sex, The Telegraph, 2018.9.16.

■ Government probe into why so many girls want to be boys: Investigation

ordered after number of 'transitioning referrals' increases by four thousand per cent, Mail Online, 2018.9.15.

■ Investigation as number of girls seeking gender transition treatment rises 4,515 percent, Express, 2018.9.16.

영국 텔레그랩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9월 영국의 여성평등부 장관 페니 모던(Penny Mordaunt)은 지난 8년간 자신의 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2009년~2010년 사이에 남녀 아동 총 97명이 성전환 시술을 원했었는데, 2017년~2018년 사이에는 그 수가 총 2,51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여성평등부는 소셜 미디어와 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 이슈에 관한 교육이 어린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사춘기가 안 된 어린 아이들을 성전환을 위해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텔레그랩은 영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리즘 교육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것을 미리 경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진평연의 주장은 영국 언론 보도와 통계, 그리고 영국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하고 있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영국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4000 per cent” 증가라고 표현한 뉴스 기사 역시 다수 확인된다. 실제로 영국의 전 평등부 장관 페니 모던트(Penny Mordaunt)는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조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영국의 평등법 및 ‘관계와 성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조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영국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남성으로 태어난 아동(약 1200% 증가)보다 여성으로 태어난 아동(약 4500% 증가)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인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스웨덴(1500% 증가), 덴마크 등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트랜스젠더였으나,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흘러서 자유로운 분위기, 차별을 받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나, 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그 조사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프레임 체크

장혜영 의원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 시안은 모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이러한 법안 논의와 아동의 성정체성 여부는 무관하다. 오히려 해외 선진국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점점 더 많은 아동이 법적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생각함에 따라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2016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인구 비율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트랜스젠더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0.5-0.6%로 추정된다.<sup>11)</sup> 이를 영국에 대비하면 영국 총인구 약 6650만명중 약 33만-40만명이 트랜스젠더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2010년에 97명의 아동만이 성을 바꾸고자 한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적은 숫자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평등법이 시행되고 트랜스젠더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음에 따라 더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통계 비교의 오류’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통계 비교 오류’와 관련해서는 일단 비교 연도가 다르고, 트랜스젠더 총수는 조사 당시 누적 수 개념으로 한 것 같고, 아동의 수는 2009년~2010년 2년간만 비교한 것이라 여러모로 비교 대상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두 번째로 ‘논리 비약’과 관련해서는, 물론 33만~40만명에 비하면 97명이라는 숫자가 매우 적기는 하나, 이것이 바로 ‘아동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은 결과’라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성정체성은 아동기에 이미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정체성은 이미 아동기에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성인 트랜스젠더 수가 이렇게 많은데 2009년~2010년 당시 트랜스젠더 수술 시도 아동 통계가 적게 나타난 것은 그 당시 아동이었던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한다.

11) The Williams Institut, How Many Adults Identify as Transgender in the United States. June 2016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publications/trans-adults-united-states/>

## 6) 영국에서 ‘성별은 남녀 두 가지만’ 라고 말한 학생이 퇴학당했다?

### 가) 주장

① 국민일보 <남녀 외에 여러 성별 있다?... 잘못된 성별이론 막아야/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19> 황당한 서구의 공교육 현장>(2020.7.20.)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47944>

2019년 6월 영국 교육 현장의 실태를 담은 충격적 영상이 하나 공개됐다. 스코틀랜드의 학교 수업 중 머레이라는 남학생이 바른말을 했다가 교실 밖으로 내쫓기는 일이 벌어졌다.

머레이는 수업 중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 고 했다. 그는 교사의 지시로 밖으로 쫓겨나갈 상황이 되자 “왜 내가 교실에서 쫓겨나야 하죠” 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교사는 “너의 발언은 포괄적이지 (inclusive) 못했으니까, 이것은 내 의견인 동시에 학교의 의견이기도 하다” 고 말한다. 머레이가 이에 굴하지 않고 “성별은 두 개예요” 라고 반박했지만, 교사는 그를 교실 밖으로 내몬다.

② 유사한 해외 사례 언급 기사

- 국민일보 <남녀 외에 여러 성별 있다?... 잘못된 성별이론 막아야/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19> 황당한 서구의 공교육 현장>(2020.7.20.)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47944>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18년 2월 앨리슨 다우니 교수의 ‘기독교:자기, 죄 그리고 구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레이크 잉글이란 학생이 “세상에 성별은 단 두 개뿐” 이라고 말했다가 수업 방해로 강의실에서 쫓겨났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잉글은 종교학 전공자로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다. 당시 다우니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언급하며 “72개의 성별이 있다” 고 했다. 그러자 잉글이 “생물학자들의 공식 견해는 단지 두 개의 성별만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72개의 성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다우니 교수의 그다음 행동은 잉글을 ‘수업 방해’ 를 이유로 강의실에서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잉글을 학업청렴위원회(Academic Integrity Board)에 고발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타당성에 대해 무례하게 반대했다”

면서 적절한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3>

이 역시 사건의 전체 맥락보다는 일부분만 떼서 썼다. ‘머레이’라 불리는 학생은 학교에서 교사와 논쟁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 머레이는 젠더에는 남성(male)과 여성(female)만 있다고 주장했고, 교사는 교육부 커리큘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머레이는 수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다. 약 30분이 지난 후 교사가 머레이를 찾아와 대화를 시작했다. 머레이는 이 대화를 촬영했다. 머레이는 자신을 쫓아낸 것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교사는 머레이의 주장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했다. 머레이와 교사가 나눈 대화는 그대로 녹화돼 인터넷 사이트 레딧에 올라갔고 이후 수만 회 공유됐다.

머레이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이후 머레이는 한 블로거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두 개의 성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방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비판을 받았다.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추방했다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 교육청은 머레이에게 소명 기회를 줬지만 그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사 노조 대표는 머레이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슈화할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해당 교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견의 다양성을 요청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지역 교육청은 머레이가 다른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맥락을 보면 머레이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퇴학당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게 주목적이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⑩>(2020.8.9.)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5>

뉴스앤조이는 “맥락을 보면 머레이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퇴학당한 게 아니

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게 주목적이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 하여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제4호는 성별(제3의 성 포함)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는 이를 괴롭힘이라고 하면서 혐오표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 금지 조항은 교육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데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는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 된다.

한편, 안 제32조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제1호)와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수업 시간에 성별이 두 가지라고 말한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제32조 제1호 위반이 된다. 또한, 그 학생이 수업시간에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계속 방치하는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32조 제4호 위반도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학교는 자신이 차별금지법 위반을 하지 않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이 성별이 두 개라고 수업시간에 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생활지도 또는 징계 등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머레이 학생 같은 사건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참고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학생 징계의 배경

기사에 의하면 머리라는 학생의 처우는 이 학생의 의견 또는 교사와의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교칙으로 금지된 '교사 촬영'이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교사 촬영 금지'라는 교칙은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교칙이기도 하다.

학교는 학생의 징계의 원인이 학생과 교사의 의견 불일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의무교육 연령은 16세까지로 17세인 해당 아동에게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며, 교칙 위반으로 인해 해당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단된 것이다.

<https://www.standard.co.uk/news/uk/teenager-who-went-viral-after-arguing-with-his-teacher-that-there-are-only-two-genders-told-its-not-a4180816.html#comments>).

## Evening Standard

ST THE REVELLER COMMENT TECH ES BEST ES MAG HOMES & PROPERTY

NEWS | UK

### Teenager who went viral after arguing with his teacher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barred from returning to the school to finish his education



■ 해당 사례 보도한 evening standard 기사 갈무리

위에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에서 알려준 링크를 따라가보니, 퇴학 부분 관련해서는, 머리는 퇴학당한 것은 아니고 정확된 것은 맞지만, 학교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맞는데, 그 이유는 정학 기간 동안 의무학년 나이가 끝났기 때문이다(Students cannot be permanently excluded when no longer in compulsory education, which ends at the age of 16 in Scotland. “The young man in question has not been permanently excluded from Mearns Academy, but rather at the age of 17, has reached the end of his time in compulsory education,” they said).

그리고 머리라는 학생이 “성별은 두 개다.” 라고 말한 이후에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낸 것처럼 가짜 뉴스는 말하고 있으나, 교실에서 징계 차원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머리에게 만일 그 이야기로 계속 대화를 하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었다(Murray if you want to

have this discussion we can have it outside.) 따라서, 반대진영의 주장은, 상당 부분 허위가 뒤섞여 있다.

## ② 프레임 체크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제32조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제1호)와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제1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징계 시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학교의 장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4). 즉, 학생의 발언으로 인해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금지법 외에도 현행법에 근거한 다양한 절차가 적용되며, 발언의 내용 및 기타 수반되는 행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은 이미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반대한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불허했다?

## 가) 주장

### ① 뉴스앤넷 <加 “동성애 반대 기독교 로스쿨 인가 거부 할 수 있다” >(2018.6.18.)

<http://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4>



#### ■ 뉴스앤넷 기사 갈무리

### 기독교일보 <캐나다 대법원, 동성애 반대 표명한 크리스천 로스쿨 인가 거부 허용>(2018.6.20.)

<https://url.kr/4dx3UM>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법률 학교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주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 University)에 대한 인가를 거부 할 수 있다는 판결했다. 온타리오 법무부(Ontario Canada 's Association of Canada)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법조계에서 평등한 접근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LGBT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목표를 현저하게 개선했다”면서 “배타적 종교 관습보다는 가치와 다양성에 기초하여 로스쿨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공익에 대한 해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동성애 가르치지 않아’ 학교 폐쇄? 반쪽 사실만 전달>(2020.7.17.)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3>

이 뉴스 역시 진평연이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이라는 내용만 취사선택해 내세운 경우다. 이 사건은 학교 손을 들어 주었던 1·2심을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뒤집어 주목을 받았다. 사건 요지는 이렇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는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는 복음주의 개신교 학교를 표방한다. 이들은 새롭게 로스쿨을 개원하면서 입학생들에게 '언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언약서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3년 동안 학교 캠퍼스 안은 물론 사적 공간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맺은 혼인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성관계'는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다.

로스쿨 개원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변호사협회는 언약서 서명 의무화가 미혼과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장벽을 세우는 일이라 판단했다. 회원 투표까지 간 끝에 변호사협회는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인가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학교가 이겼다. 법원은 변호사협회 결정이 학교의 종교의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데 비해, 성소수자들이 변호사업에 접근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미미하다며 변호사협회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행동 수칙을 따르는 기독교 환경에서 법을 공부하는 데 '의무적 언약 이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한국 차별금지법은 향후 기독교 종립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동대·숭실대 등 기독교계 사립대학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 학생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학교 지도부가 생각하는 신념을 계속 지키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된다.

② 코랏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10)>(2020.8.9.)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5>

뉴스앤조이는 “한국 차별금지법은 향후 기독교 종립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동대·숭실대 등 기독교계 사립대학은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

에, 특정 학생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학교 지도부가 생각하는 신념을 계속 지키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된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어디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안 제30조 구성원의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가 구성원의 자격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이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학교에게 다자성애, 성매매합법화 교내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지 말라고 했고, 숭실대학교에게는 동성혼 영화제 교내 상영을 위한 강의실 사용 불허가 동성애 차별이라고 했다.

더욱이, 국민은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과 법인, 단체에게는 일체의 정부 지원을 끊어 버리겠다는 뉴스앤조이의 사상은 매우 위험하다. 세금은 무조건 내라고 하면서, 대신 동성애 반대하는 납세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끊겠다는 것인데, 이러니,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기존 팩트체크(뉴스앤조이 기사)의 내용과 같다.

### ② 프레임 체크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 교육 파괴의 사례의 하나로 “캐나다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 TWU는 ‘동성애 반대와 일부일처 준수 학칙으로 인해 로스쿨 인가가 취소됨’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였다.”<sup>12)</sup>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에 언급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변호사협회의 조치는 변호사법(Legal Profession Act)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므로, 해당 조치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12)

<http://healthysociety.kr/24/?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4777648&t=board>

없다. 차별금지법안에 대응되는 캐나다의 법률로는 ‘인권법(Human Rights Act)’이 있는데, 해당 법률은 판결문에 직접 언급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을 예로 든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차별금지법안 내용상 학교가 동성애 활동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동성애자의 입학 및 활동을 배제하는 학칙을 마련하였을 때에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대학 채플 강요’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sup>13)</sup>는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 8) 영국은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입학 거부 불가?

### 가) 주장

#### ①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영국 평등법은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하는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한다. 따라서,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지원한 동성애자에게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재학 중 종교적 설립 이념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학교가 학칙에 의한 징계나 제적 등 조치를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13) 출처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입학(deciding who is offered admission)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85조 제1항), 차별적인 징계는 영국의 평등법이 금지하는 ‘기타 불이익조치에 의한 차별(discrimination by subjecting the pupil to any other detriment)’에 해당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정부의 보조가 없는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에도 적용된다(제85조 제7항 및 제8항).

다만, 특정 종교/교단 신학교/신학대학원처럼 특정 종파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의 경우, 특정 종파의 종교적 양심/신념에 따라 여성, 동성애자 등의 입학이 불허될 수 있다. 예컨대, 가톨릭에서 사제(신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나 학과에는 여성의 입학이 불허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 양성이 아닌 학교나 학과의 경우에는 설사 학교 이름이 신학교,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프레임 체크

학교는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과는 구분되는 곳이다. 종교시설에서 교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교리를 따르는 사람만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는 이것이 설령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적기관이다.

「고등교육법」은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학교에 여러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교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몇몇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시설인 학교에서 누군가의 속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 9) 미국에서 유치원이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됐다?

### 가) 주장

① 복음기도신문 <차별금지 못하는 서구, 교과서 젠더교육 통해 성전환 교육 일상화>(2020.9.3.),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http://gnpnews.org/archives/66606>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락클린 유치원(Rocklin Academy)에 서는 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남자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된 것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5세 아이들은 자신들도 반대의 성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이 유치원과 같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아이를 보고 남자 아이였을 때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초등학생은 교장실로 불려가 트랜스젠더 아이에게 고의로 남자 이름을 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트랜스젠더 아이를 여자 아이의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는 대답만을 들었다. 조사를 받은 초등학생은 충격을 받았고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① 팩트체크

위 기사는 ‘5세 아이들에게 2권의 트랜스젠더 옹호 책을 읽어 주었다. 그 후 한 5세 남자 아이가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며, 성정체성에 관한 책을 교육함에 따라 이후 한 아동이 트랜스젠더가 ‘된 것’ 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의 보도들은 두 사건의 선후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두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다는 점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워싱턴포스트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부모가 요청함에 의해 해당 책이 유치원 수업에서 읽혀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14)</sup>

14)

<https://www.abc10.com/article/news/local/roseville/gender-identity-education-sparks-controversy-during-rocklin-school-board-vote/476911267>

또한 위 기사는 유치원이 한 아동의 성정체성을 밝힌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아동이 직접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사례 보도한 미국 KCRA 방송 화면 갈무리

(<https://www.kcra.com/article/rocklin-school-addresses-transgender-book-controversy/12267676#>)

## ② 프레임 체크

위 기사는 트랜스젠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아동이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힌 일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정체성이 외부의 요소(교육 등)에 의해 것처럼 쉽게 ‘유발’ 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한 아동이 주체적으로 본인의 성정체성을 밝힌 일을 유치원의 교육에 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나아가 이를 차별금지법의 문제라고 연결 짓는 것도 부당하다. 아동 교육에 있어 모든 아동들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7/sep/19/school-defends-transgender-lessons-kindergartners/>

<https://www.cbsnews.com/news/transgender-reveal-kindergarten-class-rocklin-academy-parents-upset/>

## 나. 양육권 박탈 사례 검증

### 1) 캐나다에서 자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됐다?

#### 가) 주장

##### ① 크리스천투데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주관적 감정 근거로 한 ‘차별’ ” >(2020.7.1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122>

(진평연은) 다섯째로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킨다” 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 ② CTS <동성애 보장하는 외국의 다음 세대 교육은?>(2020.9.11.)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4&dpid=268321>

앵커: CTS 뉴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 들을 기획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다음세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앵커: 오늘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성적지향을 법으로 보장한 나라들의 다음세대 교육 현장을 어떨까요?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법을 제정한 캐나다. 2017년 온타리오주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주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Q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배심원단은 양육권 박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족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선 법조인들은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가족 복지법이

인권법 제정 이후 그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CTS 보도 화면 갈무리

전화 Int 전운성 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 기독교 철학으로 운영되는 미국 보스턴의 한 학교는 동성애 반대 학칙에 대한 변경을 거부하자 건물 사용권을 박탈당했고, 해당 교사들의 임용 제한 조치도 떨어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 철학의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사의 고용을 반대할 수 없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반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고 전망했습니다.

Int 이인애 원장 / 하디 아동발달센터 : 성경적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사례들,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이한승입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3>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법안89(Bill 89)의 효력이 발생했다. 법안에는 친부모라 하더라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신체·언어·감정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다른 공간에 머물게 하며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미국 북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더 많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에는 한국 반동성애 진영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근본주의 계열 뉴스 사이트가 많다. 이런 곳들 위주로 “생물학적 성별 정정을 원하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온타리오 주정부가 자녀를 빼앗는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퍼져 나갔다. 법안을 가리켜 “독재”라고 언급한 곳도 많았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자 <버즈피드>는 2017년 6월 13일 “노(No), 캐나다는 자녀의 젠더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아동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부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고용, 교육 기관의 교육, 행정 서비스 이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나 이용 등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다. 공공 영역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지, 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1)>(2020.7.22.)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59>

뉴스앤조이는 ‘버즈피드’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뉴스앤조이가 인용한 ‘버즈피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버즈피드’가 언급한 캐나다의 관련 법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를 폐지하고, 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을 제정하였다(이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이라 함)(<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구법은 아동 복지 지원이 보호의 지속성, 안정적인 가족 관계, 문화적·종교적·지역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아 이루어지도록 하였었다(구법 제 1조 (2) 4). 그러나, 새로 입법이 된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고(제1조 제2항 3 iii),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아동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포함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3) (C) (iii)).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SERVING LGBT2SQ CHILDREN AND YOUTH IN THE CHILD WELFARE SYSTEM:A RESOURCE GUIDE)’ 을 마련하였다(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함)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39 페이지). 아동 보호 담당관의 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LGBT2SQ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가이드라인 43 페이지).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동 학대이고(제127조 (2), 제74조 (2)),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 등을 통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분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진평연이 인용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은...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 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이러한 후속 입법을 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제1항(“「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를 반

영하는 후속 입법으로서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네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부모의 양육권 제한 또는 박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③ CGNTV영상 <차별금지법 해외 사례가 가짜? 팩트체크 1>(2020.7.21.)

<http://news.cgntv.net/player/home.cgn?c=102&v=146971>

논란이 뜨거운 차별금지법안 관련 가짜 뉴스 논란들에 대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차별금지법 통과에 이어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례가 가짜라는 내용입니다.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아동·가족복지법’을 폐지하고, ‘아동·청소년·가족복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새 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복지를 제공할 때 반드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평연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됐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 제9조와 제4조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로 지목한 전단지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

지 않다.” 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의 문제점은 뉴스앤조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나아가 코람데오닷컴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 법률은 ‘성적 학대 (sexually abused)’, ‘성 착취(sexually exploited)’, ‘육체적· 정신적 위해 (physical/emotional harm)’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74조 제2항), 위 법률에 따를 때 ‘동성에 또는 성전환에 대한 반대’가 양육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리고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녀의 복리(福利)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② 프레임 체크

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만을 규율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해서 이 사례와 같이 양육권의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제4조, 제9조를 들어 양육과 관련된 후속된 입법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안이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정함에 있어 이 법의 취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법 제정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을 제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이기에 이러한 조항이 기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될 의무 외에 특별히 더 나아가 국가의 의무를 설정한 것도 아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한국에서도 캐나다 법안89와 같은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그 필요성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캐나다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그 논의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주는 법이 될 것이다.

## 2)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 반대한 아빠, 양육권 박탈 판결?

### 가) 주장

#### ① 크리스천투데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주관적 감정 근거로 한 ‘차별’ ” >(2020.7.1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122>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019년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졌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 ② The Prayer Herald <미국,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 박탈>(2019.11.6.)

<https://url.kr/Fwtaxk>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에게 텍사스 주 델러스 법원이 아빠에게 ‘양육권을 박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라이프사이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아버지 제프리 영거는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이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의 성전환을 막기 위해 양육권을 되찾아오려고 그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제프리 영거에 대해 제임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 말 것과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리즘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오르굴라스는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제를 아이에게 투여할 권한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어머니 지오르굴라스에 대해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권한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방적인 트랜스젠더 우대정책을 펼친 나머지, “아버지의 성전환을 반대할 권리를 박탈했고, 나아가 아이에게 최소한의 선택권도 주지 않은 LGBT 독재 판결”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세 이하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 ③ 조영길 변호사 정리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전 배우자인 앤 지오르굴라스씨는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남성 성징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아빠는 자신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반해서 아들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해야만 하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수감 명령도 이행해야만 한다. 아빠는 자신의 전 배우자가 아들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성전환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앤 지오르굴라스씨는 법원에 아빠가 제임스를 남성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그리고 제임스를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도 하였다. 앤 지오르굴라스씨는 제임스에 대한 생모가 아니고, 제임스는 남자 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부모의 양육권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 ④ CTS <동성애 보장하는 외국의 다음 세대 교육은?>(2020.9.11.)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EWS04&dpid=268321>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배심원단은 양육권 박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 CTS 보도 화면 갈무리

국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족 관계에서 적용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선 법조인들은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가족 복지법이 인권법 제정 이후 그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됐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이 제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화 Int 전운성 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기독교 교육 철학으로 운영되는 미국 보스톤의 한 학교는 동성애 반대 학칙에

대한 변경을 거부하자 건물 사용권을 박탈당했고, 해당 교사들의 임용 제한 조치도 떨어졌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기독교 철학의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사의 고용을 반대할 수 없거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반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nt 이인애 원장 / 하디 아동발달센터

성경적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사례들,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이한승입니다.

#### 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텍사스주 델러스시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아버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2019.11.6.)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뉴스/ 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 ...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3>

이 사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19년 11월 1심에서는 아버지 제프리 영거가 양육권을 박탈당했지만, 2020년 1월 항소심에서는 공동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제프리 영거는 앤 고글러스와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 두 사람은 2015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2016년 결혼 관계가 끝났다.

엄마 앤은 7살 아들이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딸로 대해야 한다고 했고, 아빠 제프리는 종교적 신념상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소아과 의사인 앤은 아이가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겪고 있다고 했다. 수학 교사인 제프리는 앤이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젠더 정체성'을 아이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앤의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아이에게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앤에게 부여하고, 제프리에게는 △아이의 남성형 이름을 부르지 말 것 △'젠더 정체성'에 관한 수업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이 판결은 유명한 사건이 됐다. 법원 판결 후 여론은 양쪽으로 갈렸다. 제프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기독교인이었고, 이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미숙해서 성전환 과정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반대로 앤을 지지하는 쪽은 트랜스젠더를 적대하는 텍사스주에서 법원이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3달 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족 모두가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 사건과 관련해 트라우마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쌍둥이 앞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진평연의 주장은 반쪽짜리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례 역시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육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룰 일이지 차별금지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왜곡 정보를 유포했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2)>(2020.7.23.)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0>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의 주장은 반쪽짜리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례 역시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육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룰 일이지 차별금지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했다.” 고 보도했다.

진평연의 주장이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는 뉴스앤조이의 주장 자체가 허위·왜곡·과장이다. 뉴스앤조이가 서술한 대로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팩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아빠가 승소했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모라도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치료 또는 상담 받게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것이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이 핵심을 애써 반쪽짜리로 폄하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뉴스앤조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 금지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법령, 조례, 규칙이 순차적으로 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 등을 변경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네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와 같은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앤조이가 밝히지 않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나를 덧붙이면, 자녀의 성전환을 추진하는 앤 고글러스는 생물학적인 생모가 아니고, 난자 기증과 인공 수정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크리스천투데이 기사의 문제점은 뉴스앤조이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나아가,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해당 아동은 본인을 여성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는 점, 그 아버지는 아동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데에 매우 집착했고 그것을 강요했다는 점, 해당 아동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 까지는 성전환에 관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기적인 상담만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된다.<sup>15)</sup>

## 3) 캐나다에서 14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 맞도록 판결했다?

15) <https://www.vox.com/identities/2019/11/11/20955059/luna-younger-transgender-child-custody>

## 가) 주장

### ① 기사연 블로그 <딸의 성전환 반대하는 아빠에게 제지 판결 내린 판사>(2019.3.7.)

<https://blog.naver.com/pshskr/221482333097>

NEWS

#### Canadian judge rules dad can't stop 14-year-old daughter from transitioning into 'boy'

Pro-family advocates say the case has crucial and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parental rights.

Fri Mar 1, 2019 - 12:15 pm EST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블로그가 원본 기사로 인용한 lifesitenews 기사 갈무리

(<https://www.lifesitenews.com/news/canadian-judge-rules-dad-cant-stop-14-year-old-daughter-from-transitioning-into-boy>)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법원은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14살 딸이 부모의 동의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또한 부모가 딸에게 여성대명사를 언급했을 경우 가정 폭력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딸은 13살이 되던 해 남자가 되고 싶어 했고 BC 소아과 병원의 Brenden Hursh 박사로부터 호르몬 주사를 맞아 남성적인 모습을 나타낼 권장 받았다. 딸의 어머니는 찬성했지만 아버지의 의견은 달랐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장기 투여했을 시 부작용효과도 우려했지만 딸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딸의 정신 건강 문제였다. 딸이 돌이킬 수 없는 치료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딸의 사고 판단이 어느 정도 안정될 나이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의견에 적극 반기를 든 Hursh 박사는 딸의 동의만으로 호르몬제 주사를 투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논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대법원은 딸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의견에 관계없이 성전환 치료에 동의할 자

격이 있으며 이 딸에게 여성대명사를 지칭했을 경우 가정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실망한 아버지는 “BC 소아과 병원과 LGBT운동가들의 관심사는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DNA 실험도구로 자기 승진과 성과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 내 딸의 DNA를 바꿀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부모의 권리와 LGBT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이들에게 급진적 성교육을 했을 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례이다. LGBT 이데올로기는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는 암적인 존재이다. 자신이 낳은 딸에게 올바른 길을 선도해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캐나다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

##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3>

출처로 달아 놓은 <Lifesite> 보도만 봐도, 캐나다 법원이 '부모'가 아닌 '아빠'만 제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진평연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진평연 주장에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알 수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2019년 2월, 14세 아동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빠가 아동이 원하지 않는 여성형 이름으로 계속 부르거나, 딸로 대하면 안 된다고도 판시했다.

A.B로 명명된 이 청소년은 11살 정도부터 자신을 남성이라고 인식해 학교에도 남성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번 정신과 진료를 통해 '성별 위화감' 판정을 받고, 엄마에게 동의를 받아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시작으로 성별 전환 작업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빠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빠는 딸이 성별 전환술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묘하게 왜곡된 이 뉴스 역시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3 사례가 보여 주듯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2)>(2020.7.23.)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0>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진평연 주장에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알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뉴스앤조이가 설명한 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14세 아동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성전환을 반대하는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제한한 판결이다. 부모가 모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을 제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라면 둘 중 한 명이든, 두 명 다 이든 상관없이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의미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이 판결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Infants Act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은 성숙한 아동이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결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치료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223\\_01?fbclid=IwAR1wVPg31c20A49L8WS3PyZywUHWYHDzcCV\\_oNou-S2SsGTbyY0OR\\_wdFVc#section17](https://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223_01?fbclid=IwAR1wVPg31c20A49L8WS3PyZywUHWYHDzcCV_oNou-S2SsGTbyY0OR_wdFVc#section17)).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할 때,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성전환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성전환 부동의)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3 사례가 보여 주듯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되고,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것을 허용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책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캐나다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건사연 블로그의 2019. 3. 7.자 포스팅은 이 사례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급진적 성교육을 했을 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례” 라고 하였으나, 이 사례의 아동이 ‘급진적 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14세 아동에게 자신의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를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sup>16)</sup>. 위 뉴스앤조이의 2020. 7. 15.자 기사의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코람데오닷컴의 2020. 7. 23.자 기사는 “법원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성전환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성전환 부동의)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

16) National Post 2019. 2. 28.자 기사 ‘Transgender teen can proceed with hormone treatment despite father’s objections, B.C. court rules’ 참조  
<https://nationalpost.com/news/canada/transgender-teen-can-proceed-with-hormone-treatment-despite-fathers-objections-b-c-court-rules>

증 차별금지법의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인 <Infant Law>의 제17조<sup>17)</sup>는 의학적 치료 제공자가 아동에게 의학적 치료의 특성, 결과 및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효과와 위험을 설명하고 아동이 이를 이해하였으며, 의학적 치료 제공자가 의학적 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판단하여 치료가 아동의 최상에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을 조건으로, 의학적 치

## 다. 전통적 결혼·가족 제도 파괴 사례 검증

### 1)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했다?

#### 가) 주장

#### ① 연합뉴스 <콜롬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 ‘한지붕 한가족’...첫 법적 인정>(2017.6.14.)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4009100087?input=1195m>

남미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이 처음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3명은 전날 메데인 시에서 자신들을 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적 서류에 서명했다.

17) 17 (1) In this section:

"health care" means anything that is done for a therapeutic, preventive, palliative, diagnostic, cosmetic or other health related purpose, and includes a course of health care;

"health care provider" includes a person licensed, certified or registered in British Columbia to provide health care.

(2) Subject to subsection (3), an infant may consent to health care whether or not that health care would, in the absence of consent, constitute a trespass to the infant's person, and if an infant provides that consent, the consent is effective and it is not necessary to obtain a consent to the health care from the infant's parent or guardian.

(3) A request for or consent, agreement or acquiescence to health care by an infant does not constitute consent to the health care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unless the health care provider providing the health care

(a) has explained to the infant and has been satisfied that the infant understands the nature and consequences and the reasonably foreseeable benefits and risks of the health care, and

(b) has made reasonable efforts to determine and has concluded that the health care is in the infant's best interests.

법적으로 한가족이 된 남성 동성애자 3명은 배우인 빅토르 우고 프라다, 스포츠 강사인 존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언론인인 마누엘 호세 베르무데스 등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상속권 등을 보유하게 되며 이혼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고 프라다는 “우리가 견고한 법적 토대 위에 가정을 꾸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입증하고 싶었다”며 “법적으로 다른 형태의 가정이 존재함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사와 남성동성애 권리옹호단체는 “지금까지 3명의 동성애자가 동거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4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다. 남미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기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 이어 4번째다.

②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에 무너진 세계교회들 (유럽, 북미, 미국 등을 중심으로)>(2020.10.27.)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1003>

“콜롬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 '한지붕 한가족'...첫 법적 인정” “콜롬비아는 2016년 4월 동성혼이 합법화 된 후 이듬해 3명의 중혼도 법적으로 인정”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3>

이 사례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영국 BBC도 이들을 소개했다. 마누엘, 알레한드로, 빅토르는 2017년 6월 한 가족으로 인정받았다. 세 사람은 원래 알렉스라는 남성을 포함 네 사람이 한집에 살고 있었다. 모두 동성애자다. 이들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하면 두 사람씩 결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알렉스가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 명이 됐다.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처럼 살던 세 사람은 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일을 시도하기로 했다. 인구 70.9%가 가톨릭교인인데도 콜롬비아는 2016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 단체, 인권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거주 중인 메데인시는 세 사람을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세 사람은 유산·재산 등을 공유·상속하며 만약 이 관계를 깨고 싶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정

보다. 동성 결혼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13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

## Colombia legally recognises union between three men

Alejandro Rodriguez, Manuel Bermudez and Victor Hugo Prada plan ceremony to celebrate notary signing paperwork



▲ Alejandro Rodriguez, Manuel Bermudez and Victor Hugo Prada at their home in Medellín. Photograph: Courtesy of Manuel Bermudez

### ■ 콜롬비아 사례 전한 가디언 기사 갈무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l/03/colombia-three-men-union-alejandro-rodriguez-manuel-bermudez-victor-hugo-prada>)

## ②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3)>(2020.7.24.)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1>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정보다. 동성 결혼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13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인권단체 주장의 핵심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 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국가는 이를 시정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가 생긴다.

영국은 2006년에 제정된 1차 평등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평등법 입법으로 인해 국가에 동성애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동성혼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The Equality Bill-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The Lord Privy Seal,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y,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2008년 7월, 33~35 페이지). 하지만, 영국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2013년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주는 관문이 된다.

아울러, 성적 지향은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범성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혼인을 2명만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차별’ 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화 합법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동성혼을 허용하면, 결혼을 더 이상 2명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혼인제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견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위 사례의 사실관계는 위 기사들과 동일하다. 동성애 차별금지가 동성혼 합법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코람데오닷컴의 2020. 7. 23.자 기사 중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혼 합법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동성혼을 허용하면, 결혼을 더 이상 2명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혼인제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는 것은 해당 판결문에서 찾지 못하였다<sup>18)</sup>.

## 2) 미국에서 60대 엄마가 동성애자 아들의 대리모로서 손자를 출산했다?

18) James Obergefell, et al. v. Richard Hodges, Director, Ohio Department of Health, et al., 576 U. S. \_\_\_\_ (2015),(Nos. 14-556, 14-562, 14-571 and 14-574)

## 가) 주장

### ① 연합뉴스 <동성애 아들의 '손녀 대리모' 된 美 61세 여성>(2019.4.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2130800009?input=1195m>

동성애자 아들을 위해 미국의 60대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하고 나서 마침내 아들의 딸을 낳았다. 올해 61세의 세실 엘리지는 아들과 아들의 동성 남편을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결심한 것과 관련,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 NBC 방송이 2일 전했다. 그는 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네브래스카 메디컬 센터에서 출산에 성공했다. 엘리지는 2.7kg의 손녀를 기쁨으로 맞았다. 그의 아들 매튜 엘리지 부부는 가족을 갖기 원했고, 매튜의 남편 엘리엇 도허티의 누이가 난자를 제공했다.

이들 부부는 대리모를 찾아 나섰으나, 과정이 혼잡스러웠고 체외수정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매튜 엘리지는 “네브래스카는 좀 보수적인 지역”이라며 “동성 커플로 대리모를 찾는 것도, 이를 통한 출산에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선뜻 자궁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튜는 이런 상황에 회의적이었다. 어떻게 61세 여성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미 폐경이 됐는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만류했다. 엘리지는 “이런 모험에 동참하게 돼 너무 흥분됐다”며 “이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엘리지가 출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엘리지의 완벽한 건강증명서를 보고 출산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출산에 성공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진평연 팩트체크①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아동 양육권 분쟁'...한국 차별금지법과 관련 無>(2020.7.1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3>

이 뉴스는 사실이다. 2019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사는 세실 엘리지는 아들 매튜와 그의 동성 남편 엘리엇의 딸을 대리출산했다. 매튜의 정자와 엘리엇 누나의 난자를 체외수정했고, 이를 세실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세실은 지난해 4월 건강한 손녀(?)를 낳았다. 세실은 “엄마로서 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다”며 대리모가 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가족의 결정이 알려지자 미국 사회

## 동성애 아들의 '손녀 대리모' 된 美 61세 여성

송고시간 | 2019-04-02 16:21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동성애자 아들을 위해 미국의 60대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하고 나서 마침내 아들의 딸을 낳았다.



출산에 성공한 아들 부부 대리모 세실 엘리지(가운데)와 아들 매튜(왼쪽) 부부  
[AP=연합뉴스]

### ■ 연합뉴스 기사 갈무리

에서 찬반 논쟁이 일 정도였다.

진평연은 이 또한 차별금지법의 폐해로 연결시키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차별금지법은 가족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제재하는 법이 아니다. 이 일은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지법 옹호하는 '뉴조'기사에 대한 팩트체크(3)>(2020.7.24.)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61>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이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차별금지법은 가족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제재하는 법이 아니며, 이 일을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이 사안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만약 이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만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커플을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정자를 제공한 아들을 부로, 대리모인 조모를 모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머니가 신생아의 법적인 모가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적 지위의 문제, 상속의 문제 등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문제 된다.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남성 동성커플은 대리모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처벌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한 동성커플에게 자녀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고 따라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서는 이것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입양 또는 대리모, 인공수정을 통해 동성커플이 출산한 경우 공동친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 중 하나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 출산을 불허하는 것이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동성혼 불허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시정해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위 사례의 사실관계는 위 기사들과 동일하다.

## ② 프레임 체크

코람데오닷컴의 2020. 7. 24.자 기사는 “남성 동성커플은 대리모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처벌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가 허용되고 있지 않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위 법 제23조 제3항). 즉, 이 법이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는 법 조항의 문언 그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동성커플이든 이성커플이든 이 조항에 의하여 대리모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없다.

## 3)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했다?

### 가) 주장

#### ① 기독교일보 <연방대법원장도 동성결혼 합법화 비판 “법원이 입법기관인가? 일부다처제는 어떡할건가?”>(2015.7.30.)

<https://han.gl/Ch9pH>

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연방대법원장의 반대의견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유권자인 국민들과 주 정부가 내려야 할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빼앗음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것.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11개주와 워싱턴D.C.만이 투표와 입법절차라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절차상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동성결혼 문제를 놓고서는 연방대법원을 통해 주 정부가 동성결혼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압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

을 보여준 것.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또 이번 판결이 잘못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헌법에 기초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셈이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판사의 판결이 현행법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이뤄져도 된다는 견해다. 이에 반해 사법적 보수주의는 판사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법에 의존하여 판결하고 법의 제정은 입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앞으로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아버지, 어머니, 남자, 여자 등에 대한 정의를 놓고도 거대한 논쟁과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반대의견문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다수 대법관들의 확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절반 이상의 주들의 결혼법을 무효화했으며, 사회 기구들이 밀레니엄 시대에 맞게 인간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변화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이 동성결혼 허용을 바라는 미국인들 중 1명이라면 이번 판결에 대해 축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헌법이나 연방대법원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헌법에는 결혼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주 정부가 해석해야 한다. 동성결혼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연방대법원이 법안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기관이 아닌 이상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합법화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

역시 반대표를 던졌던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도 동성결혼 판결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을 향해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판결은 주 정부와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로 뽑히지 않는 대법관들이 권리를 확대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준다. 역사의 전통을 보아서도 그렇다”면서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의 전체 역사와 전통을 무시

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했는데, 이는 교만과 무지로 역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진정한 승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특히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다  
수의 대법관들이 왜 결혼이 두 사람 사이에만 제한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  
이 결혼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동성결혼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등의 합법화도 막  
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본 보편적인 정의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닌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많은 이들  
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동성결혼 반대의견문에 대해 사법부  
가 입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  
과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동성 결혼 합법화 후 수간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한겨레가짜뉴 스피해자모임 동성에 관련 해명 자료 분석⑨>(2018.10.1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3>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은 연방 국가인데 각 주가 결정해야 할 일을 연방대  
법원이 강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동성 결혼을 강제로 합법  
화할 경우 일부다처제의 승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곤란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로버츠 대법원장 주장일 뿐이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도 합법화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법을 제정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네덜란드를 비  
롯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 중 어디도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를 합법화  
한 곳은 없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동성결혼 합법화와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합법화를 연결 짓는 것은 존 로

버츠 대법원장과 기독일보 2015. 7. 30.자 기사의 주장이다. 일부다처제<sup>19)</sup>와 일처다부제<sup>20)</sup>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있으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에 그 때문에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와 같은 복혼을 합법화한 곳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면, 일부다처제 허용 아프리카 국가와 일부다처제 허용 아시아 국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위키피디아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D%98%BC>)

일처다부제는 인도의 토다족과 티베트 일부 사회에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 명단을 찾아보면,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A%B2%B0%ED%98%BC>

기본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 명단과 복혼(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국가 명단은 중복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는 총 24개국이고, 벨기에(2003년), 스페인, 캐나다(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노르웨이, 스웨덴(2009),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2010) 등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한 국가들 중 10년 이상 된 국가가 9개 국가나 된다.

#### 4) 프랑스에서 엄마, 아빠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 가) 주장

##### ① 중앙일보 <“엄마·아빠 대신 부모1·부모2“…佛하원, 법안 가결>(2019.2.15.)

<https://news.joins.com/article/23374213>

2013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프랑스가 학생들의 서류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없애고 '부모1' '부모2'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동성 부모가 있는 아이들의 차별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하원이 지난 12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표기를 쓰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다만 반대파들은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비인간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부모협회인 AFDH는 누가 '부모1'을 맡는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9) 가이아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남수단, 라이베리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에리트레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탄자니아, 카메룬,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등

20) 방글라데시, 보르네오, 브루나이,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리트 연합, 아프가니스탄, 예멘,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의 발레리 프티 하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제출된 행정 서류에 가족의 다양성을 뿌리 내리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전히 급식 동의서, 수학여행 허가서류 등에 존재한다며 이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프랑스에서 동성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당 소속의 한 의원도 이번 개정은 “존중과 존엄에 대한 문제”라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받지 못했을 때 어떤 성장을 이뤄낼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프랑스의 최대 학부모 연맹인 FCPE는 “매우 좋은 일이 벌어졌다”며 “종종 아동들의 왕따는 사회적 기준에 벗어나는 아이들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괴롭힘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당과 극우파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누군가는 내 생각이 구식이라고 하겠지만, 결혼한 연인이든 시민연대계약(PACS)을 맺은 연인이든 남-녀로 구성된 커플이 약 9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동성결혼반대 협회 등은 “이는 인간성의 말살”이라며 “어린이들은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 당수 마린 르펜은 “에마뉼엘 마크롱 행정부의 가면이 떨어졌다”며 그들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모1·부모2로 표기하겠다는 생각은 2013년 동성결혼 합법화 당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장-미셸 블랑케 교육부 장관 역시 이는 법제화로 이어질 문제가 아니라며 개정을 반대해왔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 ② THE TIMES < ‘Mother’ and ‘father’ to be banned on forms as French schools go gender-neutral>(2019.2.15.)

<https://www.thetimes.co.uk/article/mother-and-father-to-be-banned-on-forms-as-french-schools-go-gender-neutral-3pzlrcn6d>

The French parliament has voted to banish the words “mother” and “father” from official paperwork in the education system to tackle discrimination against gay parents.

Children’s documents will instead refer to Parent 1 and Parent 2. The move has angered conservatives and Christians who argue that it signals the country’s moral decline.

## 'Mother' and 'father' to be banned on forms as French schools go gender-neutral



Paperwork will refer to "Parent 1" and "Parent 2" rather than "mother" and "father"  
ALAMY

■ THE TIMES 기사 갈무리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정리한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이 사례의 사실관계는 관련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다.

#### ② 프레임 체크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 사례가 가정, 교육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프랑스 교육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학교 등록, 학생 등록, 부모 동의 등 모든 공문서에 부모1, 부모2라고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sup>21)</sup>. 즉 위 법 개정은 동성 부모를 둔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의 공문서 기재를 변경한 것이며, 가정이나 교육을 파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또한 프랑스의 위와 같은 법 개정은 차별금지법의 효과라기보다는 동성혼이 법제화되면서 동성 부부를 공적 문서에서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1) Mail Online 2019. 2. 15.자 기사 'France to replace 'mother' and 'father' with Parent 1 and Parent 2 on school forms to avoid excluding same-sex parents'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6709801/French-national-assembly-votes-remove-words-mother-father-school-forms.html>

### 3. 역차별 피해 발생 등 주장 관련

#### 가. 자의적 성별 변경 가능, 성범죄 증가한다는 사례의 검증

1) 캐나다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허용되는 제도를 도입한 뒤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하도록 허용하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에서는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더 저렴한 차 보험료를 받기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한 것이다. 100%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아주 쉽게 변경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것은 결국 성별결정 기준에서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의미다. 즉, 성별 결정이 심리적 성 결정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성별은 오로지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만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 ② 서울신문 <더 저렴한 차보험료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 전환한 남성>(2018.7.31.)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31601013&wlog\\_tag3=naver](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31601013&wlog_tag3=naver)

자동차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높은 요금이 불만이었던 한 20대 남성은 더 저렴한 차 보험료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에 따르면, 앨버타 주에 사는 남성 데이비드(가명, 24)는 지난 4월 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에 처음으로 자신의 보험 전략을 자세히 소개했다.

데이비드는 올해 초 새 차를 구입했고,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전복으로 입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데이비드의 운전 기록을 바탕으로 4517달러(약 505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경미한 충돌과 한 두 번의 속도위반 딱지를 떼인 데 비해 그에게는 과한 금액이었다.

그는 보험 중개인에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여자라면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3423달러(약 382만 5000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에서 25세 미만 남성 운전자들은 여성 운전자보다 더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 통계적으로 남성이 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 더 저렴한 차보험료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 전환한 남성

입력 : 2018.07.31 17:03 | 수정 : 2018.07.31 17:03

+ - ☰



▲ 왼쪽은 성별을 바꾸기 전 출생 증명서, 오른쪽은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후 받은 새 출생 증명서.

#### ■ 서울신문 보도 갈무리

하지만 이를 성차별로 인정한 데이비드는 화가 나서 그의 보험 중개인에게 서류상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포기를 몰랐던 데이비드는 앨버타 주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성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성전환 수술을 원치 않았던 그는 담당 의사에게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해 자신이 정신적으로는 여성임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받았고, 모든 필요 서류를 구비한 뒤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메일로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 새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그는 “꽤 충격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내가 체제를 부순 것 같은, 승리한 기분이 들었다. 서류상 성별 변화로 1년에 거의 1100달러(약 123

만원)을 절약했다”고 자랑하며 “허점을 이용했다. 난 생물학적으로 100% 남성이지만 법적으로 여성”이라고 말했다.

### ③ 국민일보 < “물질 이득 위해 성별도 갈아치우는 세상이라니...” >(2020.7.2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938&code=23111413&cp=nv>

전 세계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자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조건 역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성별 정정 조건을 바꾼 캐나다에서 이를 악용한 보험 사기 범죄가 2018년 여름에 일어났다. 자동차 보험료가 높은 것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캐나다 앨버타주에 살던 당시 24세 남성 데이비드(가명)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보험 전략을 자랑하듯 자세히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남성이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통계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등에는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2018년 초 새 차를 구입한 데이비드는 이 보험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 데이비드는 법적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했다.

물론 그는 보험료 부담을 더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전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은 전혀 원치 않았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이 정신적으로는 여성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성별 정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춰 정부에 제출했고,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심리적 변화에 기반을 둔 성별 정정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것은 결국 성별 결정 기준이 더 이상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는 개인의 심리임을 뜻한다. 성별 결정의 기준이 심리적 근거인 성정체성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성별은 오로지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한 학부모는 이렇게 탄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이들은 분열과 혼동을 느낍니다. 성별을 바꾸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 속의 방황이죠. 그러다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마침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심령 속에 담게 됩

니다. 물질의 이득을 위해 성별도 갈아 치울 수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0%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평생 군인으로 나라를 섬겼던 어느 장로님은 이렇게 우려했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다음세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험 사기뿐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될 것이 아니겠는가.”

간단한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을 거쳐 원하던 대로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된 데이비드는 성별 정정 후 이렇게 말했다. “마치 내가 체제를 부서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승리한 기분이었다. 난 생물학적으로 100% 남자지만, 법적으로는 여자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내려고 그렇게 성별 정정을 했다.”

지난 3월 16일 한국의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성전환에 관심이 많은 디지털 세대가 성전환 방법에 대해 검색하는 요즘, 우려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성별을 바꾸려면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앞으로 생식 능력이 없다’는 전문의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 환경 진술서 등 5가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는 ‘2명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전문의의 감정서나 성장 환경 진술서는 1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제출 가능’으로 변경됐다. 참고용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그밖에 ‘성전환 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와 성장 환경 진술서에 ‘신청인의 성장 시기별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세부 내용도 삭제됐다. 일시적인 마음의 동요가 아닌 오랜 기간 성별 정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쉽게 열리게 됐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③/트랜스젠더가 화장실 가는 게 차별금지법 폐해?>(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6>

이 뉴스는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아닌, 보험사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기행으로 봐야 한다. 데이빗 사례를 두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도 반발했으며, 캐나다 신민당(NDP) 스테파니 맥린 의원(MLA)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최대 14년 형에 처해지는 위증죄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을 전한 서울신문 보도 역시 “그의 행동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는 꼴”, “지금껏 변화를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동기에 의구심을 던지고, 전 과정을 경시하는 행위”라는 ‘트랜스 동맹 사회’ 전 회장의 입장, “그가 위증죄를 저질렀고, 최대 징역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앨버타 주 공무원의 입장을 덧붙였다.

### ②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2020.3.16. 시행)

성별을 정정하려는 사람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성전환 시술을 한 의사 소견서,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 의사의 진단서, 신청인의 성장환경 진술서와 가까운 사람 2명 이상의 보증서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③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⑧>(2020.8.2.)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3>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아닌, 보험사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기행으로 봐야 한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2015년에 앨버타주 인권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정체성’을 추가하였다. 이후 2018년에 성별 변경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생체 정보 통계법(Vital Statistics Act)의 생체 정보 통계법 시행령(Vital Statistics Information Regulation)이 개정되었다. 구 시행령에서는 성별 변경을 위해서 반드시 의사나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제16.3조 (1)).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이 성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의견서만 제출하도록 하였고(제19조 (1)), 18세 이상의 성

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 요건을 아예 삭제 하였다(제17조와 제18조).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어서, 사실상 성별 변경 요건을 모두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장 내지는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후속 관련 법령 개정의 일환이다. 이러한 성별 변경 요건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고 나서 보험사기 사건이 터졌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 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별 제도, 혼인 제도, 가족 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변경시킨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제9조와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다른 법령,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캐나다 앨버타주와 같이 성별 변경 제도를 바꾼다면 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외국의 성별정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가 법 앞에서 이를 인정받는 절차이다. 성별정정은 1972년에 스웨덴에서 최초로 인정되었고, 이후 1980년 독일에서 관련법을 제정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초창기에는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생식능력 제거수술과 외부성기 형성수술, 소위 성전환수술을 받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트랜스젠더에게 외과수술이 반드시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국제인권규범에 관점에서든 원치 않은 수술,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침해라는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졌다.

가령 유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는 2018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sup>22)</sup>에서 “법 앞에 동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는 다른 권리나 자유의 핵심 원칙이다”고 강조하면서, 법적 성별정정에 있어 모든 강제적인 요건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재 법적 성별정정에 있어 의사의 소견서 등 어떠한 서류나 법원의 심사 없이 본인의 진지한 진술서에 의해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소위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에 따른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2015년 아르헨티나가 「Ley de Identidad de Genero(성별정체성법)」을 제정

22) A/73/152, (2018. 7. 12.)

하여 최초로 자기결정에 따른 성별정정을 인정하였고, 이후 덴마크(2014), 몰타(2015), 콜롬비아(2015), 아일랜드(2015), 노르웨이(2016), 포르투갈(2018), 미국 캘리포니아주(2017), 미국 워싱턴주(2018) 등 각 국가와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령을 도입하였다.

한편 최소한 성전환수술 등 외과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역시 확립되어 있다. 2017. 4. 6. 유럽인권재판소는 성별정정에 있어 외과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정<sup>23)</sup>을 내렸다. 유럽의 인권단체인 트랜스젠더 유럽(Transgender Europe)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성별정정 절차를 둔 41개국 중 28개국이 성별정정에 있어 외과수술을 요구하지 않는다.<sup>24)</sup>

한편 위와 같은 국가들은 캐나다와 같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 가령 아일랜드의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15)는 성별정정에 어떠한 요건도 두지 않는 대신,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기결정에 의한 성별정정을 인정하면서, 다만 재정정 시에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 한국의 성별정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2004스42, 2009스117 결정)와 예규에 의해 성별정정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① 만 19세 이상일 것, ② 생식능력이 없을 것, ③ 성전환수술을 받았을 것, ④ 혼인 중이 아닐 것, ⑩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성별정정 절차를 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한국정부에 대해 ‘성별정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sup>25)</sup>

## ② 프레임 체크

### - 캐나다 사안의 본질은 남녀의 보험료 차이였다.

캐나다 사안의 본질적인 원인은 남성과 여성의 보험료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이 사안의 본질은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23) ECHR, AP Boy and Nicot c. France (Application Nobones 79885/12 52471/13 and 52596/13), 2017. 4. 16.

24) TGEU, *Trans Rights Europe & Central Asia Index 2020*, 2020. 5. 13.  
<https://tgeu.org/trans-rights-europe-central-asia-index-maps-2020/>

25) CCPR/C/KOR/CO/4 (2015.11.5)

대한 성차별의 문제이다. 이에 2011년 유럽사법재판소는 “통계적으로 남성이 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개인별 사고 이력 등 다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며, 남성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sup>26)</sup> 결국 이 사건에서 데이비드(가명)가 한 것은 제도를 악용한 것이긴 하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의 문제이며, 이러한 제도들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의 개선은 차별금지법 제정과는 별개이다.**

차별금지법 제4조가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의 발전 방향을 규정한 것이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법령, 제도가 즉각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이기에 이 조항은 국가가 이미 지켜야 할 헌법 준수 의무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한국의 법적 성별정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있기에 특별히 더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영국의 경우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 제정 이전에 이미 2004년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를 제정하여,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 역시 현재 차별금지법이 없지만 개별 법원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부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1 내지 4225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4. 6. 26.자 2014호파3341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9. 6. 5.자 2018브13 결정 등 다수). 즉,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의 개선은 차별금지법 제정과는 별개로 트랜스젠더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2) 미국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이후, 트랜스젠더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

26) 한겨레, 「유럽재판소 “보험료 성차별 부당”」, 2011. 3. 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66153.html>

## 가) 주장

### ①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201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격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연방법상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sex)’에 대한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16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국 각급 학교에 내린 성정체성에 따른 학교 화장실 개방 행정명령이다.

논란이 되었던 연방 수정교육법(Education Amendments of 1972)의 Title IX는 “미국에서 어느 누구도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성별(sex)을 이유로 하여 참여를 배제당하고,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기서 ‘성별(sex)’에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그리고는, 이 Title IX 조항에 근거하여, 전국 공립학교에 학생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 락커룸을 사용하도록 개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촉발된 미국 학교에서의 화장실 전쟁은 학부모, 여학생 대 트랜스젠더 학생 간의 소송전으로 확대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 행정명령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주도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7년에 미국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인용화장실(multi-user all-gender restrooms)을 설치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주 등은 2016년에 모든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미 육군은 여군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 군인과 샤워실, 탈의실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훈련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같이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곳도 있는데, 인권단체와 대기업, 스포츠 단체, 유명 스타들이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화장실 전쟁으로 격화됐다.

한편, 성별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허용을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랜스젠더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3월에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되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위스콘신주 드피어시에서는 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되어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후 일어난 사건이다.

## Gender-neutral toilets are forcing girls to skip school during periods because they feel unsafe, teachers say

Doctors and teachers have asked schools to put an end to gender-neutral washrooms to avoid any future harm to the girls

By Rachel Windsor

Updated On : 21:48 PST, Mar 12, 2020



■ ‘성중립 화장실 논란’ 보도한 한 외신 기사 캡처

<https://meaww.com/girls-skipping-school-gender-neutral-toilet-washrooms-same-sex-unisex-uti-infections-feminist>

## ② 국민일보 < “차금법 통과하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한 남자, 여성 화장실 갈 수 있어” >(2020.10.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90148&code=61221111&cp=nv>

차금법 제26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윤성) 변호사는 “공공기관 공원 학교 종교시설 공중화장실 등은 제26조에 언급된 시설물에 해당한다”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시설인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차금법이 입법화된 외국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은 성전환자가 5세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사건,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네 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③>/트랜스젠더가 화장실 가는 게 차별금지법 폐해?(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6>

'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자'라는 표현부터 틀렸다. (미국 LGBT 인권 운동가이자 트랜스젠더 당사자인 샬럿 클라이머(Charlotte Clymer)의 일화) 2018년 6월 Cuba Libre 식당을 이용한 클라이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남성 종업원이 뒤따라와 클라이머를 제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식당 직원은 클라이머를 찾기 위해 여자 화장실을 뒤졌으며 클라이머가 나오자 계속해서 신분증을 요구했다. 클라이머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D.C.의 인권법을 직원들에게 제시했다. D.C. 인권법에 따라 '개개인의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화장실 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막무가내였다.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클라이머는 경찰을 불렀고, 결국 이 식당은 2019년 1월 벌금 7000달러를 부과 받았다.

D.C. 법무장관은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의 성적 지향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uba Libre도 성소수자들에게 의미 깊은 6월(pride month)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사과했고, 공동대표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 직원을 해고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고충을 이해하는 인식 개선 교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시각으로 볼 게 아니다.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트랜스젠더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 차원에서 봐야 한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은 화장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2019년 <IZE>에 기고한 글에서 "201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41.1%가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미국의 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21.5%가 화장실 문제로 공공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누군가에는 너무도 당연한 화장실 이용이 누군가에게는 고심 끝에 도전해야 하거나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썼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상업·공공 시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지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⑧>(2020.8.2.)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3>

뉴스앤조이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상업·공공 시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보도하였다.

뉴스앤조이는 성중립화장실 설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는 하면서도, 이로 인한 성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되었다. 지난 2018년 11월에 위스콘신주 드피어시에서는 차별금지조례가 제정되어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후 일어난 사건이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성에게 역차별을 야기한다.

성중립화장실 보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에서는 트랜스젠더에게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후에, 화장실에서 5세 여아 상대 트랜스젠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의 모든 화장실에 경찰을 배치하거나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ONS)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4/2015년 1년간 총 9만9천 609건의 성범죄가 발생, 이 중 성폭행이 3만3천 431건이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33%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별금지법은 성중립화장실 설치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만 할 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조지아 주의 초등학교 사건은 성추행이 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먼저 조지아 주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는 사건은, 2018년 피해자의 학부모가 자신의 딸이 여성 화장실에서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학생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교육부 산하 인권청(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은 2020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인권청이 다른 학부모들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는 정책에 불안을 보이긴 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sup>27)</sup>

다만 학교 측이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미국 인권법 제9장(Title IX of Civil Rights Act)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위스콘신 주의 성추행은 사실이지만 가해자가 남자 고등학생이고 트랜스젠더가 아니었다.

위스콘신 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긴 한다. 다만 이 사건의 가해자는 18세의 남자 고등학생이고 트랜스젠더는 아니었다.

- 성중립화장실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몇몇 개별 사례가 아닌 전반적인 통계로 보았을 때 성중립화장실의 설치나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가령 2018년 미국 윌리엄스연구소는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화장실 내 범죄율에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안의 통과 전후로 범죄율에

27) Decaturish.com, Department of Education can't substantiate assault in Oakhurst bathroom, finds Title IX violations, 2020. 6. 23.

<https://decurish.com/2020/06/department-of-education-cant-substantiate-assault-in-oakhurst-bathroom-finds-title-ix-violations/>

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다.<sup>28)</sup>

2015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총 17개 교육구(총 6,000명의 학생 관할)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정책 시행 후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괴롭힘 등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9)</sup>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성중립화장실로 설치하고 보편적이지만 이들 국가에서 성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② 프레임 체크

### - 성별분리시설에 침입하는 사람과 트랜스젠더는 구분해야 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화장실 등 성별분리시설에 침입하는 남성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구분해야 한다. 전자의 행위는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sup>30)</sup>에 따라 범죄행위이며 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변함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화장실 등에서의 성범죄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 오히려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오히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화장실을 이용에 있어 법적성별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이용, 어느 쪽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화장실을 가지 않거나 이용 시 차별, 폭력을 당하고 있다. 2017년 트랜스젠더 26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31)</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7%가 공중화장실 이용 시 이용을 제지당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5.1%에 달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신분증이 아닌 외모, 행동거지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즉 화장실의 성별 구분을 엄격히 할 경

28) Amira Hasenbush, Andrew R. Flores and Jody L. Herman(2019), "Gender Identity Nondiscrimination Laws in Public Accommodations: a Review of Evidence Regarding Safety and Privacy in Public Restrooms,Locker Rooms,and Changing Rooms",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6(1).

29) Vox, Myth #3: Letting trans people use the bathroom or locker room matching their gender identity is dangerous, 2018. 11. 14.

<https://www.vox.com/identities/2016/5/13/17938102/transgender-people-bathrooms-locker-rooms-schools>

30)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김승섭 외(2018), 「오롯한 당신」, 숨쉬는 책공방, 92쪽.

우 여성스럽지 못한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여성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자 화장실 이용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2016년 5월 미국 월마트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짧은 머리의 여성이 다른 여성으로부터 욕설과 꺼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발생했다. 그녀가 트랜스젠더로 오인받았기 때문이다<sup>32)</sup>.

**- 성중립화장실은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성중립화장실은 어린 딸을 동반한 아버지<sup>33)</sup>나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sup>34)</sup>와 같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도 기존의 성별 분리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국 화장실에서의 성별 구분을 강화하고 이를 근거로 이분법적 성별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트랜스젠더만이 아닌 소위 여성스럽지 않거나 남성스럽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받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화장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3) 영국의 남성 강간범이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영국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 강간범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이감된 후 다수의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다. 스테판 우드라는 이 영국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

32) "Woman mistaken for transgender harassed in Walmart bathroom", newstimes, 2016. 5. 16.

33) 오마이뉴스, "'아빠, 들어와' 난 여자화장실에 간다", 2016. 6. 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7633&PAGE\\_CD=N0002&BLCK\\_NO=&CMPT\\_CD=M012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7633&PAGE_CD=N0002&BLCK_NO=&CMPT_CD=M0123)

34)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자료집, 2014

셔주의 뉴 홀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후 그 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남성으로서 강간과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2014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말하며 카렌 화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쓰는 등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7년 1월, 영국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며, 성별 변경절차가 간소화되도록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우드와 같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드는 총 4건의 성범죄 혐의 중 자신이 자백한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직후 남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됐다. 개인이 주장하는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영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성소수자를 차별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법제정의 위험성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설립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 ② 크리스천투데이 < “차별금지법 통과 시, 여성들 화장실도 마음 놓고 못가” >(2020.7.23.)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293>

정선미 변호사는 이 외에도 △2017년 영국 트랜스젠더의 교도소 성폭행 사건 △2017년 미국 코네티컷 주 여성 육상경기 트랜스젠더 출전 사건 △2014년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트랜스젠더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 파손 사건 △우리나라 여탕 입장 남성 ‘스스로 여성 인식’ 주장 사건 △2019년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과 다른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불허 차별’ 권고 사건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요건 제시는 인권침해 결정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은 그 심각한 폐해를 외국 사례들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 가족부 역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기관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체의 시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국민일보 <“차금법 통과하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한 남자, 여성 화장실 갈 수 있어” >(2020.10.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90148&code=61221111&cp=nv>

차금법 제26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윤성) 변호사는 “공공기관 공원 학교 종교시설 공중화장실 등은 제26조에 언급된 시설물에 해당한다” 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전용시설인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차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차금법이 입법화된 외국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은 성전환자가 5세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사건,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후 네 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④ 조선일보 <英, 동료 여성 수감자 성폭행한 트랜스젠더에 중신형>(2018.10.14.)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카렌 화이트(52)는 영국 웨스트요크셔주(州) 웨이크필드에 있는 여성 교도소 HMP 뉴홀에서 동료 수감자를 성폭행한 사실과 더불어 과거 여성 두명을 강간했던 일이 밝혀져 징역 최소 8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 중신형을 받은 그가 형을 감경받더라도 이 기간은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판사는 화이트가 ‘트랜스젠더 페르소나(정체성 가면)’ 를 이용해 취약한 여성들에 접촉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진평연 팩트체크③/트랜스젠더가 화장실 가는 게 차별금지법 폐해?>(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6>

이 사건은 ‘가짜 트랜스젠더’ 사건으로 영국에 알려졌다. 20년 전 아동 성추행, 2003년 여성 강간 전과를 지닌 남성 스티븐 우드는 2017년 노인을 칼로 찔러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는 수감 직후 자신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여성 캐런 화이트라면서 여성 교도소에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52세이던 그는 2017년 수감 당시 법적으로 남성이었으나 여성 전용 교

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수감 석 달간 그는 최소 재소자 두 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성폭력을 저질렀던 여성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기행을 일삼다 결국 정체성을 의심받게 됐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화이트가 '정체성 가면'(transgender persona)을 이용해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화이트는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례 역시 대부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영국 법무부는 재소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2019년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만들었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⑦>(2020.7.31.)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2>

뉴스앤조이는 “이 사례 역시 대부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영국 법무부는 재소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2019년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만들었다.” 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심리적 또는 성의 다른 특성의 변경에 의해 젠더 전환을 위한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혹은 부분 완료)한 경우에는 젠더 전환(gender reassignment)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제7조). 젠더 전환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하거나, 불허가 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스태판 우드라는 남성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2014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말하며 카렌 화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쓰는 등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폭행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후 그는 교도소에서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해 2017년 가을 영국 웨스트요크셔주의 뉴 홀 여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이후 그 곳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네 명 이상의 여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인 성별이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성 수감시설로 이감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국 평등법 때문이었다. 성별을 법적인 여성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전환 절차를 시작해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평등법의 차별 금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

건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법과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하는 평등법을 개정하라는 거센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영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가 설립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평등법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성별 정체성이 없고, 대신 젠더 전환이 있는 반면에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젠더 전환 차별금지는 어찌 됐건 성전환 절차를 시작해야 차별금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성전환 절차를 시작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스스로가 주장하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이 금지된다. 따라서, 장혜영 의원안이 영국 평등법 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법적 성별에 따라 수감한 것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726700).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차별 행위 조사 및 결정 권한을 주고 있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 영국과 동일한 교도소 성폭행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팩트체크

먼저 카렌 화이트가 여성 교도소에 수용된 것은 평등법 그 자체에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국의 교정정책에 근거한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인 2017년 당시 적용되던, 2011년 제정되고 2016년 개정된 영국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sexual Prisoners)」<sup>35)</sup>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성별정정의 유무 및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된다.

- 최초 구금시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성별에 따라 수용
- 수용자가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수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구금 후 3일 이내에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Transgender Case Board)를 소집하여, 수술여

35)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Agency Board, *Prison Service Instructions: 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gender Offenders*, (Ministry of Justice (UK), PSI 17/2016

<https://www.justice.gov.uk/offenders/psis/prison-service-instructions-2016>

부, 성별정체성에 따른 생활, 개명 여부, 위험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수용자의 배치를 결정

-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한 트랜스젠더 남성 수용자 : 남성 교도소에 수용

-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 : 여성 교도소에 수용, 다만 이것이 여성이 남성 교도소에 수용된 수준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남성 교도소에 수용. 이 경우 해당 수용자는 남성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로 대우받음

이처럼 영국의 교정정책은 기본적으로는 법적 성별에 따라 수용하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성별정체성에 따른 수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별정정 여부나 수술여부, 사회적인 성별, 다른 수용자에 대한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한다. 이에 따르면 카렌 화이트는 여성 강간의 전과를 지니고 있기에, 다른 여성 수용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 교도소에 수용되면 안 되었다. 즉, 이 사건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영국 법무부는 2020년 교정정책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사건 위원회가 다른 성별로의 수용을 원하는 수용자의 이송을 판단함에 있어 중앙 차원의 복합 사건 위원회(Complex Case Board)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코람데오닷컴은 영국이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개설한 것은 스스로 평등법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는 법적 성별은 여성이지만 다른 여성 수용자에 대해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기존의 교정 정책에 따르면 이들 수용자는 남성 교도소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용자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다. 또한 해당 시설은 임시 수용 시설로, 6개월마다 위험도를 체크하여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sup>36)</sup>

## ② 프레임 체크

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인 카렌 화이트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전과를 가진, 다른 여성 수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해는 오직 트랜스젠더 여성만이 가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 법무부의 2015년 범죄 통계<sup>37)</sup>에 따르면 여

36) HMP Downview, E Wing Policy version 16.0 for publication

<https://fairplayforwomen.com/wp-content/uploads/2020/03/E-Wing-Policy-Version-16.0-For-Publication.pdf>

성 수용자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은 1,000명 당 195건이며 그 중 심각한 것도 14건이었다.

한편 실제로는 많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는 다른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영국 법무부가 2019년 발간한 교정과 보호 관찰 서비스 관련 보고서<sup>38)</sup>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63명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있고, 129명이 남성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이 중에 119명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여성이라 답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의 대다수가 남성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용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야기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1명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남성 교도소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9)</sup>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가 남성 교도소에서 수용되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것에 대해 2011년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sup>40)</sup>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수용자들이 교정 시설 내에서 폭력의 위협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수용자의 위협도를 엄밀히 평가하면서 동시에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판단하여 수용자의 입소, 처우대상 결정, 수용동 지정 등을 결정하는 「성소수 수용자 수용지침 및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4)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했다가 성범죄 증가한 영국?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37)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s on Wome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5, 2016. 11. 2 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72043/women-and-the-criminal-justice-system-statistics-2015.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72043/women-and-the-criminal-justice-system-statistics-2015.pdf)

38) Ministry of Justice,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Offender Equalities Annual Report, 2019. 11. 28.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hm-prison-and-probation-service-offender-equalities-annual-report-2018-to-2019>

39) BBC, "Eleven transgender inmates sexually assaulted in male prisons last year", 2020. 5. 21.

<https://www.bbc.com/news/uk-52748117>

40) 한겨레, "트랜스젠더 수감중 자해 '국가 배상'... "심리불안 상태인데 가위 건네" 판결", 2011. 1. 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7064.html#csidxff5ff626e39dbf99e4723619f14bcde](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7064.html#csidxff5ff626e39dbf99e4723619f14bcde)

영국에서는 젠더승인법에 의해 18세 이상이면 젠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성범죄 증가율을 보였다.

## ②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심리적 또는 성의 다른 특성의 변경에 의해 젠더  
전환을 위한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혹은 부분 완료)한 경우에  
는 젠더 전환(gender reassignment)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차별이 금지된  
다.<sup>144)</sup> 젠더 전환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신청 후 취소하거나, 불허가 되  
더라도 그 전까지는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악용한 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성범죄가 증가하  
고 있는데, 2014/2015년 1년 간 총 9만9천 609건의 성범죄가 발생, 이 중 성폭  
행이 3만3천 431건이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33%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  
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인헤럴드 <살인, 성폭행 등 영국에서 강력범  
죄 늘어>(2016.1.25.) <http://haninherald.com/xe/local/2436687>)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영국의 성별인정법은 2004년에, 평등법은 2010년에 제정되었기에 2014년  
-2015년 성범죄의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영국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성범죄의  
수는 2009-2010년 50,006건, 2010-2011 : 53,940건, 2011-2012년 52,760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13-2014년 64,232건, 2014-2015년 88,402건으로 2014년 성범죄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그 이유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  
범죄를 기록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4  
년 경찰감찰관실(HM Inspectorate of Constabulary)은 성범죄의 상당수가 기록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성범죄 기록절차를 개선하고  
범죄자들의 과거 성범죄 이력 등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이에 따  
라 피해자들도 좀 더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기에 성범죄 통계가 증가한 것이  
다.

## 5) 캐나다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자녀 출생신고서 성별란에 ‘모름’ 기재 급증?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출생신고서 성별란에 '모름'을 기재하는 일도 일어났다.

#### ②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자녀의 출생신고서 성별란에 ‘모름’ 기재한 캐나다 트랜스젠더 캐나다의 한 싱글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제3의 성(젠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를 직접 출산한 후 아이의 출생 신고서를 작성할 때, 아이의 성별을 적는란에 ‘모름’ (unknow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당국은 아이의 성별이 ‘U(미결정 또는 미지정)’로 기재된 아이의 이름으로 된 의료카드를 발급하였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서구에서는 현재 신생아에 대한 성별 결정을 병원의 의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생아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이 아이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이익을 겪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제도는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제도 자체를 변경시키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도입시키며, 더 나아가 가정을 해체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서울신문 <자녀 출생신고서 성별란에 ‘모름’ 적은 트랜스젠더>(2017.7.4.)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04601003&wlog\\_tag3=daum](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04601003&wlog_tag3=daum)

캐나다의 싱글 트랜스젠더가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성별을 적는란에 ‘모름’ (unknown)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사로잡았다.

CBC 등 현지 언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롬비아에 사는 코리 도티는 지난 11월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아직 정확한 성별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성별은 모름’이라고 신고했다.

성전환자인 도티는 자신 역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지난 11월 친구의 집에서 아이를 직접 출산했지만, SNS에서는 덩수룩하게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티는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어떤 성별을 가졌는지 스스로 인지할 때까지 (각종 서류에) 성별을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당국 측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성별은 모름’이라고 적힌 아기의 출생신고서 등록을 거부했다. CBS에 따르면 당국은 “제 3의 성을 가지면 오히려 혐오 범죄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도티는 당국으로부터 아이의 이름으로 된 의료카드를 받았다. 해당 카드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 연도, 발급일자, 유효기간과 성별 등이 기재돼 있는데, 성별에는 남성(M)이나 여성(F)을 뜻하는 글자 대신 ‘U’가 새겨져 있다. 도티는 이것이 ‘미결정’ (undetermined), 혹은 ‘미지정’ (unassigned)을 의미하며, 아이가 우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조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코리 도티(Kori Doty)는 성별이분법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 person)이며, 출생증명서, 여권, 운전면허증, 사회보험번호 등의 모든 정부발급문서에서 성별(gender/sex) 표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활동가, 법률가, 변호사, 풀뿌리조직, NPO 등의 연대체인 Gender-Free I.D. Coalition<sup>41)</sup>(이하 GFID)의 일원이다. GFID에 따르면, 코리 도티를 포함한 8명의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는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인구통계청(Vital Statistics BC)을 상대로 2013년 이래 진정을 진행해왔다.

- 코리 도티는 2016. 8. 의료기관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아이는 의료적인 ‘생식기 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코리 도티는 아이의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아이의 출생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다. 코리 도티는 인구통계청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사법심사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출생증명서와 별개로 브리티시 콜롬

41) <http://gender-freeidcoalition.ca>

비아 주당국은 2017. 4. 성별이 ‘U’ 로 표시된 의료카드를 발급하였다.<sup>42)</sup>

## ② 프레임 체크

- 코리 도티와 GFID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연 공적 신원문서에 성별 표기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 코리 도티와 GFID는 인구통계청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해 사법심사를 제기하면서 “사회가 그동안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표시해왔던 이유가 있었다. 예전에는 남자들만이 투표할 수 있고, 남자들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남자들만이 상원에 앉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과거에는 출생증명서에 인종을 표기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듯이, 성별 또한 출생증명서와 분리하여 인종과 같은 개인 정보로 남겨두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sup>43)</sup>

- 한국에서도 2016. 1.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식별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성소수자단체, 여성단체, 정보인권단체 등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sup>44)</sup>

- 이와 같이 공적 신원문서에서의 성별표기 문제는 평등법 제정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촉발된 문제가 아니며, 평등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국가들에서 그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이다.

## 6) 미국 뉴욕은 31개 젠더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문제다?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2016년에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고, 2018년에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증명서에 F(여성), M(남성)과 함께 X(제3의 성)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42) <https://edition.cnn.com/2017/07/04/health/canadian-baby-gender-designation/index.html>

4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ul/06/the-systems-violating-everyone-the-canadian-trans-parent-fighting-to-keep-gender-off-cards>

44) <https://act.jinbo.net/wp/9228/>

미국 뉴욕주 뉴욕시 의회는 2002년에 트랜스젠더 권리 장전(The Transgender Rights Bill)153)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뉴욕시 인권조례(The 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를 개정하여 젠더에 따른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젠더(성별)정체성·젠더 표현과 관련하여 뉴욕시 인권조례에 대한 법집행 기준을 제정하였다.’ 젠더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뉴욕시 인권위원회 법집행 안내서 ‘는 젠더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시스젠더’란 출생 시에 부여된 성별과 젠더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 ‘젠더정체성’이란 사람의 내면 깊이 가지고 있는 젠더(gender)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데, 출생 시에 부여된 성별(sex)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사람의 젠더정체성은 남성, 여성, 남성도 여성도 아님, 또는 남성인 동시에 여성, 즉 넌바이너리나 젠더퀴어일 수 있다. 젠더정체성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표현과 같지 않다. 젠더정체성과 관련 있는 용어들은 에이젠더, 바이젠더, 버치, 여성, FTM, 펌, 젠더 다이버스, 젠더 플루이드, 젠더 퀴어, 남성, MTF, 트랜스 경험 남성, 팬젠더 또는 트랜스 경험 여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가는 게 차별금지법 폐해?!진평연 팩트체크③>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6>

진평연이 써 놓은 내용만 보면 뉴욕시에서 31개 젠더 중 원하는 성별을 선택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 뉴욕시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성별 정체성·표현에 대한 시행 가이드’를 찾아봐도 31개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가이드 2조 ‘정의’에는 이와 관련한 예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꼭 31개를 명시한 것도 아니다. 뉴욕시는 시스 젠더, 젠더, 젠더 표현, 젠더 정체성,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설명하며 예시로 MTF(male to female), 안드로진(남성과 여성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 같은 사례들을 나열했을 뿐, 1번부터 31번까지 번호를 붙이고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는 않았다.

뉴욕시인권위원회는 전통적인 호칭인 He/She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Ze’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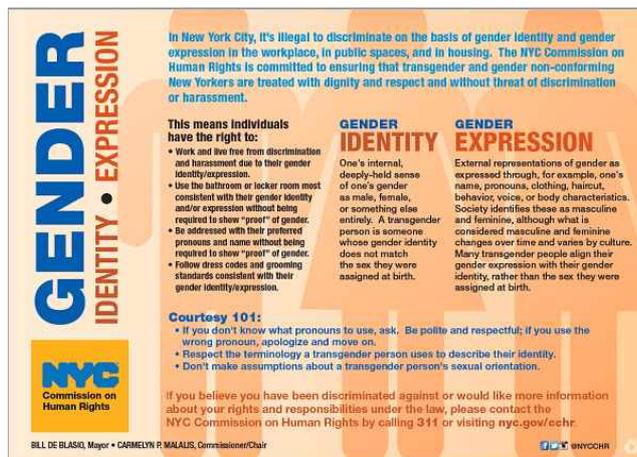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는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별도 호칭으로 불러 주기를 원하는데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부하면 인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욕시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단순 실수는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뉴욕시인권법(NYCHRL)이라 불리는 이 법 취지는 고용과 서비스 이용 등의 영역에서 인종,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개인의 사정과 환경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한국 차별금지법안에는 트랜스젠더를 별도 호칭

② 코람데오닷컴 <차금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⑦>(2020.7.31.)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2>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이 써 놓은 내용만 보면 뉴욕시에서 31개 젠더 중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한국 차별금지법안에는 트랜스젠더를 별도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든지 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고 보도하였다.



■ 코람데오닷컴이 게재한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31개의 젠더’

그런데,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용어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뉴욕시의 31개 젠더와 같은 ‘제3의 성’ 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남녀성별2분법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뉴욕시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뉴욕시는 관련 법률

개정하여 뉴욕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의 성별을 여성(F), 남성(M), 기타 젠더(X) 중 하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도입하는 법령 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혜영 의원안은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에 포함시켰다(제3조 제4호). 여기에는 언어적인 차별 즉, 소위 혐오표현도 포함된다. 따라서, 직장 등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할 경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심리적인 성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박탈,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뉴욕시 사례와 같이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성별정체성은 ‘성별정체성 또는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뉴욕시 인권위원회 법집행 안내서’에서 설명하듯이, ‘사람의 내면 깊이 가지고 있는 성별(gender)에 대한 감각’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정체성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깊은 내면의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이므로, 국가나 지자체는 이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표현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어떤 젠더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일이 없다. ‘2016년에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다’는 진평연의 주장은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발간한 다양한 자료 중 2015년에 만든 성별정체성·표현에 관한 카드형 설명자료<sup>45)</sup>를 오해하거나 오독한 것으로 보인다. 앞뒤 1장으로 만들어진 이 자료의 앞면에는 뉴욕의 직장, 공공장소, 주거임대와 관련하여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불법임을 설명하고,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다. 자료 뒷면

45) [https://www1.nyc.gov/assets/cchr/downloads/pdf/publications/GenderID\\_Card2015.pdf](https://www1.nyc.gov/assets/cchr/downloads/pdf/publications/GenderID_Card2015.pdf)

에는 전세계적으로 성별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들(총 31개)가 예시로 적혀있다. 이는 뉴욕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고 그를 존중하라는 의미이지,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이 31개 표현만을 인정한다거나 31개에 한해 어떤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한편 코람데오닷컴은 차별금지법안 중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고 정의한 조항을 두고 뉴욕시의 31개 젠더와 같은 ‘제3의 성’ 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차별금지’ 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시안은 모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을 ‘성별’ 과 별도의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 비추어보면 ‘성별’ 의 정의 규정 중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은 간성(間性) 내지 인터섹스(Intersex)[어느 용어를 주되게 쓸 것인지는 문서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 이하에서는 ‘간성’ 을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위 조항은 법을 통해 ‘분류할 수 없는 성’ 을 이유로 한 차별 즉, 간성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성별을 분류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은 문언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포함되므로, 간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성차별에 해당함이 자명하다.

## ② 프레임 체크

- 코람데오닷컴은 ‘분류할 수 없는 성’ 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반대하면서, 이는 ‘제3의 성’ 을 도입하는 것이고 ‘남녀성별2분법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간성(Intersex)의 존재와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 유엔은 간성을 ‘성해부학, 생식기, 호르몬이나 염색체 패턴 등의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 성징(性徵)이 전형적인 남성 또는 여성의 정의와 들어맞지 않는 사람’ 으로 설명하면서, 전체 인구의 0.05%~1.7%가 이러한 간성으로 태어난다는 전문가들의 보고를 인용하고 있다.<sup>46)</sup> 즉 인구 1000명 중 5명 내지 17명이 전형적인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성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인구학적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 그럼에도 성별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비과학적인 통념 때문에 간성인 사람들은 그동안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46) United Nations 'Free&Equal', Fact Sheet 'Intersex'  
[https://unfe.org/system/unfe-65-Intersex\\_Factsheet\\_ENGLISH.pdf](https://unfe.org/system/unfe-65-Intersex_Factsheet_ENGLISH.pdf)

간성 영아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생 직후 성별이분법적인 기존 등록체계에 맞도록 한쪽 성으로 강제 지정받는 외과수술을 받아왔고, 고문등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간성에 대한 이러한 비자발적인 외과수술이나 ‘성별을 고치려는 시도’ 등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고문 및 학대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A/HRC/22/53). 한국에서도 간성은 있을 수 없는 존재, 비정상적인 존재로 취급되거나 비하의 대상이 되어왔다. 2014년에는 자녀의 클라인펠터증후군 판정을 비관해 자녀를 먼저 죽인 후 자살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sup>47)</sup> 간성은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로 여러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간성의 존재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평등법 등의 법률을 통해 간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 코람데오닷컴은 뉴욕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의 성별을 여성(F), 남성(M), 기타 젠더(X) 중 하나로 표기하도록 한 뉴욕시의 조치를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공적 신원문서의 성별표기 문제는 평등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이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인권 이슈이다. 공적 신원문서의 이분법적인 성별표기는 앞서 본 간성을 비롯하여 트랜스젠더, 기존의 여성성/남성성의 성별표현을 따르지 않는 사람 등 성별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을 신분확인 필요한 중요 사회영역에서 계속 차별받거나 배제당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성별이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관공서, 은행, 보험, 부동산 계약, 핸드폰 개설 등 신분증명이 필요한 일상적 용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66.7%(60명)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일상용무를 수행함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하였고,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63.3%(38명)는 그러한 부담 때문에 전화 가입, 보험 가입 및 상담, 선거 투표, 은행 방문 및 상담, 여권 발급, 주택 거래 등의 용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sup>48)</sup>

- 공적 신원문서의 이분법적인 성별표기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분법적인 성별표기로 인한 시급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 운전면허, 의료카드, 출생증명서 등의 공적 문서의 성별란에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선택지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독일의 신분관계법은 출생신고 시 아이의 성별

4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41223150817235623>

48) 장서연 외(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189면 참조

로 ‘여성’, ‘남성’ 외에 ‘미기재’ 나 ‘다양’ 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2017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것이다. 독일 신분관계법은 2013년부터 출생한 아이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의 성별란을 빈칸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여” 또는 “남” 외에 제3의 성을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sup>49)</sup> 위 결정은 “독일기본법은 성에 관한 신분관계를 이원적으로만 결정하도록 명하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 외의 또 다른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다” 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독일 외에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의 여러 주, 인도, 파키스탄, 몰타, 네팔 등 다양한 국가와 지방 정부들이 신분증명서와 여권 등에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선택지를 두고 있다. 성별란에 제3의 선택지를 두는 방식의 한계점도 지적된다. 위의 방식은 기존의 성별이분법적 표기를 그대로 둔 채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만을 분리하여 낙인찍는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적 문서에서 불필요한 성별 표기 자체를 없애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 방향이라는 것이다. 제3차 세계 인터섹스 포럼(International Intersex Forum)은 2013년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래에는 인종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성별(sex or gender) 또한 누구에게든 출생증명서나 신분증에 표시되는 범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sup>50)</sup> 이에 따라 이분법적인 성별표기로 인한 차별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적 문서에서 불필요한 성별표기를 없애는 방향의 제도 개선과 노력 또한 세계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sup>51)</sup> 이와 같은 공적 문서에서의 성별표기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시급하게 고민되어야 할 주요한 인권 이슈의 하나이다.

## 나. 여성 역차별 피해 사례 검증

### 1) 트랜스젠더 때문에 여성 격투기 선수 두개골 골절?

49) BVerfG, Beschluss vom 10. Oktober 2017 - 1 BvR 2019/16 -, BVerfGE 147, 1-31.

50) <Public Statement by the Third International Intersex Forum>

<https://ilga-europe.org/what-we-do/our-advocacy-work/trans-and-intersex/intersex/events/3rd-international-intersex-forum>

51) 지자체 관리 서류 중 성별이 표시되는 서류 369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성별정보가 불필요한 139개 서류의 성별표기를 폐지한 일본 오오사까부의 사례{한국성소수자연구회(2019),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창비, 22-23면 참조}

## 가) 주장

### ①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은 2014년에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인 팰론 폭스는 미 해군에서 근무한 후,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였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된 그는 2014년에 미국에서 열린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선수인 타미카 브렌츠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 ②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이유>(2020.7.29.)

미 해군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하고 격투기 선수가 된 후, 여성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일도 일어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해 스포츠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 나) 기존 팩트체크

### ① 뉴스앤조이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가는 게 차별금지법 폐해?!진평연 팩트체크③>(2020.7.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6>

이 뉴스는 사실이다. 미국 여성 격투기계에서 유명했던 트랜스젠더 팰론 폭스(Fallon Fox) 이야기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폭스는,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게이로 생각했을 뿐 트랜스젠더 개념이 있는지 몰랐다. 해군에 복무하고 여자 친구와 결혼해 아이도 낳은 그는 뒤늦게야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았다. 결국 수술비를 모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이후 격투기에 도전한다.

폭스가 여성 격투기 세계에 뛰어들자 논란이 일어났다. 격투기 해설가와 선수들은 이미 폭스가 남성으로서 2차 성징까지 거쳤고, 뼈 밀도 등 신체 구조가 생물학적 남성의 형태이라서 불공정한 게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4년 타미카 브렌츠라는 선수와의 시합이었다. 브렌츠는 이 경기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이마를 7바늘 꿰매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폭스는 다른 여성 선수와의 싸움에서 패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은퇴 후에도 TERF(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페미니즘의 한 부류) 진영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트랜스젠더 경기 출전 여부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각 협회와 스포츠 기구 심사에 따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4년 트랜스젠더의 경기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트랜스젠더로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여성에서 남성(FTM)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남성에서 여성(MTF)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를 일정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코람데오닷컴 <차별법 옹호하는 ‘뉴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⑥>(2020.7.30.)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1>

뉴스앤조이는 “트랜스젠더 경기 출전 여부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각 협회와 스포츠 기구 심사에 따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4년 트랜스젠더의 경기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성전환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트랜스젠더로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여성에서 남성(FTM)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남성에서 여성(MTF)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를 일정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아직은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스포츠 경기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남성 경기나 여성 경기 중 하나에 출전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성별 변경 요건이 무엇이냐가 문제 되고, 차별금지법이 작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성전환 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차별이 된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제9조와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해야만 한다.

뉴스앤조이가 언급한 IOC의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은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전환 수술을 포함하고 있는 각국의 국내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경기 출전 자격 중 성별 요건에 대한 국제 스포츠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뉴스앤조이가 언급한 대로 뼈 밀도 등 신체 구조가 생물학적 남성의 형태인 트랜스젠더가 여성 선수와 유도, 권투, 태권도 등 비교적 상해의 위험성이 큰 경기를 할 경우 여성 선수의 안전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또한, 기타 경기에서도 경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문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임의로 성별을 바꾸어 경기에 출전하는 부정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IOC의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은 남성 호르몬 수치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성별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2011년에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리즘) 차별을 금지하는 코네티컷주 차별금지법(An Act Concerning Discrimination(Public Act No. 11-55)이 제정된 이후, 코네티컷주 청소년 육상경기 연맹(CIAC)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트랜스젠더 방침을 제정하게 된다. 동 방침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의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방침이 제정된 후, 2019년에 열린 코네티컷주 여성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총 15차례 우승을 독차지 하게 된다. 트랜스젠더에 의해 피해를 본 여자 육상선수 3명과 학부모들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에게 역차별을 야기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에서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육 분야 차별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가 가능하게 되고, 외국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펠런 폭스(Fallon Fox)가 타미카 브렌츠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펠런 폭스가 타미카 브렌츠의 두개골에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다. 다만 펠런 폭스는 2006년에 방콕에서 성 재지정 수술(gender reassignment surgery; 성확정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이라고도 함)을 이미 받은 바 있는 선수이다.

- IOC의 기준이 각국의 국내법과 충돌할지 여부

IOC의 기준에 따르면 트랜스여성은 최소한 4년 이상 참가를 원하는 성별을 정체화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수 본인 혈청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대회 참가 직전 12개월 간, 그리고 여성 경기에서 적격성을 요하는 기간 동안 10nmol/L 이하로 유지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대로 트랜스남성은 제한 없이 남성 경기에서 뛸 수 있다(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Consensus Meeting on Sex reassignment and Hyperandrogenism>, November 2015, 제2면).

미국의 경우 트랜스여성이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각 주마다 기준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 등도 요하지 아니하고, 어떤 주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요하며, 어떤 주에서는 수술을 요구하고, 어떤 주에서는 치료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별정체성에 따른 참가를 불허한다. 영국은 IOC와 마찬가지로 혈중 호르몬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United Kingdom Athletics, <Policy and Procedures on Transgender People in Athletics Competitions>, 2018, 제6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우 별도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관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등장하여 논의가 시작된 국가에서는 IOC의 기준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엄격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법상 체계화된 규정을 만드는 단계에는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OC의 기준과 각국의 국내법 간 충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성전환 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코람데오닷컴은 근래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안 제4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p> <p>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위 규정은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을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차별금지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의 범위는 고용,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에 관련된 직간접적 차별에 한정되어 있고 성별 정정 기준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과정에서 수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② 프레임 체크

### - 웰런 폭스의 예시가 적절한지 여부

UFC 선수인 Karolina Kowalkiewicz 역시 2020. 2. 22.경 Xianon Yan 선수의 발차기로 인하여 두개골에 부상을 입었다. 2020. 3. 8.경 UFC에서 Jedrzejczyk 선수 역시 이마가 부풀어오를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위 선수들은 모두 여성으로 패싱되는 선수들이고, (적어도 현재까지) 트랜스젠더로 밝혀진 바도 없다.

결국 UFC를 포함한 MMA(Mixed Martial Arts) 경기에서는 부상 위험이 대단히 높고, 그 과정에서 머리와 같은 취약한 부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여성 선수 간의 경기에서도 상존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웰런처럼 성 재지정수술을 거친 트랜스여성의 경우 여성 선수보다 반드시 기량이 탁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웰런이 트랜스여성이라는 사실이 부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부상을 입힌 당사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여성을 여성의 경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운동계의 관계

상술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재하려는 차별의 범위에는 운동경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혜영 의원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제재하는 차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율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sup>52)</sup>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트랜스젠더 선수를 어느 경기에 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52) 2017년에 관련 문제제기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지적하였던 기사로는 SPORT MEDIA SIRI, “[SIRI'S FOCUS: 특집 기사]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2017. 4. 9. 참조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안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공백으로 볼 일이다.

## 2) 트랜스젠더 때문에 육상 경기에서 여성 선수에게 피해?

### 가) 주장

#### ①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16세의 촉망 받던 청소년 여자 육상선수인 셸리나 소울은 2019년 2월에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55미터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대신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셸리나 소울은 코네티컷 주의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했다. 2017년부터 코네티컷 주는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경기에 출전하도록 허용해 왔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셸리나와 다른 두 명의 여학생들을 대리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셸리나는 2017년 5월에 근육질의 체구에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육상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기를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아니었으나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 해에는 남자 유니폼을 입고, 여자 경기에 출전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셸리나와 다른 여자 선수들이 100 미터 경주에서 2/3 지점에 있었을 때, 두 명의 남자 선수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른 남자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트랜스젠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셸리나와 그 아버지에게 대해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학 진학 시 좋은 추천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협박하였고, 언론들도 그들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코네티컷주에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들은 실내·실외 단거리 경기에서 무려 총 15차례나 우승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8)</sup> 2011년에 코네티컷주 차별금지법인 'An Act Concerning Discrimination(Public Act No. 11-55)'이 '성별정체성과 젠더 표현(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정이 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트랜스젠더에 의해 피해를 본 여자 육상선수 3명과 학부모들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경기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0년에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한다

면 여성 운동경기는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9년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안은 민권법상의 ‘성별’에 젠더정체성이 포함되도록 용어를 재정의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기존 팩트체크

없음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셀리나 소울이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트랜스젠더 선수들 때문이었는지 여부

셀리나 소울이 트랜스여성 선수인 테리 밀러(Terry Miller)와 안드레야 이어우드(Andraya Yearwood)와 더불어 55미터 육상경기에 출전한 것은 사실이며, 위 육상경기 종료 후 소울은 호르몬 요법을 거치지 않은 트랜스여성 청소년이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코네티컷의 지침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셀리나 소울은 문제를 제기한 당시의 경기에서 8등을 했고, 트랜스여성 선수 두 사람이 없었더라도 6등을 할 예정이었다.

- 셀리나 소울에 대해 코치가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셀리나 소울과 그 부모는 콜린스 코치가 그들에게 보복(retaliation)을 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대학 코치들에게 우호적 보고(good report)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Office of Civil Rights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콜린스와 다른 코치들을 조사한 후 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고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 ② 프레임 체크

- 트랜스여성의 기량은 지정성별 여성보다 반드시 탁월한지 여부

조안나 하퍼(Joanna Harper)는 트랜스여성이자 의학물리학자이고, 달리기 선수이기도 했다. 하퍼는 10km 달리기 대회에서 호르몬 치료 이전에 비하여 5분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이를 계기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여성 선수의 달리기 기록을 모아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결과, 트랜스여성의 기량은 여성의 경기력 범위 이내에 있었다.<sup>53)</sup>

그 외에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적절하게 연구하여 트랜스여성 선수가 지정성

별 여성 선수보다 기량이 탁월함을 입증한 연구 작업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54)</sup>.

#### -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

transathlete.com에 따르면 미국의 16개 주가 호르몬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쿼어 친화적 정책을 도입한 상태이고, 14개의 주가 호르몬치료나 공적 기록 등을 요구하되 트랜스여성을 여성 경기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가령 일리노이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의료 기록(호르몬 치료, 성 재지정 수술, 상담 등) 등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일리노이 고등학교 연합(Illinois High School Association)에 보내고 IHSA 측은 이를 검토하여 학생의 참가 여부를 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일리노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sup>55)</sup>, 호르몬 요법 등을 요구하지 않는 쿼어 친화적 정책을 취하지 않는 주에서도 인권법 내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gender identity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즉,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주 사이에서도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경기에 참가시킬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법률안이 입법되지 않는 이상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와 관련된 논의는 공백으로 남게 되는데, 현재의 장혜영 의원 등의 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 - 지정성별 여성을 둘러싼 호르몬 논의

관점을 바꿔서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정성별은 여성이었으나 호르몬 수치가 높았던 경우가 발견되었다. 캐스터 세메냐(Caster Semenya)를 포함한 몇몇의 지정성별 여성 선수들이 혈중 안드로젠 농도가 높았고, 이로 인해 대회 출전에 제약을 받았다. 세메냐에게는 자궁과 난소 대신 체내에 고환이 있었고 다른 지정성별 여성 선수 네 명에게는 5알파-환원효소 결핍증이 있어 XY 염색체가 있었다.

같은 장벽에 인도의 듀티 찬드(Dutee Chand)는 지정성별 여성이었으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너무 높아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체내 테스토스테론이 일정 부분 경기력에 도움이

53) Haper, 2015, 최강, “성전환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은 정당할까”, 한겨레, 2019. 2. 27.에서 재인용.

54) Hilton&Lundberg 등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 연구들은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이 사안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논조에 대해서는 Gillian R. Brassil and Jeré Longman, The New York Times, “Who Should compete in Women’s Sports? There are ‘Two Almost Irreconcilable Positions’”, 2020. 8. 19. 참조.

55) <https://www.equalityillinois.us/issue/transgender/>

되긴 하지만 영양상태 등 다른 경기력 향상 요인보다 명백히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아 찬드의 손을 들어주었다.<sup>56)</sup>

이와 같은 논의는 지정성별이 운동 선수의 경기력과 관련해서 생각만큼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사는 염색체나 체내 고환을 확인한 뒤에야 영아의 성별을 지정하지 않고, 향후 체내 안드로젠 농도가 어떨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정성별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지정성별 자체가 편의적으로 부여되는 측면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특정 선수들을 경기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 3) 평등법 도입되면 수간 합법화?

#### 가) 주장

#### ①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한가모),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 캐나다에서는 삽입 행위를 제외한 동물들과의 성행위가 합법화되었다.
- 독일은 지난 1969년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 수간을 합법화했다.
-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물매춘이 불법인 가운데 덴마크는 외국인들이 동물섹스관광을 올 정도로 수간이 성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 덴마크 윤리위원회가 동물의 특정부위 외과치료의 17%가 인간과 동물의 성관계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할 만큼 심각했다

#### ②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을 때, 이 성적 지향에 동성애 뿐 아니라 양성애, 동물 성애(수간), 소아성애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 ③ 스카이데일리 <동성애, 역천의 형벌(上·질병)/ 개인·사회 비참한 최후 부르는 동성애의 목적 ‘변태적 쾌락’>(2020.9.28)

56) 최강, 한겨레, “여자로 태어나 자랐어도...남성호르몬 많으면 여성이 아니다?”, 2018. 12. 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2338](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2338)

다수의 의학전문가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기에는 질병 확산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동성애는 첫 만남 자체가 ‘사랑’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조건이 붙는 데다 쾌락이라는 목적을 좇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염 원장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의 30~40%가 단순 동성 간의 항문 섹스를 넘어선 가학적, 변태적 성도착증에 빠진다고 한다. 동성 간의 항문 섹스 자체가 말초신경을 크게 자극하는 행위인지라 더욱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항문에 주먹과 팔을 넣는 ‘피스팅’ 섹스를 비롯해 동물과의 섹스인 ‘수간’으로도 발전한다고 한다

#### ④ 국민일보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성에 관한 본질 침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 희생시키면 안돼” >(2020.1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0494&code=23111111&cp=nv>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을 남녀의 성과 함께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로 규정한다. 양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도 인정하고 전통적 윤리 가치에 반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동성혼도 가능하게 만드는 등 반성경적 요소를 담고 있다

#### ⑤ 국민일보 <여성 경기에 성전환자 선수 출전… 남의 나라 일 아니다>(2020.10.1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0167&code=23111111&cp=nv>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약감시기구인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가 2009년 일반논평 제20호에서 ‘성별 정체성이 사회권 규약상의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반논평 제20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 제20호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은 왜 포함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⑥ 미래한국 <[이슈분석] ‘포괄적’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해야>(2020.11.14.)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47>

정의당안 제2조 4항에서 차별사유로서의 성적지향을 규정하면서 ‘양성애 등’ 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적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와 수간(동물과의 성행위)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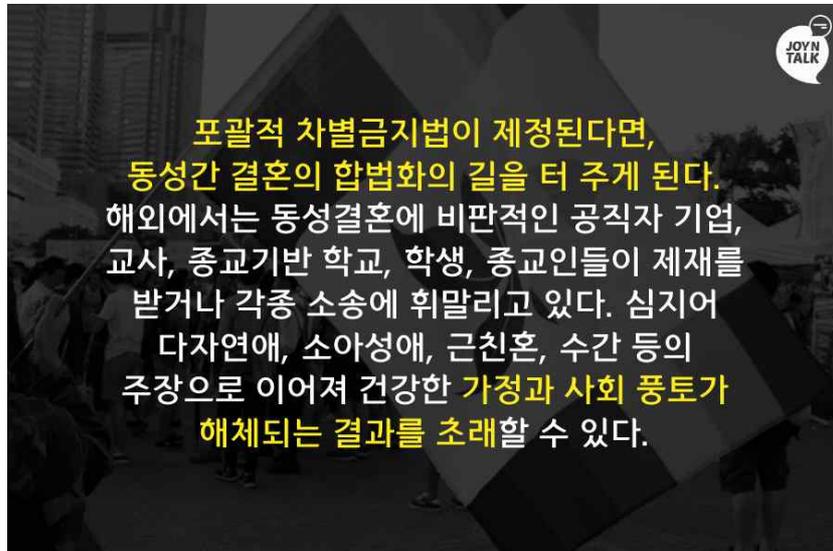
## ⑦ 여타 기사 사례

- 뉴스1 <독일 '동물과 성행위 금지' 법안 추진>(2012.11.29.)

<https://www.news1.kr/articles/?914522>

- 국민일보 <인간과 동물간의 성관계(수간) 천국 덴마크, 오는 7월부터 처벌...아직도 더 있다>(2015.5.1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35466>



■ '수간 합법화' 언급한 CTS 카드뉴스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18&dpid=265913>)

## 나) 기존 팩트체크

① 뉴스앤조이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 동성애 관련 해명 자료 분석 ⑨>(2018.10.19.)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3>

합법화는 “법령이나 규범에 맞도록 하다”는 뜻이다. '수간 합법화'라고 하면, 국가 법에 “수간을 해도 된다“, “수간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가야 한다. 이는 단지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수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는 나라는 있어도 수간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게다가 위에 제시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동성 결혼과 수간 합법화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

상기 사례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남성이 여러 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중 동물과 관련한 것만 무죄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무죄가 된 근거는 '삽입 없는 성행위'였다. 따라서 이 글은 캐나다에서는 동물과 삽입 없는 성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상기 사례는 이 자료를 소개하면서 "200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는 2016년 수간을 합법화했다"고만 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동물에게 성기를 삽입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수간은 여전히 불법이다.

한가모가 두 번째로 제시한 자료는 독일에서는 수간을 불법화하려 하고, 해외 일부 나라는 여전히 수간이 합법이라는 내용의 기사다. 이 자료들 역시 동성 결혼과 수간의 상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가모가 인용한 <뉴스1> 기사에는 "독일은 지난 1969년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 수간을 합법화했다"고 써 있다. 독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한 건 2017년이다. 게다가 현재 독일에서는 수간이 불법이다.

2018년 10월 현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를 연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3년), 스페인·캐나다(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노르웨이·스웨덴(2009년), 포르투갈·아이슬란드·아르헨티나(2010년), 덴마크(2012년), 프랑스·브라질·우루과이·뉴질랜드(2013년),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2014년), 룩셈부르크·미국·아일랜드(2015년), 그린란드·콜롬비아(2016년), 핀란드·페로제도·몰타·독일·호주(2017년).

이들 중 미국 5개 주(와이오밍, 뉴멕시코, 워싱턴D.C,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에서는 수간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 핀란드는 현재 동물이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삽입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개정 동물복지법은 수간을 금하고 있다. 캐나다는 삽입 없는 동물과의 성행위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수간이 불법인 나라 대부분이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수간을 불법화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동성 결혼 합법화 10년 뒤, 벨기에와 아이슬란드는 4년 뒤, 스페인은 10년 뒤, 덴마크는 3년 뒤 수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가모가 해명 자료로 제시한 ②에 '참조 기사'로 명시된 <국민일보> 기사가 덴마크 사례를 담은 기사다.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합

법화하기 전 범으로 수간을 금지했다.

세계에는 동성 결혼과 상관없이 수간이 용인되는 나라도 있다. 최근 동성 결혼 합법화를 저지한 루마니아에서 수간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헝가리도 마찬가지다. 극우 성향의 헝가리 정권은 '젠더'를 학문이 아닌 이념으로 봐야 한다며 대학이 자유롭게 젠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두 나라는 전통적 가족의 가치 수호를 신념으로 삼고 동성 결혼 저지에 앞장서고 있지만, 수간은 제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일본도 수간을 제재하는 법이 없다.

##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수간을 합법화한 나라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예시로 제시된 캐나다 법원 판결은 여러 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해 동물에 관한 부분이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R. v. D.L.W., 2016 SCC 22).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15991/index.do>

이 사건에서 동물에 대한 기소가 무죄가 된 이유는 '삽입이 없다'는 점이였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유사성행위에 대한 규율이 한 때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캐나다의 경우 동물에 대해 삽입 없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해 판결을 놓고 "캐나다는 2016년 수간을 합법화했다" 주장은 옳지 않으며 당시 캐나다에서도 동물에 대해 성기를 삽입하여 고통을 줄 경우 처벌될 수 있었다. 이후 캐나다는 2019년 Bill C-84 법안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https://lop.parl.ca/sites/PublicWebsite/default/en\\_CA/ResearchPublications/LegislativeSummaries/421C84E#ftn3](https://lop.parl.ca/sites/PublicWebsite/default/en_CA/ResearchPublications/LegislativeSummaries/421C84E#ftn3)

독일은 1969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외에는 동물에 대한 수간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불법이 되었다. §

[https://www.nytimes.com/2013/02/02/world/europe/german-legislators-vote-to-outlaw-bestiality.html?\\_r=0](https://www.nytimes.com/2013/02/02/world/europe/german-legislators-vote-to-outlaw-bestiality.html?_r=0)

덴마크 또한 수간은 2015년 이후 불법으로 규정 되었다.

<http://www.bbc.co.uk/newsbeat/article/32411241/denmark-passes-law-to-ban-bestiality>

이상과 같이 과거 수간을 처벌하지 않았던 국가가 존재하나, 최근 들어 처벌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의 합법화에 따라 수간이 합법화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한 처벌, 또는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와 수간의 처벌과는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단순히 시간 순서만 따진다면 오히려 2000년대 들어 동성결혼을 인정한 국가들이 이후 수간을 형사 처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프레임 체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성적타락'으로 보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동성애와 수간, 시체성교, 소아 성애 등 여타 다양한 불법적 성행위의 인정여부가 연관되어 있으리라는(또는 연관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성인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이뤄지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수간, 시체성교, 소아 성애와 같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와 비교하여 합법성을 논하는 것은 것으로 합리적인 논의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성적타락'이라는 관점 하나로 이들을 연결 지어 위험성을 주장하는 시각은 아무런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간과 관련하여 제시된 캐나다 판결은 수간에 대해 처벌규정이 미비한데 기인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당연한 판결일 따름이다. 이를 두고 '합법화'라는 기사제목을 붙이는 것은 입법과 사법조차 혼동한 주장에 불과하다. 동성애, 동성 결혼 등의 인정 여부와 관련 없이 수간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오히려 처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를 성적 타락으로 규정짓는 시각 또한 종교 경전의 일부 내용으로 사회 현상을 재단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4)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 가) 주장

#### ① <차별금지법의 해외 적용 사례>(2020.6.22. 조영길 변호사)

성적 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군형법 조항은 자연스럽게 폐지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 2010년에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2차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형태로 입법이 된 후, 2013년에 동성혼인법(Marriage(Same Sex Couples) Act 2013)이 제정되어 동성혼이 합법화 되었고,

2016년에 군사법(The Armed Forces Act 2016)이 개정되어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는 단계를 거쳤다.

## ②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단행본)

군형법은 군인 간에 항문성교 등 동성 성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지 동성애자라는 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공식화했다. 2011년의 미국보다 더 빠르다. 다만, 군인이 다른 군인과 항문성교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군형법 제92조의6이다(군인이 민간인과 동성 성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성 군인 간 성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동성 군인간 성행위 처벌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크리스천투데이 <“CTS·극동방송 경고, 표현·언론·종교 자유 동시에 침해”>(2020.11.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732>

그는 자신이 방송 도중 “성폭행 행위가 벌어졌을 시 (성폭행 가해자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 이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고 발언했던 데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관련 모든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재하는 곳이 군대”라며 “그런데 포차법 제4조에는 다른 법률 및 제도도 이 법령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포차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제재하는 군형법이 자동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주장할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 방심위원이 “동성애 반대 교육은 원래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마치 포차법이 벌써 통과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그런 면에서 징계는 포차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 ④ CTS <차별금지법, 교회·군대 등은 괜찮나?>(2020.7.10.)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66035>

앵커 : 지난 시간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수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음세대에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앵커 : 시민사회단체와 교계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회와 군대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의안 발의 최소인원을 채워 발의한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시민 교계 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교계단체들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고 말합니다.

전화int 주요섭 공동대표 /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는 설교하는 자리에 참석한 동성애자에게는 괴롭힘 또는 차별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며, “그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고 지적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손해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해마다 2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입대하는 군대 내에서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이 사문화 되고,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가 합법화 할 수 있다” 고 우려합니다.

전화int 김영길 소장 / 바른군인권연구소

지난 13년 동안 6번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 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



■ CTS 보도 화면 갈무리

나) 기존 팩트체크

없다.

다) 다시 쓰는 팩트체크

### ① 팩트체크

- 영국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가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원인이었는지 여부

우선 짚어둘 것은, 영국의 2016년 군법(Armed Forces Act)에서 개정된 내용은 해임이 아니라 강제전역(administratively discharged from the armed forces)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에는 군법 146조 및 147조에 의거, 영국 군에서 동성 간 행위(homosexual act)를 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전역당할 수 있었고 이는 군법 제146, 147조 제정 당시만 해도 국가 정책상 호모섹슈얼리티가 군역 이행과 병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 개정은 이를 시정하였는데, 그 개정사유는 위 국가정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었다고 국가정책이 폐지된 이유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즉,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영국이 군 내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강제전역시키지 않는 이유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으로 인한 것이다.<sup>57)</sup>

- 군형법 조항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폐지의 수순을 밟을 것인지 여부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해당하는 조항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거론되듯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차별’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2001. 11. 25.자로 최초로 시행되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불이익한 대우를 차별로 금하고 있었을 당시부터 내려진 것이다.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은 네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쉽게 뒤집힐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비단 포괄금지법의 제정만을 이유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위 조항의 폐지 가능성 검토를 권고한 사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에서 위 조항의 폐지와 이행사가 보고를 강경 권고한 사실, 위헌의견을 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온 사실 등이 누적된 결과

57) Armed Forces Act 2016 explanatory notes, chapter 21, 제15면.

일 것이다. 더욱이 2017년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에서도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군형법 제92조의6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근거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위헌 선언을 할 수 있다. 즉, 차별금지법 제정이 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헌 선언해줄 거라고 확신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차별금지법 제정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 - 한국이 2006년부터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공식화했는지 여부

진평연의 이 주장은, 2006년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4호에 근거, ‘변태적 성벽자’로 포섭하여 복무 부적합자로 보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국방부는 2006. 4. 1.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전역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례는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sup>58)</sup>. 다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4호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진평연이 주장하는 ‘군복무의 공식화’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일삼아 온 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지적하자 이를 시정조치한 행위를 의미한다.

#### - 이성 군인 간 성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sup>59)</sup>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은 당시 군형법 제92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기초로 ‘추행’의 범위를 판단하는 한편, 제92조에 의해 처벌하는 추행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간을 할 수 없는 이성 간 성행위는 본래 군형법 제92조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인다.

이를 방증하는 실제 사례들이 있다. 2009년 레바논 파병 국군 동명부대 안에서 남녀 장교가 성관계를 하였던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

58) 정인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군장병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48(4), 2007. 12., p. 14, 15.

59)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여 규율되지 않고 징계만을 받았다. 나아가 이성애자 병사와 동성애자 병사가 상호 간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 동성애자 병사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성애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병사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동성 간 성적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애무를 강요받은 피해자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60)</sup>

2013. 4. 5.자 군형법 개정을 통하여 제92조의6의 문구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변경”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이것이 이성 간 행위도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오히려 기존의 취지대로 동성애자 군인의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처벌하려는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 ② 프레임 체크

기존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미국보다도 더 일찍 인정하여왔으며, 군형법은 이성 간 행위도 제재하므로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군에서 동성애자를 ‘인정’ 하였다는 과정이란 동성애자임이 발각되면 강제전역을 해오던 관습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은 그 제/개정 연혁과 적용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동성애자 군인의 동성 간 성적 접촉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 조항으로 보인다. 위 법은 다른 무엇보다도, 통상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어떠한 종류의 강제력(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합의된 성적 접촉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 법이 적용되는 집단이 오로지 동성애자 그룹뿐이라면, 그것은 명백하게 성적 지향에 기초한 차별이다.

만약 이성애자 그룹 내지 이성 간 성적 접촉에도 위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면 군인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그 아이가 시험관 아기가 아닌 이상) 부부 쌍방을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적어도 다음의 명제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인정해야 한다. 첫째,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자 군인을 차별하는 법으로서 이성애자 커플과 달리 동성애자 커플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처벌하고 있다. 둘째,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다.

60) 한가람,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 공익과 인권, 2017.

## V. 제5장 결론

### 1. 상식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대부분 사람이 상식으로 내면화한 ‘금도’를 명문화한 수준의 법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모두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우리 사회가 금하기로 약속하는 차별의 사유와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차별을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유하는 것이다. 누구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직업 교육에서 배제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평등법은 바로 그 지점, 누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사회적 규범으로 약속하고 공언하는 기능을 한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평등법은 무언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 ‘그건 너무하네’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전략하지 말자는 인권 분야의 ‘마지노선’이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말만 써라’라는 식의 강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평등법은 차별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방화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명한 사실이 우리 언론의 보도 지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 2. 압도적인 보도량을 보이는 기독교계 언론

이번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키워드로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기사들 대부분은 기독교 매체에서 나왔다. 국민일보와 크리스천투데이로 대표되는 일부 기독교 매체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평등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음이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만을 나열하는 의견기사 중심으로 보도가 구성되어 있었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수준의 기사가 많았다.

주요 매체 중 기독교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일보까지 합산하면 그 비중은 1/3에 달한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아시아뉴스통신 등 종교 매체가 아니지만 기독교계를 대변하는 매체들까지 더하면 절반가량은 평등법에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보도들은 평등법을 ‘동성애 독재법’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부정 편향 보도’를 보인다. 실제로 상기 모니터링 분석에서 국민일보의 평등법 보도 총 78건 중 무려 83.3%가 부정적 논조의 보도였고

CTS기독교TV 59.3%, 데일리굿뉴스 73.3%, 크리스천투데이 82.7% 등 다른 기독교 매체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매체에서 평등법을 긍정적으로 그린 보도는 아예 없거나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석의 균형을 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서 정확하게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직접 비판하거나 터부시한 사례만 ‘부정적 논조’로 분류한 결과다. 보도 내용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자가 여탕에 가도록 하는 법안’, ‘평등법으로 인해 여성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이 사라질 것’,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설교마저 처벌하는 교회 파괴 법안’이라는 식의 주장이 재생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법안에 반하는 허위임을 알 수 있다.

### 3. ‘동성애 반대’를 위해 모든 차별을 방치하는 논리 아쉬워

문제는 일부 언론이 이처럼 평등법을 반대하는 다양한 배경을 들고 있으나, 기본적인 평등법 반대 이유는 ‘동성애 반대’라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계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터부시할 자유를 달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된다. 기독교 매체의 평등법 관련 보도도 대부분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반대 표명 시 처벌’, ‘동성애와 성전환 허용에 따른 전통적 성별 개념 붕괴’로 집약된다.

평등법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 명시적인 차별을 가하지 말자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논리는 더욱더 파괴적이다. 차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에 혐오로 반응하면서 논의의 장을 왜곡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외에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사상 등 20가지가 넘는 차별 사유를 다루고 있으며 종교 역시 차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일부 기독교계가 오로지 ‘동성애’만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모든 차별까지 방치하는 것이며, 이를 언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 4. 언론의 침묵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파괴한다

평등법 관련 보도 분석에서 나타나는 검증과 반론없는 과도한 부정 편향, 본질을 숨기고 왜곡하는 이슈의 파편화, 일부의 목소리에 큰 스피커 허용하는 인용보도, 소위 ‘따옴표 보도’ 양산은 사실 우리 언론계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다. 평등법 보도에서 우리 언론계 전체의 문제점이 선명하고도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면을 가진 매체, 주요 방송사, 통신사 등 소위 주요 언론매체의 현재

의 평등법 보도 지형은 뼈아프다. 주요 방송사들은 거의 모든 언론이 평등법이라는 이슈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주요 경제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의 보도량이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나마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 한국의 차별 실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한 것은 돋보인다.

언론이 인권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무관심하거나 입을 다물 때 단지 그 이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혐오, 왜곡, 허위에 그 빈자리를 내어주면서 사회적 가치를 파괴한다. 특히 인권에 무관심한 우리 언론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인권감수성 제고가 요구되는 이유다.

## 5. 팩트 및 프레임 체크의 필요성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팩트체크와 프레임 체크였다.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었다. 일부 진영이 하는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언론은 그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타당한 주장인지를 차분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언론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리고 2020년, 다시 논의된 평등법에 대해서 언론은 여전한 모습을 보인다. 팩트체크 보도는 극단적으로 적었으며, 프레임 체크는 아예 기대하기조차 어려웠다.

유수의 언론사들은 평등법이 제정된 해외에 특파원을 둔 경우가 많다. 최소한 우리 언론에 등장하는 각종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의 평등법 부작용 사례’가 사실인지,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규모 있는 언론사들의 이런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모르고 일관하다가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각 당의 정쟁만을 수박 겉핥기로 전해주어서 결국 국민은 어떤 내용의 법이며, 무엇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조차 모른 채 ‘논란 덩어리’라는 부정적 인식만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평등법 보도에서 활발한 토론 및 쟁점에 대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논쟁, 팩트체크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언론의 역할 중 공론장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공론장에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언론은 이제부터라도 평등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공론장에 제대로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 현실을 담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라도 언론이 정쟁으로 처리하지 않고, 평등법을 둘러싼 찬반 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





ISBN 978-89-6114-791-0 93070